

研究報告書 95-10

# 犯罪捜査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協力強化方案

연구 : 김보환(동국대학교수)

본 연구보고서는 치안정책용역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의 최종보고서로서, 게재된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연구소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 目 次

I . 序 章 .....	9
1.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	9
2. 研究의 理論的 接近 .....	11
3. 研究의 方法 .....	14
II . 治安環境의 推移와 性向 .....	18
1. 最近의 犯罪發生 趨勢 .....	18
2. 社會環境變化에 따른 犯罪特性 .....	21
가. 偶發的 犯行率이 높다 .....	21
나. 大都市 發生率이 높다 .....	22
다. 犯行이 夜間에 集中되고 있다 .....	23
라. 凶暴化되고 있다 .....	24
마. 犯罪가 機動化, 廣域化되고 있다 .....	25
바. 新種犯罪가 多數 出現하고 있다 .....	25
사. 其 他 .....	26
III . 搜查活動에 있어서 警察－國民協力の 障礙要因 .....	27
1. 警察組織 內部要因 .....	27
가. 搜查警察 勤務環境의 惡化 .....	27
나. 搜查部署의 勤務忌避 雰圍氣 擴散 .....	27
다. 搜查警察의 意識 및 姿勢 .....	28
라. 人權意識不足 .....	28
마. 搜查能力의 停滯 .....	29
바. PCR 및 日常的 서비스活動의 不足 .....	30
사. 犯罪搜查와 報道 .....	31

아. 警察의 態度와 社會로부터의 孤立 .....	32
2. 外部의 環境的 要因 .....	34
가. 警察忌避心理 .....	34
나. 都市化 進展의 逆機能 .....	35
다. 犯因性 環境의 惡化 .....	36
라. 搜查活動에 대한 國民의 評價 .....	37
3. 市民의 意識 및 態度 .....	38
가. 年 齡 .....	39
나. 性 .....	40
다. 社會經濟的 地位 .....	41
라. 警察과의 接觸 經驗 .....	42
마. 犯罪被害의 經驗 .....	44
바. 地域社會 變數들 .....	45
IV. 研究의 結果 및 分析 .....	47
1. 警察 內外部要因과 協力關係 .....	47
가. 記述的 分析 結果 .....	53
나. 統計的 分析 提示 .....	63
V. 結論 및 警察-國民協力關係의 確保方案 .....	120
1. 序 說 .....	120
2.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관한 要約 .....	121
3. 提 言 .....	125
가. 警察內部的 覺醒 .....	125
나. 積極적인 警察弘報의 推進 .....	126
다. 搜查能力의 向上 .....	127
라. 國民과의 接點擴大 .....	131

參考文獻 ..... 136

〈附錄 1〉 ..... 142

## 表 目 次

〈표 2-1〉 總犯罪發生現況 .....	19
〈표 2-2〉 罪名別 發生現況 .....	20
〈표 2-3〉 犯罪發生 原因別 現況 (1993) .....	22
〈표 2-4〉 犯罪發生 地域別 分布 .....	22
〈표 2-5〉 犯罪發生 時間別 現況(1993年) .....	23
〈표 2-6〉 殺人, 強盜犯罪의 凶器所持 現況(1992年).....	24
〈표 3-1〉 搜查警察의 活動에 對한 評價 .....	38
〈표 4-1〉 Response time과 現場檢擧 狀況 (1993年) .....	48
〈표 4-2〉 緊急配置 實施 狀況 (1989~1993).....	49
〈표 4-3〉 法意識에 關한 技術的 分析 .....	54
〈표 4-4〉 警察에 對한 態度的 技術的 分析 .....	55
〈표 4-5〉 搜查警察에 對한 態度 .....	56
〈표 4-6〉 搜查警察에 拒否感을 느끼는 理由 .....	57
〈표 4-7〉 搜查結果에 對한 不信 理由 .....	57
〈표 4-8〉 警察의 一次的 役割 .....	57
〈표 4-9〉 公開搜查의 必要性 .....	58
〈표 4-10〉 搜查警察의 改善해야 할 點 .....	58
〈표 4-11〉 犯罪被害 經驗과 役割 .....	59
〈표 4-12〉 搜查協助時 市民에 對한 待遇 .....	59
〈표 4-13〉 申告하지 않은 理由 .....	60
〈표 4-14〉 犯罪現場의 目擊 또는 犯罪事實의 認知 經驗 .....	61
〈표 4-15〉 申告하지 않은 理由 .....	61
〈표 4-16〉 警察과의 接觸經驗 .....	61
〈표 4-17〉 司法府와의 接觸經驗 .....	62

〈표 4-18〉	경찰의 不當한 現場慣行 經驗	62
〈표 4-19〉	性別, 年齡, 學歷과 法意識間의 關係	66
〈표 4-20〉	職業과 生活水準과 法意識間의 關係	67
〈표 4-21〉	宗教와 婚姻關係와 法意識間의 關係	69
〈표 4-22〉	警察과 司法府와의 接觸經驗과 法意識間의 關係	70
〈표 4-23〉	被害經驗, 被害意識과 法意識間의 關係	72
〈표 4-24〉	住居地域 및 安全意識과 法意識間의 關係	73
〈표 4-25〉	警察과의 親密性과 法意識間의 關係	75
〈표 4-26〉	性別, 年齡別, 學歷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77
〈표 4-27〉	職業·生活水準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79
〈표 4-28〉	宗教, 婚姻關係와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80
〈표 4-29〉	警察 및 司法府와의 接觸經驗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82
〈표 4-30〉	被害經驗, 被害意識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83
〈표 4-31〉	住居地域, 安全意識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84
〈표 4-32〉	警察과의 親密性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85
〈표 4-33〉	性別, 年齡, 教育水準과 役割經驗間의 關係	87
〈표 4-34〉	職業, 生活水準과 役割經驗間의 關係	89
〈표 4-35〉	宗教, 婚姻關係와 役割經驗間의 關係	91
〈표 4-36〉	法意識과 役割經驗과의 關係	92
〈표 4-37〉	警察에 대한 態度와 役割經驗間의 關係	94
〈표 4-38〉	警察과의 接觸經驗과 役割經驗과의 關係	97
〈표 4-39〉	警察의 不當한 現場慣行經驗과 役割經驗과의 關係	98
〈표 4-40〉	住居地域, 被害經驗, 被害意識, 安全意識과 役割經驗과의 關係	101
〈표 4-41〉	警察과의 親密性과 役割經驗과의 關係	101
〈표 4-42〉	성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102
〈표 4-43〉	年齡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103
〈표 4-44〉	教育水準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104

---

〈표 4-45〉 職業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	104
〈표 4-46〉 生活水準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	106
〈표 4-47〉 宗教와 役割意識과의 關係 .....	106
〈표 4-48〉 結婚與否와 役割意識間的 關係 .....	107
〈표 4-49〉 法에 대한 態度와 役割意識間的 關係 .....	108
〈표 4-50〉 法違反許容도와 役割間的 關係 .....	108
〈표 4-51〉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와 役割意識間的 關係 .....	109
〈표 4-52〉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와 役割意識과의 關係 .....	110
〈표 4-53〉 自意的, 他意的 接觸經驗과의 關係 .....	111
〈표 4-54〉 事件關聯 接觸經驗과의 關係 .....	112
〈표 4-55〉 司法府와의 接觸經驗과의 關係 .....	113
〈표 4-56〉 警察의 不當한 現場慣行과의 關係 .....	115
〈표 4-57〉 住居地域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	115
〈표 4-58〉 犯罪被害經驗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	116
〈표 4-59〉 犯罪에 대한 被害意識과 役割意識間的 關係 .....	117
〈표 4-60〉 住居地域內에서의 安全意識과 役割意識間的 關係 .....	118
〈표 4-61〉 警察과의 親密性和 役割意識間的 關係 .....	118

## I . 序 章

### 1.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警察의 犯罪搜查活動은 最近의 犯罪發生狀況과 犯罪傾向의 急激한 變化에 따라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犯罪發生狀況을 類型別로 보면 凶惡犯, 知能犯, 少年犯, 組織犯이 急增하고 있으며, 搜查活動을 困難하게 하는 犯罪傾向으로는 犯罪의 機動化, 廣域化, 巧妙化, 組織化등 複雜多岐性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一時性, 匿名性, 無關心, 貧富隔差, 孤獨感, 欲求不滿등 地域社會의 崩壞現狀이 가속화되어 犯人檢舉率을 低下시키고 있다. 따라서 警察이 事件解決에 있어서 警察內部的 自體 搜查力量에만 依存하기 어렵고 外部的으로 凡國民의인 協力方案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되는 時代的, 社會的 狀況이 되고 있다.

그러나 警察은 그 業務遂行 特性上 國民에 대한 規制度가 높은 반면, 國民은 社會가 發達하고 市民意識이 成熟할수록 警察의 役割에 대한 期待가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警察과의 接觸關係에 있어서는 不可近 不可遠의 意識構造를 지니고 있어 滿足할 만한 民警體制와는 아직도 먼 距離感을 가지고 있다. 最近의 한 調查研究에서는 國民이 警察署나 派出所에서 法令을 適用하거나 執行할 때의 公正性에 대하여 54.6%라는 높은 不信을 나타내고 있는데<sup>1)</sup>, 이것은 이러한 國民意識의 한 斷面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友好的이고 協助的인 긴밀한 民警關係의 樹立은 警察運營에 있어서 基本的인 課題이며 또한 그 自體가 重要한 目標이기도 하므로, 警察에서는 窮極的으로 國民과 警察간의 基本的인 信賴關係를 警察運營의 基本 價値基準으로 삼아야 하며, 國民은 이러한 價値에 自發的으로 積極 副應해 나갈 때 우리나라의 民生治安水準은 보다 進一步할 것이다.

1) 韓國法制研究院, 國民法意識調查研究, 1991, 100面

이 研究에서는 現 段階에서 相互 滿足할 수 없는 民警關係를 改善, 強化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刑事司法體系, 國民情緒, 그리고 風俗, 慣習의 檢討等 多角的 接近을 통하여 우리의 社會的 與件, 政治的 構造 및 다가오는 地方自治制度의 特色에 맞도록 犯罪搜查를 위한 警察과 國民의 協力強化方案을 提示함으로써 犯罪搜查의 成功率를 向上시키는 데 그 目的을 둔다.

그런데 犯罪搜查의 效率性을 제고시키는 데 필요한 警察-국민간의 協力關係(경찰:국민의 역할관계)<sup>2)</sup>는 警察組織의 내·외적요인들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겠지만, 一般警察이나 搜查警察에 대한 國民의 인식과 태도, 國民의 준법정신과 법의식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인구사회학적 변수들과도 식별가능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더 나가서 警察과의 접촉경험, 검찰이나 사법부와의 접촉경험, 犯罪피해의 경험, 犯罪에 대한 공포나 피해 및 안전의식, 지역사회변수(주거지역), 警察과의 친밀성 등 국민들과 관련된 기타 변수들은 國民의 對警察의식이나 태도에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警察-국민간의 協力關係와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된다.<sup>3)</sup>

즉 이러한 요소들은 犯罪搜查上 國民의 역할(申告者, 參考人 및 證人, 逮捕者로서의 역할)이나 역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핵심은 위에서 제시된 여러가지 요소들이 연구대상자(국민)들의 搜查상 역할의식이나 역할경험(警察-국민간의 협력관계)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하고, 警察-국민간의 協力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警察組織의 내·외적 요인들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搜查상 警察-국민간의 협력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연구의 결과 예상되는 主要 期待效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國民의 犯罪申告率을 提高함으로써 犯罪의 發見이나 事件解決이 迅速하고 보다 容易하게 進行될 수 있고, 適正搜查의 展開에 따른 搜查能力이 向上된다.

둘째, 犯罪搜查活動에 있어서 警察-國民協력이 強化되면 警察에 대한 國民의

2) 경찰-국민의 협력관계는 국민의 역할의식이나 역할경험으로 측정가능하다고 봄

3) 여러학자들의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여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을 선정하였음.

(상세내용은 後述하는 第 3 章 第 3 節을 참조)

認識이나 態度的 變化를 가져올 수 있고, 아울러 國民에 대한 搜查警察의 認識도 동반 變換됨에 따라 犯罪搜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警察－國民間의 關係가 보다 肯定的인 方向으로 改善될 수 있다.

셋째, 警察－國民間의 協력이 強化되어 事件解決이 迅速하게 處理되면 法執行에 있어서 迅速성과 確實성이 增進되기 때문에 犯罪統制에 있어서 一般的인 制裁效果와 國民의 法에 대한 尊敬心 및 警察에 대한 信賴도가 增進된다.

넷째, 警察－國民間의 協력이 強化되면 刑事訴訟上 證據保全節次 등 適法節次가 充實해지고, 警察－檢察關係에 있어서 警察에 대한 搜查能力의 信賴도가 向上되기 때문에 警察의 搜查權 獨立에 기여할 수 있다.

## 2. 研究의 理論的 接近

犯罪搜查에 있어서 警察－國民協力關係를 설명하는 理論的 接近은 첫째, 警察－國民協力關係를 確保하는 데 있어서 警察組織 內部要因과 組織外部의 環境의 要因이 전체적으로 關係形成에 영향을 미치며, 障礙要因 그 자체로서 作用한다는 것, 둘째, 國民의 준법정신과 법의식, 그리고 一般警察 및 搜查警察에 대한 의식 및 태도는 警察과의 일반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犯罪搜查에 있어서 警察과 國民간의 協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반면 國民에 대한 警察의 役割意識 및 態度여하에 따라 警察도 警察－國民協力關係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셋째, 國民들이 犯罪와 관련된 자기역할(신고자로서의 역할, 參考人이나 證人으로서의 역할, 逮捕者로서의 역할, 被害者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고 반응한다면 효과적인 犯罪搜查에 도움이 되며, 警察－國民協力關係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搜查상 國民의 역할의식이나 역할경험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포함한 상기 요소들과 相關關係가 있다는 세가지 基本 假定에 根據를 두고 있다.

警察－國民協力關係에 影響을 미치는 障礙要因으로는 警察組織의 硬直化와 孤立性, 法執行의 不適切, 公開搜查의 未盡, 搜查上 國民들에 대한 不當한 取扱 등 組織內部的인 要因이 있고, 國民性에서 유래하는 警察알레르기現象, 搜查活動에 대한 國民의 評價, 都市化로 인한 疎外 및 匿名性, 車輛의 大量普及으로 인한 犯

認識이나 態度的 變化를 가져올 수 있고, 아울러 國民에 대한 搜查警察의 認識도 동반 變혁됨에 따라 犯罪搜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면에서 警察 - 國民間의 關係가 보다 肯定的인 方向으로 改善될 수 있다.

셋째, 警察 - 國民間의 協력이 強化되어 事件解決이 迅速하게 處理되면 法執行에 있어서 迅速성과 確實성이 增進되기 때문에 犯罪統制에 있어서 一般的인 制裁效果와 國民의 法에 대한 尊敬心 및 警察에 대한 信賴도가 增進된다.

넷째, 警察 - 國民間의 協력이 強化되면 刑事訴訟上 證據保全節次 등 適法節次가 充實해지고, 警察 - 檢察關係에 있어서 警察에 대한 搜查能力의 信賴도가 向上되기 때문에 警察의 搜查權 獨立에 기여할 수 있다.

## 2. 研究의 理論的 接近

犯罪搜查에 있어서 警察-國民協力關係를 설명하는 理論的 接近은 첫째, 警察-國民協力關係를 確保하는 데 있어서 警察組織 內部要因과 組織外部의 環境의 要因이 전체적으로 關係形成에 영향을 미치며, 障礙要因 그 자체로서 作用한다는 것, 둘째, 國民의 준법정신과 법의식, 그리고 一般警察 및 搜查警察에 대한 의식 및 태도는 警察과의 일반적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犯罪搜查에 있어서 警察과 國民간의 協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반면 國民에 대한 警察의 役割意識 및 態度여하에 따라 警察도 警察-國民協力關係에 影響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셋째, 國民들이 犯罪와 관련된 자기역할(신고자로서의 역할, 參考人이나 證人으로서의 역할, 逮捕者로서의 역할, 被害者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인식하고 반응한다면 효과적인 犯罪搜查에 도움이 되며, 警察-國民協力關係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搜查상 國民의 역할의식이나 역할경험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포함한 상기 요소들과 相關關係가 있다는 세가지 基本 假定에 根據를 두고 있다.

警察-國民協力關係에 影響을 미치는 障礙要因으로는 警察組織의 硬直化와 孤立性, 法執行의 不適切, 公開搜查의 未盡, 搜查上 國民들에 대한 不當한 取扱 등 組織內部的인 要因이 있고, 國民性에서 유래하는 警察알레르기現象, 搜查活動에 대한 國民의 評價, 都市化로 인한 疎外 및 匿名性, 車輛의 大量普及으로 인한 犯

罪의 機動化 및 廣域化, 警察搜查에 대한 誤解傾向性 등 外部 環境的인 요인이 있는데, 이와같은 要因들은 實際적으로 警察-國民協力關係形成에 상당한 影響을 미친다고 한다.<sup>4)</sup>

그렇기 때문에 警察의 犯罪搜查能力을 向上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要因들이 어떻게 警察-國民協力關係와 相關關係를 가지는지를 分析할 必要性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分析結果에 기초하여 障礙要因을 克服해 나가는 內的, 外的 統制(Internal and External Control)의 實施方案이 講究되어야 한다.<sup>5)</sup>

다음으로 社會心理學的인 觀點에서의 役割理論에 의하면 社會는 결국 여러가지 役割들의 有機的인 組織體인데, 個人들의 社會的 存在意義는 이러한 組織體들 속에서 各自의 役割을 담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役割이란 個個人이 차지하고 있는 地位에 相應하는 行動의 概念(Linton, 1936), 認識이나 行動으로 구분되는 雙方의 相互作用(Miller, 1963), 人間的 特殊性이 特定役割에 결부되어 있는 社會的 期待 또는 規範에 맞추어져 들어가는 過程(Parsons, 1951; Spiro, 1961)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이 研究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소위 刑事司法體系內에서 犯罪와 관련된 國民의 役割모델은 申告者로서의 役割, 裁判過程에서의 參考人 및 證人의 役割, 直接逮捕者로서의 役割, 被害者로서의 役割의 4가지로 나누어 設定해 볼 수 있고<sup>6)</sup>, 이러한 役割들이 警察이 期待하는 것처럼 잘 이루어지면 警察搜查能力이 더욱 向上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役割의 遂行이란 搜查상 警察과 國民간의 關係를 의미하며, 그 역할에 대한 國民의 意識 및 태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양자간의 關係強化를 통한 역할수행의 증진은 국민들의 法意識 및 遵法精神, 그리고 一般 警察 및 搜查警察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意識 및 태도와 關係가 있다고 판단

4) 日本特別搜查幹部研修所, 搜查における國民協力の確保, 昭和 46年, 15~27面

5) Donald Black, Toward a General Theory of Social Control(Vol. I), Academic Press, Inc., 1984, pp.4~5;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ask Force Report : The Police, Arno Press and The New York Times, 1971, pp.28~34

6) Charls P. McDowell, Criminal Justice : A Community Relations Approach, Cincinnati, Ohio; Pilgrimage A division of Anderson publishing Co., 1984, p.110

된다. 한편,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 그리고 더 나아가 기타 국민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변수들(安全意識, 警察과의 親密性, 警察과의 접촉여부, 警察의 현장관행에 대한 인지, 지역의 특성 등)은 경찰에 대한 의식이나 태도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된다.

따라서 警察의 搜查能力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들을 分析해서 警察-國民協力關係를 增進시킬 수 있는 방안을 講究할 必要性이 있다.

이러한 이론적 根據下에서 役割모델을 說明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기타 警察과 관련된 다른 변수들이 犯罪搜查上 國民의 역할의식이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警察에 대한 國民의 의식 및 태도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와 관계되는 여러가지 연구결과들을 檢討하고자 한다.

즉 어째서 시민들은 警察에 대하여 상이한 태도를 가지는가를 검토하기 위해서 관련된 여러가지 연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설명에 필요한 요인들은 年齡, 性, 社會經濟的 지위와 같은 개인적 속성들과 犯罪被害經驗, 警察과의 親密性, 警察과의 接觸여부, 지역의 특성 등 구조적 변수들을 들 수 있다.

警察-國民協力關係를 둘러싼 問題는 社會文化的으로 異質性이 높은 大都市地域에서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며, 女性役割의 急激한 變化와 女性犯罪者의 犯罪率增加도 警察-國民協力關係에 影響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한다. (Temin, 1973; Kanowitz, 1973)

한편 警察의 役割은 危險(Danger)과 權威(Authority)라는 두가지의 基本的인 變數를 내포하고 있다.(Skolnick, 1960)

그런데 이러한 變數들은 國民과의 관계에 있어서 警察의 國民에 대한 役割意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個個 國民과의 相互作用에서 警察이 國民과 同等한 立場으로서의 關係를 形成하기 위하여는 警察이 이와같은 基本的 變數에 의한 自己의 役割을 분명히 認識할 필요가 있으며,<sup>7)</sup> 警察이 國民에게 가지는 이러한 意識如何에 따라 警察-國民協力の 構圖가 달라질 수 있다.

7) Allan Kalmanoff, Criminal Justice :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6, pp.131~132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危險과 權威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직업의 특성상 여러가지 요인들이 警察을 冷笑的으로 변화시키고 사회 내지 국민들로부터 警察을 孤立시키고, 隔離되게 하는 權威主義的 존재로 변모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은 Niederhoffer(1696)의 대표적 연구에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過程을 고찰해 보면 警察은 國民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의 協力確保方案이 도출될 것이며, 그러므로써 警察의 犯罪搜查에 寄與하게 된다.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理論的인 틀을 가지고 이 主題에 대한 研究에 接近하고자 한다.

### 3. 研究의 方法

1) 文獻的 研究方法으로는 國內外 文獻研究와 公式 및 警察內部資料를 分析整理한다.

2) 實證的 研究方法으로서 本 研究는 實態調査的인 性格보다는 앞에서 제시한 理論的 接近을 檢證하기 위한 것이므로 標本集團을 選定하여 그 構成員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한다.

刑事司法體系에서 國民들은 앞에서 제시한 4가지 役割을 遂行하게 되는데, 人口社會學的인 변수 그리고 기타 警察과 관련된 여러가지 변수들이 법의식, 警察에 대한 國民의 의식 및 태도, 그리고 역할경험및 역할의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 調査 結果 구해지는 內容은 첫째, 國民의 법의식과 준법정신이 警察과 國民의 協力關係(犯罪와 관련된 國民의 역할경험및 역할의식)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둘째 一般警察 및 搜查警察에 대한 意識 및 態度가 警察과 國民의 協力關係(犯罪와 관련한 國民의 역할경험및 역할의식)와 어떠한 聯關이 있는지, 셋째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이 警察과 國民의 協力關係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넷째, 기타 國民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변수들(犯罪피해의 경험, 犯罪에 대한 공포나 피해의식,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전의식, 警察과의 친밀성, 警察, 檢察, 司法府와의 접촉경험, 그리고 警察의 현장관행에 대한 인지)이 國民의 對警察의식이나 태도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危險과 權威라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직업의 특성상 여러가지 요인들이 警察을 冷笑的으로 변화시키고 사회 내지 국민들로부터 警察을 孤立시키고, 隔離되게 하는 權威主義的 존재로 변모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점은 Niederhoffer(1696)의 대표적 연구에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過程을 고찰해 보면 警察은 國民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의 協力確保方案이 도출될 것이며, 그러므로써 警察의 犯罪搜查에 寄與하게 된다.

本 研究에서는 이러한 理論的인 틀을 가지고 이 主題에 대한 研究에 接近하고자 한다.

### 3. 研究의 方法

1) 文獻的 研究方法으로는 國內外 文獻研究와 公式 및 警察內部資料를 分析整理한다.

2) 實證的 研究方法으로서 本 研究는 實態調査的인 性格보다는 앞에서 제시한 理論的 接近을 檢證하기 위한 것이므로 標本集團을 選定하여 그 構成員을 대상으로 設問調査를 실시한다.

刑事司法體系에서 國民들은 앞에서 제시한 4가지 役割을 遂行하게 되는데, 人口社會學的인 변수 그리고 기타 警察과 관련된 여러가지 변수들이 법의식, 警察에 대한 國民의 의식 및 태도, 그리고 역할경험및 역할의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이 調査 結果 구해지는 內容은 첫째, 國民의 법의식과 준법정신이 警察과 國民의 協力關係(犯罪와 관련된 國民의 역할경험및 역할의식)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둘째 一般警察 및 搜查警察에 대한 意識 및 態度가 警察과 國民의 協力關係(犯罪와 관련한 國民의 역할경험및 역할의식)와 어떠한 聯關이 있는지, 셋째 인구사회학적인 변수들이 警察과 國民의 協力關係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넷째, 기타 國民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변수들(犯罪피해의 경험, 犯罪에 대한 공포나 피해의식,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전의식, 警察과의 친밀성, 警察, 檢察, 司法府와의 접촉경험, 그리고 警察의 현장관행에 대한 인지)이 國民의 對警察의식이나 태도

그리고 警察과 국민의 協力關係, 국민의 犯罪와 관련된 역할에 대한 의식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의 네가지가 된다.

이러한 연구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犯罪와 관련된 『국민의 역할경험 및 역할 의식』을 『警察과 국민의 協力關係』를 측정할 수 있는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원인 관련변수로 국민의 준법정신과 법의식, 警察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搜查警察에 대한 국민의 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그리고 기타 국민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원인변수들(犯罪피해의 경험, 犯罪에 대한 피해 및 안전의식, 警察, 檢察 및 司法府와의 접촉경험, 警察의 현장관행에 대한 인지, 지역사회변수(주거지역), 警察과의 친밀성)을 선정하였다.

보고서 말미에 수록된 설문지에서 보듯이, "법의식"은 "법에 대한 태도"와 "법 위반 허용도"로 구분하여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5개문항(1,2,3,4,5)과 4개문항(6, 7,8,9)을 선정하였고, 警察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문항은 8개, 搜查警察에 대한 질문문항은 5개로 구성되었으며, 警察과의 접촉경험은 3개문항, 檢察 및 司法府와의 접촉경험은 2개문항, 警察의 부당한 현장관행은 4개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犯罪被害의 경험 및 인지는 2개문항으로, 犯罪피해 및 안전 의식도 2개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지역사회변수(주거지역)는 1개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측정을 위한 설문은 8개문항으로 구성되었고, 警察과의 親密性은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설문조사는 1995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서울지역에서 20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지조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훈련받은 10여명의 대학생들이 標本抽出된 조사대상자의 성별, 연령별에 맞게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중에서 856부가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본 조사의 표본은 "多段階層化 無作爲 標集方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즉 서울시내 22개 구에서 계층표집의 방법에 의하여 구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無作爲 標集方法에 의하여 20개 동을 추출하고, 標本抽出된 20개 동에서 조사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가 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30대가 34.8%, 40대가 15%, 50대 이상이 12%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별로 보면 고졸이 49%로 가장 많고, 대재 이상이 42.9%, 중졸이하가 8.1%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관계별로 보면 기혼이 46.4%, 미혼이 49.3%, 사별이 1.4%, 이혼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生活水準은 中이 56%, 中下 이하가 26.4%, 中上이상이 17.5%로 나타났다.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27.7%(사무직, 생산직 포함), 학생이 20.4%, 자영업이 13.3%, 자유전문직이 14.5%, 공무원이 7.5%, 주부가 10.6%, 무직 및 기타가 5.9%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가 35.8%로 가장 많고, 무교가 34.0%, 불교(원불교 포함)가 18%, 천주교가 9.8%, 기타가 2.5%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주거지역은 본 연구에서는 "地域變數"로 사용되었으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본다면 응답자의 거주지역 중 중류지역에서 산다는 응답자가 39.8%, 하류지역이 32.6%, 상류지역이 27.6%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성, 연령, 학력, 직업, 생활수준, 종교, 결혼여부 등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닌 항목으로 구분된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본설계는 국민전체의 대표성을 잃지 않도록 거주지역이나 생활수준과 인구비례의 원칙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법이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의식과 태도 자체에 대한 측정이 주목적이 아니라, 犯罪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역할 및 역할의식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요인들로서의 獨立變數(원인변수)들과 從屬變數(역할경험 및 역할의식)간의 관계로 살펴보는 것이므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계층간의 법의식을 분석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는 직업이나 생활수준의 분포, 그리고 거주지역 등에 관하여는 어느 한 계층에 편중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고 다른 특성들에 관하여는 국민전체의 대표성 문제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3. 犯罪搜查에 대한 警察-國民間의 協力方案을 提示함에 있어서 主要 外國의 實態와 政策을 比較 分析할 것이며, 아울러 補充資料로서 文獻調査를 통하여 얻은 結果를 警察-國民間의 協力方案에 反映하고자 한다.

그리고 章別로 研究遂行方法을 살펴보면, 第 1 章(序章)과 第 2 章(治安環境의 推移와 性向)은 文獻的 接近으로, 第 3 章(搜查活動에 있어서 警察—國民協力の 障碍要因)과 第 4 章(研究의 結果 및 分析)중 警察內部要因과 外部의 環境的 要因은 文獻的 接近, 意識 및 態度部分은 設問調査를 토대로 한다. 第 5 章(警察—國民協力關係의 確保方案)에서는 앞의 結果分析內容을 綜合評價하고 問題點을 提示함과 아울러 外國의 實態와 政策을 比較分析的인 方法에 의하여 考察함으로써 具體的인 代案提示에 연결시키고자 한다.

## Ⅱ. 治安環境의 推移와 性向

### 1. 最近의 犯罪發生 趨勢

現代社會는 급속히 變化하고 있다. 어느 사회, 어느 곳에서나 產業이 高度化되고 物質文明이 發達할수록 人間의 慾望은 한없이 확장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犯罪를 저지르는 현상이 一般化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러한 全般的인 趨勢와 크게 다를바 없어 1960年代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產業化, 都市化, 國際化, 價値觀의 多樣化, 高齡化 등 諸般 社會環境側面에서 급격한 變化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犯罪가 중요한 社會問題중 하나로 대두되었다.<sup>8)</sup> 統計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犯罪發生件數가 漸進적으로 增加하다가 1980년대 중반이후 부터는 급격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sup>9)</sup>

이러한 量的增加도 큰 문제려니와 手段, 方法에 있어 종래와는 質적으로 다른 새로운 형태의 犯罪가 出現하여 既存의 犯罪對處手段도 새로운 변모를 시도해야 할 必要性이 急增하고 있으며, 특히 科學이 發達하고 生活樣式이 多樣해짐에 따라 尖端技術이나 專門知識 그리고 機動성을 최대한 이용하는 犯罪手法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搜查의 科學化 및 國民協力の 強化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이 章에서는 이처럼 量的, 質적으로 보다 심각하게 社會問題化되고 있는 제반 犯罪現象중 犯罪分析의 分類基準에 따라 刑法犯과 特別法犯을 大분류로 하고 重要犯罪인 強力犯<sup>10)</sup>, 竊盜犯, 暴力犯을 中心으로 犯罪發生趨勢 및 그 性向을 살펴

8) 우리나라에서 社會構造의 變動에 따른 犯罪發生樣相에 관한 研究로는 刑事政策研究院, 社會構造와 犯罪: - 經濟發展과 人口成長을 中心으로 -, 1993; 刑事政策研究院, 犯罪發生의 趨勢分析: 1964~1991, 1994가 있다.

9)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93; 警察廳, 警察統計年報, 1993

10) 強力犯罪은 兇暴暴力을 同伴하여 個人的 生命이나 身體에 危害를 가하는 對人犯罪을 일

보기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強力犯 중 放火犯은 비교적 신체에 대한 暴力性이 희소하므로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産業化가 本格的인 軌道에 들어서게 된 1970年代부터 1993년까지의 犯罪發生現況을 全般的으로 살펴보면 다음 <表 2-1>과 같다.

總犯罪 發生率은 1970年을 기준으로 할 때, 10年만인 1980年에 약 2倍, 1990年에 3倍를 약간 상회하고 있어 10年마다 100%씩의 꾸준한 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總犯罪를 刑法犯罪와 特別法犯罪로 나누어 보면, 刑法犯罪는 1970年 對比 1990年 增加率이 2.6倍로써 總犯罪 增加率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特別法犯罪는 同期對比 무려 5倍를 상회하고 있어 급격한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표 2-1> 總犯罪發生現況 (單位：件，%)

區分	總犯罪	刑法犯罪	特別法犯罪
1970	340,390 (100)	239,756 (100)	100,634 (100)
1975	391,252 (115)	308,760 (129)	82,492 (82)
1980	620,710 (182)	410,461 (171)	210,249 (209)
1985	794,708 (233)	539,166 (225)	255,611 (254)
1988	954,128 (280)	593,707 (248)	360,421 (358)
1989	1,043,901 (307)	611,694 (255)	432,207 (429)
1990	1,147,752 (337)	628,837 (262)	518,915 (516)
1991	1,185,648 (348)	623,439 (260)	562,209 (559)
1992	1,210,786 (356)	643,086 (268)	567,702 (564)
1993	1,304,349 (383)	683,071 (285)	621,278 (617)

(資料：警察廳, 警察統計年報, 1993)

결으나, 이것은 實定法上的 概念이 아니라 刑事司法機關의 實務上 概念이므로 어떤 犯罪를 強力犯罪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刑事司法機關別로 그 概念이 달리 規定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外國의 그것과도 그 概念이 상당히 다른 실정이다. 우선 우리나라 警察에서는 強力犯을 殺人, 強盜, 強姦, 放火의 4종으로 分類, 處理하여 警察廳의 統計에 이를 算入하고 있으며, 같은 搜查機關인 檢察에서는 檢察統計事務規程 및 檢察例規등에 의하여 刑法犯중 殺人, 強盜, 強姦, 放火, 暴行, 傷害, 脅迫, 恐喝, 略取誘引, 逮捕監禁罪와 特別法犯중 暴力行爲등 處罰法 違反事犯을 強力犯으로 지칭하고 있다. 한편 法務研修院에서 발간되는 犯罪白書에서는 殺人, 強盜, 強姦, 放火를 強力犯으로 취급하고 있다.

1993년의 罪種別 特別法犯罪 發生件數를 보면, 道路交通法 違反事犯이 全體 特別法犯罪中에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위 表에서 1980年代 후반부터 特別法犯罪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이 시기에 自動車普及이 一般化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年度別 犯罪增加趨勢를 보면 전체적으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꾸준한 增加率을 보이고 있으나, 1991년과 1992년은 增加趨勢가 鈍化되었다가 1993년에는 다시 增加率이 높아지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強力犯罪의 罪名別 發生趨勢를 보면 殺人의 경우 뚜렷한 增加趨勢를 나타내지 않고 있으나, 1992年 對比 1993년에 약 30%의 급격한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표 2-2〉 罪名別 發生現況 (單位：件, %)

區分	殺人	強盜	強姦	竊盜	暴力
1970	502(100)	1,020(100)	1,139(100)	69,263(100)	74.841(100)
1975	509(101)	1,735(170)	1,928(169)	79,280(114)	99.021(132)
1980	527(105)	2,684(263)	3,003(264)	91,492(132)	119.007(159)
1985	541(108)	3,288(322)	4,188(368)	103,006(149)	147.501(197)
1988	539(107)	3,765(369)	3,510(308)	94,395(136)	166.722(223)
1989	540(108)	4,403(432)	3,726(327)	101,243(146)	171.030(229)
1990	633(126)	4,760(467)	4,247(373)	95,427(138)	176.829(236)
1991	595(119)	3,289(322)	3,669(322)	87,358(126)	171.817(230)
1992	620(124)	3,112(305)	3,919(344)	77,861(112)	165.556(221)
1993	808(161)	3,730(367)	5,298(465)	61,526 (89)	182.041(243)

(資料：警察廳, 警察統計年報, 1993)

強盜는 1970年을 기준으로 할 때 1985년에 發生件數가 3倍를 超過하였고, 5年 후인 1990년에 5倍에 육박하여 최고치를 이루었으나, 1991년과 1992년은 오히려 減少하였고, 1993년에 增加趨勢로 局面을 轉換하였다.

그리고 強姦은 1985년에 급격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 1992년까

지는 減少趨勢를 나타내다가 1993년에 급격히 增加하고 있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全體的으로 볼 때 1991年과 1992년에 前年對比 發生件數가 減少하다가 1993년에 급격히 增加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共通點이며, 殺人은 增加率이 낮고, 強盜와 強姦은 1970年對比 1993년이 각각 4倍와 5倍에 육박하고 있는 높은 犯罪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竊盜는 1980年代 後半까지 약간씩 증가하였으나 1990년부터 增加趨勢가 鈍化되다가 1993년에는 1970年對比 오히려 減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暴力은 상당히 급격한 增加趨勢를 보여 1988년에 1970年對比 發生件數가 2倍를 超過하였고 현재는 1970年對比 發生件數 3倍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5가지의 主要 犯罪중 強姦, 強盜, 暴力의 順으로 犯罪發生增加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社會環境變化에 따른 犯罪特性

### 가. 偶發的 犯行率이 높다

分析對象인 5種의 犯罪를 發生原因別로 보면 다음 표와 같이 그 순위를 매길 수 있다.

殺人의 경우 犯罪發生原因은 偶然 28%, 怨恨憤怒 14%, 家庭不和 8%의 順이며, 強盜는 偶然 32%, 遊興費充當 16%, 醉中 5%의 順이고, 強姦은 偶然 35%, 醉中 10%, 誘惑 4%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통적으로 우연히 犯罪를 저지르는 比率이 매우 높다. 물론 犯行陳述時 量刑의 參酌을 호소키 위하여 우연히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犯罪者도 많겠으나, 衝動的, 偶發的으로 犯行을 하는 경우가 壓倒的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偶然의 範疇에 포함할 수도 있는 醉中, 侮辱感, 劣等感, 好奇心등의 犯罪發生原因을 勘案한다면 偶發的 犯行率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기타 竊盜와 暴力의 경우도 유사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지는 減少趨勢를 나타내다가 1993년에 급격히 增加하고 있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全體的으로 볼 때 1991年과 1992년에 前年對比 發生件數가 減少하다가 1993년에 급격히 增加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共通點이며, 殺人은 增加率이 낮고, 強盜와 強姦은 1970年對比 1993년이 각각 4倍와 5倍에 육박하고 있는 높은 犯罪增加率을 나타내고 있다.

竊盜는 1980年代 後半까지 약간씩 증가하였으나 1990년부터 增加趨勢가 鈍化되다가 1993년에는 1970年對比 오히려 減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暴力은 상당히 급격한 增加趨勢를 보여 1988년에 1970年對比 發生件數가 2倍를 超過하였고 현재는 1970年對比 發生件數 3倍에 육박하고 있다.

따라서 5가지의 主要 犯罪중 強姦, 強盜, 暴力의 順으로 犯罪發生增加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2. 社會環境變化에 따른 犯罪特性

### 가. 偶發的 犯行率이 높다

分析對象인 5種의 犯罪를 發生原因別로 보면 다음 표와 같이 그 순위를 매길 수 있다.

殺人의 경우 犯罪發生原因은 偶然 28%, 怨恨憤怒 14%, 家庭不和 8%의 順이며, 強盜는 偶然 32%, 遊興費充當 16%, 醉中 5%의 順이고, 強姦은 偶然 35%, 醉中 10%, 誘惑 4%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통적으로 우연히 犯罪를 저지르는 比率이 매우 높다. 물론 犯行陳述時 量刑의 參酌을 호소키 위하여 우연히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犯罪者도 많겠으나, 衝動的, 偶發的으로 犯行을 하는 경우가 壓倒的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偶然의 範疇에 포함할 수도 있는 醉中, 侮辱感, 劣等感, 好奇心등의 犯罪發生原因을 勘案한다면 偶發的 犯行率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기타 竊盜와 暴力의 경우도 유사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 나. 大都市 發生率이 높다

1992년의 犯罪發生地域別 構成比를 보면 各 罪名別로 公히 大都市가 가장 많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殺人은 63.8%, 強盜는 84.2%, 強姦은 64.8%로 나타난다.

〈표 2-3〉 犯罪發生 原因別 現況 (1993년) (單位: 名, %)

1 區分	總犯罪者數	1順位	2順位	3順位
殺人	1,020 (100)	偶然	怨恨, 憤怒	家庭不和
		290 (28)	143 (14)	79, (8)
強盜	6,083 (100)	偶然	遊興費充當	醉中
		1,966 (32)	985 (16)	279 (5)
強姦	684 (100)	偶然	醉中	誘惑
		2,360 (35)	672 (12)	288 (4)
竊盜	51,598 (100)	偶然	遊興費充當	生活費充當
		17,323 (34)	4,596 (9)	2,414 (5)
暴力	317,343 (100)	偶然	醉中	怨恨, 憤怒
		119,452 (38)	46,433 (15)	9,306 (3)

(資料: 警察廳, 警察統計年報, 1993)

〈표 2-4〉 犯罪發生 地域別 分布 (單位: 件, %)

區分	計	大都市	中,小都市	都市以外
殺人	615 (100)	392 (63.8)	66 (10.7)	157 (25.5)
強盜	2,549 (100)	2,145 (84.2)	176 (6.9)	228 (8.9)
強姦	5,447 (100)	3,531 (64.8)	642 (11.8)	1,273 (23.4)

(資料: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93)

특히 強盜는 大都市地域에 絶對的으로 偏重되어 있는 반면, 殺人과 強姦은 都

市 이외의 地域에서도 상당수 發生하고 있으며, 기타 年度도 類似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全世界的으로 공통된 것으로서, 社會變動에 따라 都市化現象이 급속히 進行되고 人口가 密集됨에 따라 一時的, 匿名的, 無關心, 貧富格差, 孤獨感, 欲求不滿 등의 性向이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러한 현상이 都市를 中心으로 擴張되면서 地域社會의 崩壞를 초래하여 居住環境에서 人間의 連帶性을 喪失하게 되는데, 이러한 地域社會의 崩壞가 犯罪를 增加시키고, 搜查機關의 搜查를 곤란하게 하며, 따라서 檢舉率까지 低下시키는 주요한 原因이 되고 있다.<sup>11)</sup>

다. 犯行이 夜間에 集中되고 있다

5대 사범 중 暴力性和 危險性이 높은 殺人, 強盜, 強姦犯罪등 強力犯은 그 性格上 夜間에 이루어지는 比率이 높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犯行의 夜間集中現象은 搜查警察의 夜間搜查力 強化, 夜間防犯活動의 體系化 및 組織化등과 깊은 連繫를 지니고 있다.

〈표 2-5〉 犯罪發生 時間別 現況(1993年) (單位: 件, %)

區分	計	00:00 ~ 04:00	04:00 ~ 06:00	06:00 ~ 18:00	18:00 ~ 20:00	20:00 ~ 24:00
殺人	808 (100)	123 (15)	22 (3)	238 (29)	60 (7)	127 (16)
強盜	3,730 (100)	877 (24)	86 (2)	659 (18)	172 (5)	561 (15)
強姦	5,298 (100)	1,089 (21)	134 (3)	775 (15)	280 (5)	955 (18)

(資料: 警察廳, 警察統計年報, 1993)

11) 檜山西郎, 成熟した社會の犯罪と豫防, 酒井書店, 1994

〈表 2-5〉에서 보듯이 18:00시부터 익일 06:00시까지를 夜間으로 본다면, 殺人의 경우 總發生件數 中 41%, 強盜는 46%, 強姦은 47%가 夜間에 發生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간 미상인 경우가 제외되고 있는데 그중 一部 또는 多數가 夜間에 發生했을 것을 勘案한다면, 全體적으로 夜間犯罪發生率이 더높게 나타날 것이다.

夜間中에서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殺人은 20:00時 ~ 24:00時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0:00時~04:00時 까지이며, 強盜와 強姦은 1順位, 2順位가 이와 반대의 時間帶로 나타난다. 한편 竊盜는 晝間에도 상당히많은 수가 범죄가 발생하나, 暴力은 역시 20:00時-24:00時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밤(20:00 ~ 24:00)과 심야(00:00 ~ 04:00)의 8時間중에 殺人은 總發生件數 對比 31%, 強盜, 強姦은 각각 39%, 竊盜는 26%, 暴力은 35%로서 犯罪發生이 集中되어 있는 현상이다.

#### 라. 凶暴化되고 있다

犯罪가 凶暴化되고 있다는 尺度중의 하나로는 凶器所持및 準備狀態를 들 수 있다.

〈표 2-6〉 殺人, 強盜犯罪의 凶器所持 現況(1992年) (單位: 件, %)

區 分	殺 人	強 盜
(凶 器 所 持 現 況)		
計	620	2,826
所 持 無	418	1,896
凶 器 所 持	202 (100)	930 (100)
銃 器	5 (2.5)	6 (0.7)
刀 劍	102 (50.5)	390 (41.9)
藥 物	4 (2.0)	67 (7.2)
鈍 器	—	3 (0.3)
其 他	91 (45.1)	547 (58.8)
(凶 器 準 備 現 況)		
計	202 (100)	930 (100)
事 前 準 備	58 (28.7)	347 (37.3)
被 害 者 的 使 用	25 (12.4)	80 (8.6)
其 他	119 (58.9)	503 (54.1)

(資料: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93)

凶器所持 및 準備에 대해서 強姦의 경우는 적합한 統計未備로 제외하고 殺人과 強盜를 中心으로 살펴보면, 犯行中 凶器를 所持한 比率은 殺人이 32.6%, 強盜가 32.9%이며, 使用凶器의 種類는 모두 刀劍類가 主종을 이루고 있는데, 殺人은 50.5%가 強盜는 41.9%가 刀劍을 使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凶器準備現況을 보면 殺人의 경우 事前準備가 28.7%, 被害者의 使用이 12.4%이며, 強盜의 경우 事前準備는 37.3%, 被害者의 使用이 8.6%를 차지하고 있다.

#### 마. 犯罪가 機動化, 廣域化되고 있다

道路網의 整備 및 자동차 普及의 擴散을 통한 생활 권역의 擴大를 基盤으로 하여 犯罪에 있어서도 車輛을 이용한 機動性犯罪가 持續적으로 增加하고 있으며, 이러한 犯罪의 機動化는 犯行對象地域 및 逃避路의 廣域化와 併行하게 된다.

#### 바. 新種犯罪가 多數 出現하고 있다

新種犯罪란 法的으로 명백히 正義할 수 있는 概念은 아니지만 一般的으로 科學化, 產業化, 都市化, 國際化등 現代 社會의 環境變化에 기인하여 발생하며, 종래의 既存犯罪와는 質적으로 다른 새로운 形態 또는 새로운 手法의 犯罪現像을 말한다. 즉 그 發生原因이 社會環境變化의 特徵에 基因한 것으로서 종래의 搜查活動이나 技法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타입의 犯罪群을 말한다.

新種犯罪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 科學技術의 發展에 따른 新種犯罪로서 컴퓨터 犯罪, CD 犯罪, 個人情報侵害犯罪, 印刷, 복사기술의 發展으로 인한 通貨偽造, 文書偽造등 ② 經濟社會構造의 變化에 따른 新種犯罪로서 보침금 目的 犯罪(殺人, 放火, 交通事故 등), 信用卡犯罪 등 ③ 都市化의 進展에 따른 新種犯罪로서 지하철 犯罪, 지하주차장 등 都市死角地帶 犯罪, 無動機殺人 등 ④ 產業化에 따른 環境犯罪 ⑤ 國際化, 開放化에 따른 外國人 犯罪 등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 사. 其 他

犯罪手法의 知能化, 犯罪의 年少化, 犯罪의 集團化 및 組織化, 犯罪階層의 一般化 등도 社會環境變化에 따른 犯罪의 特性으로 제기할 수 있겠다.

## Ⅲ. 搜查活動에 있어서 警察－國民協力の 障礙要因

### 1. 警察組織 內部要因

#### 가. 搜查警察 勤務環境의 惡化

搜查警察의 主活動領域인 犯罪搜查에 대한 國民의 要求는 상승하고 있는데 반하여, 搜查警察에 대한 社會的 認識과 內部的인 勤務要件은 惡化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Gap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 위기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

搜查人力構造와 勤務環境에 대해 살펴보면 搜查部署는 犯罪의 多發에 따라 시간의 근무로 연이어지고 있으며 오히려 公休日, 連休때에는 그 성격상 더 힘들다는 사정이다.

따라서 搜查要員들은 가정생활은 물론 승진시험을 준비할 만한 時間的 餘裕도 없고, 教育忌避現象까지 보이고 있어 先進警察이 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94年 10月 현재 서울시내 30개 警察署의 1人當 平均 擔當人口가 565名인데 비하여 서울시내 搜查警察 1人當 平均 人口分擔率은 3,083名으로서 搜查人力構造의 脆弱性과 이로 인한 勤務環境의 劣惡性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勤務環境의 劣惡등으로 금품수수 등 각종 不條理行爲에 대한 罪意識이 완전히 正化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이 搜查警察을 不信하는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 나. 搜查部署의 勤務忌避 雰圍氣 擴散

그동안 經濟界에서 蔓延되어 왔던 3D現象이 警察公務員 組織內에도 그 여파를 미쳐 몇 년전부터는 특히 搜查部署의 勤務를 忌避하는 雰圍氣가 擴散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술한 바 있는 痼疾의인 勤務環境의 惡化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忌避部署가 되어 支派出所 및 機動隊 轉出에 대한 選好度도 높으며, "편하게 살고 싶다"는 사회풍조가 일선 搜查要員들에게까지 波及, 끈기와 노력등 기본적인 刑事根性조차 退潮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할 使命感, 責任感, 矜持등이 그 存在領域을 위협받고 있다.

아울러 搜查業務를 擔當하면 사람도 못쓰게 되고, 懲戒危險도 타 부서보다 클 뿐만 아니라 승진도 어렵다는 被害意識이 팽배하고 있다.

#### 다. 搜查警察의 意識 및 姿勢

警察業務는 본질적으로 권력작용이며, 특히 搜查活動은 強制搜查라든지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에 개입한다든지 해서 알레르기적 감정을 유발할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警察官의 눈에 띄면 귀찮고 가치없다는 식의 비뚤어진 감정을 조성시켜 警察官에 대한 非協力으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요인의 주된 것으로는 이른바 특권주의의 산물인 權力主義, 수사는 우리만이 할 수 있다는 獨善主義, 필요이상으로 비밀이라는 것을 내세우는 秘密主義, 상호불신에 입각한 冷笑主義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警察에 협력하는 시민에 대한 警察官의 不親切하고 高壓的인 언행, 申告者나 提報者를 몇 차례씩 搜查機關에 불러내어 오랫동안 시간을 빼앗는 등의 행위가 그들의 선행에 고통을 주고 스스로 후회하게 만드는 부분이 되므로 이것은 우리 경찰의 큰 반성을 촉구하는 사항이 된다.

또한 협력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犯罪者에게 노출되어 그들로부터 원한을 사거나 실제 危害를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최근의 證人報復殺害事件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다.

#### 라. 人權意識不足

최근의 搜查與件은 犯罪가 量的으로도 增加하고 있음은 물론 質的으로도 종래

와는 달리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게 되어 점점 採證의 어려움을 겪는 반면, 刑訴法改正에서 보듯이 適法節次遵守를 비롯한 國民의 基本的인 人權保障側面의 強化라는 2중적 딜레마로 인하여 완벽한 物的證據가 없으면 被疑者를 觀望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아직까지도 證據中心의 搜查보다는 사람중심의 搜查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搜查上 便宜에 치중하여 高壓의 搜查行爲, 욕설, 반말 등 人身 冒瀆行爲, 구타등 苛酷行爲로 물의를 야기한 사례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과거 權威主義시대의 慣行과 行態에서 脫皮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搜查警察이라는 비난 또한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警察이 國民의 信賴를 받지 못하면 警察本然의 任務가 철저히 수행될 수가 없으며, 심하게는 警察의 存立理由도 退色하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搜查警察은 우리 民生治安의 核心이며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警察의 어느 기능보다 強調되고 있고, 搜查活動에 대한 國民들의 期待와 關心이 지대하므로 進정으로 변화된 搜查警察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絶對的인 當爲性이 存在한다.

民生治安維持能力과 搜查能力이 우수하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역시 警察의 姿勢 중에서 權力主義, 獨善主義, 秘密主義의 소지를 지적하고 있으며, 개개 警察官의 問題로서 教養의 程度, 市民的 感覺水準등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한다.<sup>12)</sup>

個個 警察官의 問題는 결국 警察全體의 問題와 통하는 것이며, 個個 警察官에 대한 평가가 國民協力の 成敗與否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個個 警察官의 姿勢 및 人權意識은 警察—國民協力關係에서 매우 중요한 前提條件이 된다.

#### 마. 搜查能力의 停滯

최근의 犯罪는 機動化(스피드化), 廣域化, 知能化, 國際化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警察搜查能力은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현재 우리 警察의 搜查能力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과거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12) 日本特別搜查幹部研究所, 搜查における國民協力の確保, 昭和 46年, 22~23面.

向上을 하였다고는 하나, 問題는 急激하게 變貌하고 있는 社會變化에 대한 對應能力이다. 이 對應能力은 現在의 犯罪情勢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樂觀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현대 搜查能力을 가름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 예를 제시해 보면 우선 初動措置의 正確性, 迅速性を 들 수 있다.

犯罪가 스피드化, 廣域化하는 가운데 이 初動措置의 迅速性を 確保하는 이른바 Response time의 短縮이 事案의 早期解決을 위한 不可缺의 條件으로서 作用한다.<sup>13)</sup>

다음 搜查情報의 管理 및 分析시스템確保는 中央裝置나 全國의 단말장치를 연결하여 犯罪申告, 情報의 蓄積, 交換, 統制나 速報, 資料檢索등의 活動이 상호간에 有效하고 스피디하게 이루어져 廣域事件의 早期識別등을 가능케 해야 한다.

이 외에도 搜查幹部들의 指揮能力, 緊急配置能力, 被疑者取調能力등 警察搜查能力의 要諦가 될 수 있는 要件은 많으나 現代社會의 急變狀況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卽應態勢가 完備되었는지는 항상 點檢하고 의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 바. PCR 및 日當的 서비스活動의 不足

國民의 警察에 대한 信賴는 根本적으로 中立性, 法治性, 公正性에서 비롯된다. 바람직한 民警關係의 確立은 위와 같은 國民이 기대하는 警察이미지의 定着으로 民警間의 信賴가 構築됨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警察에 대한 國民의 支持와 信賴構築은 警察行政과 運用이 잘 알려지지 않는 데서 어려워지므로 警察은 地域社會에 밀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警察의 프로그램이나 問題點 그리고 目標를 公開하고 일반에 널리 알림으로서,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 터전하여 일상적 서비스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國民들과의 關係를 改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PCR이라는 것은 地域團體나 개개인의 주민에 대하여 理解와 共感을

13) 警察廳 編, 警察白書, 平成 6年版, 25~30面.

얻기 위한 目的으로서, 개개 警察官이 그 地域의 職場, 團體 및 個人과 繼續的인 接觸을 가지고 活動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警察과 地域社會關係活動에 있어서 警察官 개개인의 役割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警察幹部 및 責任者는 좋은 이미지의 認識과 地域社會의 要求에 대하여 적절한 對應態度를 培養하고 支援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일선 警察官에게 반영되고 있지 않으면 그 反撥은 衝動的인 것이 되기 쉽다.

따라서 개개의 警察官은 警察役割의 向上을 위한 態度를 취할 個人的 責任을 명확히 認識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종래의 搜查는 이러한 側面에서 그 活動이 미약하고 獨善的, 經驗主義的인 搜查를 행함으로서 적극적으로 國民의 한가운데에서 搜查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先進外國에 비하여 PCR의 技法研究와 實踐方案이 미약한 편이다.

현대의 犯罪搜查가 國民의 理解와 協力を 구하여 國民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명확한 目標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지속적인 觀點에서 組織的으로, 그리고 폭넓고 底邊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PCR 活動이 犯罪搜查의 核心的인 懸案課題로서 導出되어야 한다.

#### 사. 犯罪搜查와 報道

報道機關은 警察의 業務內容 및 目的을 國民에게 傳達하고 國民을 警察의 理解者, 協力者로 誘導하기 위한 유력한 무기이며, 매체이다. 라디오, TV, 신문 등 報道媒體는 대다수 國民에게 法執行活動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法執行에 유리한 정보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건에 대한 빛나간 報道를 함으로서 警察의 적절한 追加措置가 필요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報道機關의 강대한 情報傳達能力을 고려하여, 報道機關과 긴밀한 協力關係를 確保하는 것이 요구된다.

警察과 報道機關과의 關係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어떤 공통된 事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그 入場이 틀리다는 데 있다. 즉 警察이 縮小型, 隱蔽型인데

비하여 報道機關은 浮刻型, 擴大型이라는 것이다.<sup>14)</sup>

結論的으로 警察이 평소에 國民의 理解와 協力을 얻지 못한다면 警察의 실패한 점, 어두운 면등은 報道機關의 좋은 뉴스감이 되므로 警察은 바람직한 자세를 항상 國民에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한편 報道機關의 理解와 協力을 얻어 公開搜查를 實施함으로써 事件이 해결된 사례도 많은데, 이것은 報道機關이 事件手配의 役割을 하여 國民이 搜查에 協力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아. 警察의 態도와 社會로부터의 孤立

警察은 法律執行뿐 만 아니라 犯罪統制機關으로서 市民의 權利와 行動을 制限하는 여러가지 役割을 수행한다. 따라서 警察이 市民들로부터 상당한 信賴와 尊敬을 받을 만큼 훌륭한 조직으로 變貌하지 않는한, 國民으로부터 경원시되고 社會로부터 隔離 내지 孤立될 可能性은 상당히 높다. 組織의 變貌란 制度的 改革과 같은 外形的인 變化로도 가능하지만 진정한 變化는 構成員들의 內的變化가 없이는 不可能한 것이다. 警察官은 職業의 性格上 一般人들과는 구별되는 職業人性이 형성될 수 있다. 즉 警察은 職業上 權威主義의이고 冷笑의이며 敵對의인 性格이 形成될 수 있는 것이다. Don Stewart와 Thomas Holt(1959)같은 학자는 權威主義의 概念과 役割規定의 概念을 합쳐서 警察官이나 醫師, 聖職者 또는 軍人 같은 사람들은 職業的 필요성에 따라서 權威主義的 特性을 나타낸다고 逆說하고 있다. 권위주의란 개념은 여러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 어떤 학자는 9가지 요소를 제시하고 (T.W.Adorno et al. 1960) 다른 학자는 (Robert E. Krug, 1961) 6가지 要素를 提示하고 있는데, 警察官으로서의 行爲에 影響을 미치는 몇가지 중요한 要素를 들면, 慣習主義, 冷笑主義, 權威主義的 攻擊性과 服從性, 權力과 強韌性, 善人 對 惡人 觀念 등이다. 특히 警察官은 慣習的인 中流階層 文化와 價値에 執着

14) 日本特別搜查幹部研究所, 搜查と報道, 昭和 50年, 47面;  
日本特別搜查奸婦研究所, 公開搜查, 昭和 48年, 20面.

하며, 冷笑主義가 강하여 敵對的이고 攻撃的이며 市民을 疑心하는 傾向이 강해져서, 市民과의 關係에 있어서 人間의 價値를 過小評價하고 物理的 個體를 過大評價하여 사람을 마치 物理的 客體처럼 조작하는 행태를 露出하게 된다. 그 結果는 警察과 市民間의 心理的 葛藤의 惹起이며, 市民으로부터의 警察의 孤立과 소외현상이다.

警察과 國民間의 協力關係에 障礙要因으로 作用하는 이와 같은 人性的要素는 警察組織內의 下位文化를 통하여 生成되는 社會化的 結果이기도 하며, 이러한 직업에 맞지 않는 人性的 所有者가 警察에 相當수 지원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어쨌든 이러한 특별한 人性的要素는 市民과의 關係에 있어서 非生産的인 結果를 남겨준다. 이러한 觀點에서 뉴욕시 警察出身으로 유명한 社會學者 Arthur Niederhoffer(1969)교수는 일찌기 "Behind the Shield" 란 책 속에서 警察의 冷笑主義나 權威主義가 警察活動에 얼마나 害로운 要素인가를 강하게 指摘하고 있다. 특히 그는 人生이나 世界, 一般人을 향한 冷笑主義와 警察組織自體에 대한 冷笑主義를 測定하기 위하여 20개의 尺度(질문문항)를 構成하여 警察의 冷笑主義가 그 행태에 어떠한 影響을 미치는가를 分析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警察의 意識에 관한 研究(형사정책연구원, 1991)에서 위에서 說明한 人性的 側面을 엿볼 수도있으며, 여러가지 否定的 反應을 엿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평길 교수가 1985년에 警察의 2000年代를 향한 長期發展計劃의 一環으로 調査한 바에 의하면, 警察官 스스로 警察行政을 보는 視覺에 있어서 權威主義(22%), 형식주의(20%) 등 批判的 見解가 48%로서 警察이미지에 대한 見解가 國民과 비슷하다고 指摘하고 있다. 搜查警察刷新企劃團에서 調査한 結果에서도 一般市民의 搜查警察에 대한 評價가 좋지 않다고 느끼는 警察官이 49.5%나 되어 搜查警察에 대한 市民의 信賴도가 높지 않다고 믿고 있다(信賴하거나 아주信賴는 市民은 24.3%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 犯人檢舉時 人權保障에 관하여도 犯人檢舉를 더 強調하는 警察官應答者의 比率이 무려 50%에 이르고 있다. (一般警察 52.9%, 수사경찰 50%)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1)에 의한 搜查警察의 意識研究에서도 한가지 예를 들면, 人間과 犯罪行爲와의 關係에 대한 意識調査에서 66.8%의 搜查警察應答者가

"확실히 타고난 犯罪가 있다"고 답하여 犯罪의 素質論을 首肯하는 警察官이 많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人間에 대한 否定的인, 그리고 性惡說的인 見解를 보여주는 것이다.

## 2. 外部의 環境的 要因

### 가. 警察忌避心理

警察業務는 本質的으로 國民에 대한 命令과 制限을 주로 하는 權力作用이므로 一般的으로 國民이 好意的인 感情을 느낄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警察이 政治的 中立을 지키지 못하고 執權層의 代辯者 役割을 했던 事例가 적지 않아 체질적으로 警察을 두려워하면서도 敬遠時하는 心理를 우리 國民 大多數가 經驗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최근 한 調査에서 派出所에 가본 經驗이 있는 市民을 對象으로 그 느낌을 질문한 결과 "罪人取扱 받는 것 같아 기분 나빴다"가 34.6%로 가장 많았고,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았다"가 27.8%, "그냥 겁이 났다"가 14.1%, "아주 불안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가 12.6%,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는 불과 8.7%를 나타냄으로서 상당히 강한 否定的 傾向을 보이고 있다.<sup>15)</sup>

한편 勤務中인 警察官과 대했을 때 警察官의 態度에 대해서는 "불친절했다"가 38.3%,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다"가 35.7%, "친절했다"가 25.7%로 나타나 警察官의 態度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搜查警察에 대한 意識 또한 다음 章에서 상세히 논할 機會가 있겠지만 全般的으로 否定的 視角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警察과 國民과의 사이에서 相互間 認識되는 心理狀態의 底邊에는 과거 歷史의 影響으로 殘在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日本에서도 에도 시대 악명 높은 관리

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警察에 대한 市民의 意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18), 1991, 51~52面.

16) 上揭書, 53面.

"확실히 타고난 犯罪가 있다"고 답하여 犯罪의 素質論을 首肯하는 警察官이 많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人間에 대한 否定的인, 그리고 性惡說的인 見解를 보여주는 것이다.

## 2. 外部의 環境的 要因

### 가. 警察忌避心理

警察業務는 本質的으로 國民에 대한 命令과 制限을 주로 하는 權力作用이므로 一般的으로 國民이 好意的인 感情을 느낄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우리 나라에서는 그 동안 警察이 政治的 中立을 지키지 못하고 執權層의 代辯者 役割을 했던 事例가 적지 않아 체질적으로 警察을 두려워하면서도 敬遠時하는 心理를 우리 國民 大多數가 經驗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닐 것이다.

최근 한 調査에서 派出所에 가본 經驗이 있는 市民을 對象으로 그 느낌을 질문한 결과 "罪人取扱 받는 것 같아 기분 나빴다"가 34.6%로 가장 많았고, "아무런 느낌도 받지 않았다"가 27.8%, "그냥 겁이 났다"가 14.1%, "아주 불안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았다"가 12.6%, "편안한 느낌을 받았다"는 불과 8.7%를 나타냄으로서 상당히 강한 否定的 傾向을 보이고 있다.<sup>15)</sup>

한편 勤務中인 警察官과 대했을 때 警察官의 態度에 대해서는 "불친절했다"가 38.3%,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았다"가 35.7%, "친절했다"가 25.7%로 나타나 警察官의 態度에 대해서도 그다지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搜查警察에 대한 意識 또한 다음 章에서 상세히 논할 機會가 있겠지만 全般的으로 否定的 視角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警察과 國民과의 사이에서 相互間 認識되는 心理狀態의 底邊에는 과거 歷史의 影響으로 殘在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日本에서도 에도 시대 악명 높은 관리

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警察에 대한 市民의 意識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0-18), 1991, 51~52面.

16) 上揭書, 53面.

이미지로부터 戰時中의 特高추억 등 어두웠던 단면들이 國民들의 意識속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 아직도 警察 알레르기 現狀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sup>17)</sup> 따라서 警察과 國民 相互間에 이러한 現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警察에 대한 國民의 소박한 尊敬과 親愛의 念이 喪失되고 反感이 增大됨으로써, 警察의 孤立化가 심해지고 따라서 犯罪搜查의 領域에서 國民의 協力を 기대하기란 매우 어려운 狀況이 되고 만다.

#### 나. 都市化 進展의 逆機能

國家經濟의 成長過程上 불가피한 結果로서 都市化가 加速되면서 人口의 都市集中은 現代 社會의 犯罪를 增加시키는 가장 基本的인 要因으로 認識되고 있다. 都市化와 더불어 나타나는 犯罪誘發要因으로는 人口의 集中에 따른 去來關係의 大量化 및 複雜化, 人口의 移動에 따른 社會的 紐帶感의 弱화, 共同體 構成員의 價値觀 不一致, 核家族化 및 個人主義의 發達, 貧富格差 및 貧民地域의 形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레저文化의 登場과 最近 住宅(第 1空間), 職場(第 2空間)에 이어 第 3의 空間이라고 일컬어지는 移動手段이 되는 生活空間(지하철, 자동차 등)에서의 犯罪誘發要因 또한 그 深刻성이 漸增하고 있는 趨勢이다.

이와 같이 都市化의 逆機能이라는 側面에서 相互 關聯되어 있는 犯罪誘發要因은 社會的 統制力을 弱화시키면서 犯罪의 機會를 提供하고 犯行의 隱匿이 容易하게 되며,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類型의 犯罪를 發生시키고 있다.

결국 都市化의 지속적인 進전이 불가피한 現時點에서는 地域住民間의 共同參與를 誘導하여 社會的 統制力을 涵養시키고, 이를 警察의 犯罪抑制 및 搜查活動에 活用하는 社會的 프로그램의 구사가 가장 效果的이며 根本적인 手段이 될 것이다.

17) 日本特別搜查幹部研究所, 搜查における國民協力の確保, 前掲書, 15~16面.

### 다. 犯因性 環境의 惡化

現代社會의 犯罪發生과 直間接으로 密接하게 聯關되어 있는 基盤的 要素로서 소위 犯人性環境으로는 사치향락풍조의 蔓延, 淫亂頹廢文化의 汎濫, 靑少年 教育環境의 惡化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우선 金錢萬能主義를 背景으로 하는 사치향락풍조는 단순히 과소비라는 經濟的 現象을 넘어서 相對的 貧困感의 增幅을 통한 일확천금주의의 擴散을 통하여 直接的 犯罪誘發要因이 되고 있으며, 그 裏面에는 分配政策의 소홀이나 不動產投機의 結果로 나타난 成長果實의 偏在가 構造的背景으로 작용하고 있다.

産業人力の 再分配도 消費性業所에 偏重되어 특히 大都市를 中心으로 유흥오락업소(호텔, 전자유기장)가 急速하게 擴散되고 있고, 近來에는 信用卡產業이 急速하게 성장함에 따라 신용카드犯罪은 이미 新種犯罪의 類型群으로서 자리잡은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음 傳統的인 儒敎文化圈의 影響으로 그 동안 外部的으로 노출이 抑制되어 왔던 性的慾求가 國際化的 進展을 통하여 流入된 外來文化, 특히 西歐式 성개방풍조의 影響을 받아 급속히 表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西歐式 性文化의 肯定的인 側面보다는 淫亂頹廢라는 否定的인 側面이 強調됨에 따라 暴力 淫亂性 出版物이 젊은 세대의 思考에 廣範圍한 影響을 미치고 있고, 1980年代 들어 급속히 成長하기 시작한 비디오 産業의 餘波로 暴力 淫亂性 비디오 테이프가 不法複製 流通, 은밀한 場所에서 放映됨으로써 暴力 犯罪, 組織犯罪, 性犯罪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인으로서 既成世代의 自省과 注意가 요망되고 있다.<sup>18)</sup>

마지막으로 靑少年은 自我停滯感의 危機, 反抗感, 身體的 急變과 情緒의 可變性, 社會的 未成熟등으로 要約되는 成長發達 過程上的 過渡期에 해당한다. 즉 靑少年은 그 특성상 제반 社會環境要因의 影響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年齡層이나,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란물의 유해성과 그 규제 실태에 관한 연구: -음란 비디오에 대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연구보고서 93-10), 1994, 24~27面.

학교 및 주택가와 유흥업소들의 不良環境이 혼재함으로서 靑少年이 非行이나 犯罪에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도처에 깔려있는 실정이다.<sup>19)</sup>

우리나라 學校保健法에 의하면 學校周邊 200m 이내에는 學校環境衛生淨化區域을 設定하고 諸般 有害環境이나 不良營業行爲를 制限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와 반대로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靑少年 有害環境의 增加와는 반대로 靑少年의 健全한 心身涵養을 위해 필요한 놀이 문화나 놀이 공간은 아직도 踏步狀態를 면치 못하고 있어 教育次元 뿐만 아니라 治安維持次元에서도 總體的으로 綜合對策이 필요한 부문이고, 아울러 國民의 協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문으로서 教育的 統制力과 社會的統制力을 回復해 나아가야 한다.

#### 라. 搜查活動에 대한 國民의 評價

犯罪搜查에 대한 國民의 協力は 警察의 搜查活動에 대한 國民의 評價를 基礎로 한 信賴構築이 그 助成要因이 된다.

"搜查警察의 活動에 대한 國民의 評價"에 대하여 최근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應答한 경우보다 "못하고 있다"고 應答한 경우가 더욱 많아 應答者들은 搜查警察이 맡은 任務를 충실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0)</sup>

위 表에 의하면 警察의 搜查活動中 犯人檢舉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應答하고 있으나 全體的으로 모든 役割에 대해 약 20%의 應答者만이 肯定的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 각 경우에 대하여 "잘 못하고 있다"고 應答한 比率이 相對的으로 높아 搜查警察의 搜查活動에 대한 評價는 상당히 낮다고 보아진다.

搜查가 迷宮에 빠지게 되는 理由도 警察力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搜查警察의 不條理現象에 대해서는 주로 被疑者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3-04), 1994, 163~164面.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警察에 대한 市民의 意識에 관한 연구, 前掲書, 174~177面.

에게 事件終結時 有利하게 하는 條件으로 不條理한 態度를 취하고 있다고 應答했으며, 公正하게 事件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3-1〉 搜查警察의 活動에 대한 評價

區分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잘하는 편이다	아주 잘한다	잘 모르겠다	合計 N(%)
犯人檢舉	17 (1.7)	235 (23.5)	455 (45.5)	228 (22.8)	21 (2.1)	44 (4.4)	1,000 (100.0)
證據蒐集	20 (2.0)	200 (20.0)	486 (48.6)	189 (18.9)	10 (1.0)	95 (9.5)	1,000 (100.0)
被害物 (品)還收	69 (6.9)	316 (31.6)	358 (35.8)	116 (11.6)	8 (0.8)	133 (13.3)	1,000 (100.0)
被害者 身邊保護	63 (6.3)	341 (34.1)	374 (37.4)	144 (14.4)	12 (1.2)	66 (6.6)	1,000 (100.0)
被害者에 대한 祕密 維持	43 (4.3)	262 (26.2)	373 (37.3)	185 (18.5)	20 (2.0)	117 (11.7)	1,000 (100.0)
被害者에 대한 人權 保護	61 (6.1)	383 (38.3)	344 (34.4)	92 (9.2)	7 (0.7)	113 (11.3)	1,000 (100.0)

搜查는 國民에 대한 奉仕活動이지만, 強制的이고 命令, 制限行爲를 수반하는 만큼 立場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國民彈壓의 手段이라고 풀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誤解와 偏見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警察이 國民의 한가운데에서 보다 積極姿勢를 취해 나가야한다.

### 3. 市民의 意識 및 態度

여러가지 관계 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市民들은 警察에 대하

에게 事件終結時 有利하게 하는 條件으로 不條理한 態度를 취하고 있다고 應答했으며, 公正하게 事件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표 3-1〉 搜查警察의 活動에 대한 評價

區分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잘하는 편이다	아주 잘한다	잘 모르겠다	合計 N(%)
犯人檢舉	17 (1.7)	235 (23.5)	455 (45.5)	228 (22.8)	21 (2.1)	44 (4.4)	1,000 (100.0)
證據蒐集	20 (2.0)	200 (20.0)	486 (48.6)	189 (18.9)	10 (1.0)	95 (9.5)	1,000 (100.0)
被害物 (品)還收	69 (6.9)	316 (31.6)	358 (35.8)	116 (11.6)	8 (0.8)	133 (13.3)	1,000 (100.0)
被害者 身邊保護	63 (6.3)	341 (34.1)	374 (37.4)	144 (14.4)	12 (1.2)	66 (6.6)	1,000 (100.0)
被害者에 대한 祕密 維持	43 (4.3)	262 (26.2)	373 (37.3)	185 (18.5)	20 (2.0)	117 (11.7)	1,000 (100.0)
被害者에 대한 人權 保護	61 (6.1)	383 (38.3)	344 (34.4)	92 (9.2)	7 (0.7)	113 (11.3)	1,000 (100.0)

搜查는 國民에 대한 奉仕活動이지만, 強制的이고 命令, 制限行爲를 수반하는 만큼 立場을 달리하는 사람에게는 國民彈壓의 手段이라고 풀이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誤解와 偏見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警察이 國民의 한가운데에서 보다 積極姿勢를 취해 나가야한다.

### 3. 市民의 意識 및 態度

여러가지 관계 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해 보면 대부분의 市民들은 警察에 대해

여 肯定的이고 好意的이며 支持的인 태도를 가진다. 그렇지만 警察에 대하여 대단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시민도 상당수 있다. 물론 국민이 警察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은 地域社會에 따라서, 그리고 인구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진다.

어쨌든 警察一般이나 搜查警察에 대한 市民의 인식과 태도는 法意識과 더불어 여러가지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警察과 국민간의 協力關係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뿐만 아니라 인종, 성, 연령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警察과의 접촉경험, 司法府와의 접촉경험, 犯罪被害의 경험과 犯罪에 대한 공포 및 피해의식, 그리고 주거지역에서의 안전의식, 지역사회변수로서의 주거지역의 구성 및 근린의 영향, 警察과의 親密性 등은 警察에 대한 시민의 태도는 물론 犯罪搜查上 국민역의 역할 즉 警察—國民간의 協力關係와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와 같은 가정들은 관련연구들의 검토에 의하여 분명해질 것이다.

#### 가. 年 齡

年齡은 다른 개인적차원의 변수들보다 더예측적인 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警察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豫測力이 있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를 들면 Hadar and Snortum(1975), Thorntom(1975), Thomas and Hyman(1977) 그리고 Klein et al(1978) 등은 그들의 연구결과 젊은이들보다 장년 이상의 사람들이 警察에 대하여 보다 肯定的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Sparks et al(1977)과 같은 연구자들은 年齡은 警察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없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綜合的으로 보면 연구결과들이 어느 정도 一貫性이 없고 결론내리기 어려운 면도 있으나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警察에 대하여 否定的인 태도를 견지한다고 나타내고 있다. 對警察태도에 대한 年齡의 영향에 관한 경험적 증거를 찾아낸 많은 연구자들은 젊은 사람들은 犯罪行爲를 하기 쉬운 인구집단이며 그래서 警察에 대해 否定的인 태도를 가진다고 인

식하고 있는 것이다.

#### 나. 性

경찰에 대한 태도에 관한 일단의 연구자들은 性과 시민의 태도간의 관계를 검토하였는 바,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관계가 있다는 研究結果를 제시하고 있고, 또 어떤 연구의 결과는 경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性의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Hadar와 Snortum(1975)은 "語義的 差異法(Semantic Differential)"을 이용하여 경찰의 개인적 특성을 평가하려고 시도하였는데, 남녀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경찰에 대하여 否定的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Thornton(1975)역시 犯罪와 暴力, 警察과의 경험이나 暴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年齡과 性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Thornton에 의하면 犯罪, 暴力 그리고 警察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警察과 否定的인 접촉경험을 많이 가지게 되어 경찰에 대하여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젊은 남성들은 경찰에 대하여 보다 否定的인 태도를 갖는다고 믿어진다.

이러한 주장과 반대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 바 Campbell과 Schuman(1972), Sparks et al(1977) 그리고 Winfree와 Griffith(1977)는 경찰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性의 영향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이들은 性이 경찰에 대한 태도변화를 별로 설명치 못하거나 전혀 설명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Thomas와 Hyman (1977)은 어느 정도 놀랄만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데, 남성이 오히려 경찰에 대하여 더 肯定的인 태도를 가진다는 것이었다.

많은 연구들이 시민의 對警察態度에 관한 性의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아직도 性과 對警察態度間의 관계에 관한 一貫性이 있거나 確定的인 연구결과는 없는 것 같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대로 남성들이 犯罪에 보다 더 露出되며 따라서 보다 더 警察과 否定的인 태도를 가

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性は 警察과 犯罪와의 차별적 경험의 영향에 의하여 警察에 대한 태도에 仲裁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다. 社會經濟的 地位

교육, 직업, 생활수준과 같은 社會經濟的 地位는 警察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다른 개인적 속성들보다 關聯性이 비교적 적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학자들은 매우 확실한 證據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그 중요성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면 walker et al(1972)나 Jacob(1971) 같은 학자들은 警察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社會經濟的 變數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시사하고 있다. Walker와 그 동료들은 사회계층과 警察에 대한 평가간에도 正的인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警察과의 접촉을 불만스럽게 여기며, 警察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수입과 警察에 대한 태도의 두 가지 측정, 실제 警察行爲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간에는 負의 相關關係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Schuman과 Gruenberg (1972)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얻었는데, 저소득계층 지역에서는 상대적 剝脫感의 척도가 제일 높았으며 警察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다고 보고하고 있다. Thornton(1975)이나 Thomas와 Hyman(1977), 그리고 Benson 같은 학자들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Thornton은 수입과 직업은 對警察態度에 영향을 미치며 하류계층 사람은 警察에 대하여 否定的인 태도를 가진다고 보고하고, 다른 세 학자들도 저소득계층 집단들은 警察에 대하여 더 批判的이고 否定的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Smith와 Hawkins(1973)는 교육, 수입, 직업 등은 對警察態度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Lovrich와 Taylor (1976)도 對警察態度에 대한 수입의 영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對警察態度에 대한 社會經濟的 地位의 영향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媒介變數들의 可能性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Thornton은 하류계층집단들 사이에서 警察에 대한 만족도가 낮

은 것은 그들이 犯罪에 가장 많이 관여되고 警察과 개인적 접촉을 가질 기회가 가장 많으며, 또 警察은 이들을 差別的으로 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Jacob(1971) 같은 학자도 社會經濟的 地位는 어느정도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나 근린의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종합적으로 본다면 社會계급과 對警察態度 間에는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으나 그것이 강력한 관계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오히려 이들 요소 사이에는 犯罪에의 노출, 警察과의 경험, 그리고 地域社會構造 같은 媒介變數들의 영향이 작용하는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 특성은 對警察態度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된다. 一貫性 있는 것도 아니고 結論的인 것도 아니지만 개인적 특성들은 對警察態度에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 여러가지 증거들이 있음은 사실이다. 즉 젊은 사람들, 남성들, 그리고 저소득 집단들은 警察에 대하여 否定的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그 이유는 警察이나 犯罪와의 差別的 경험 그리고 相異한 地域사회 구조간의 相互作用效果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들은 犯罪에 더 많이 노출되고 警察과의 否定的 경험을 더 많이 가진다. 저소득층 사람들은 犯罪가 만연되고 犯罪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어 있는 지역에서 살며, 警察에 의해 학대받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같은 犯罪라도 逮捕되는 비율이 높고 더 엄한 刑罰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社會제도를 더 否定的으로 보는 것 같다.

이 모든 요인들이 否定的인 對警察態度의 원인이 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警察에 대한 消極的이거나 否定的인 태도는 위에서 제시한 모든 요인들의 相互作用的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警察과의 接觸 經驗

위에서 요인들간의 相互作用效果를 설명하였지만, 사실상 개인적 특성 보다 다른 변수들이 對警察態度의 변화 설명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Winfree와 Griffith(1977)도 警察의 지위에 대한 신념만큼 警察과의 接觸內容이 시민의 對警察態度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특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여러가지 연구들에 의하여 警察과의 경험과 접촉이 對警察態度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 이유는 警察과의 접촉 상황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Boggs와 Galliher, 1975; Rusinko et al, 1978; Scaglion and Condon, 1980; Dean, 1980)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警察과의 접촉은 여러가지 행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크게 구분한다면 自意的(自發的), 市民率先的 접촉과 他意的(非自發的), 警察率先的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自意的 접촉은 대부분 시민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他意的 접촉은 審問調查의 目的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위반 티켓의 발부와 같이 搜索 혹은 逮捕는 후자의 範疇에 속한다 할 것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警察에 대한 태도와 警察과의 접촉경험 간의 관계에 관하여 상당히 一貫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警察과의 否定的 경험은 警察에 대한 태도나 평가에 있어서 否定的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Jacob, 1971; Bordua and Tifft, 1971; Ostrom and Whitaker, 1973; Walker et al, 1972; Smith and Hawkins, 1973; Boggs and Galliher, 1975; Sparks et al, 1977; Carter, 1983, 1985).

영국에서 Sparks의 경우에도 시민이 率先했든, 警察이 率先했든 警察과 접촉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警察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도, 과거의 불만스런 警察과의 접촉은 警察에 대한 일반적인 불만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Caster 같은 학자는 警察과 접촉경험을 가지기 전까지는 警察에 대한 태도가 좋다고 결론 짓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연구자들이 警察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肯定的接觸, 주로 自意的接觸을 포함시키고 있다. Ostrom과 Whitaker (1973)는 警察의 도움을 받은 시민들은 그렇지 않은 시민들보다 警察의 業務遂行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Parks(1976)도 警察의 도움과 평가간에는 어느 정도 肯定的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Rusinko(1978)와 그의 동료들도 警察과의 肯定的接觸은 否定的接觸을 중화시킨다고 지적하면서 警察官의 支援的 행위는 警察에 대한 先入見을 중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Tylor(1984)도 유사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끝으로 Scaglion과 Condon(1980)도 길이나 정보를 묻는

행위와 같이 非公式的으로 警察과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은 警察에 대하여 더 만족스러워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라 警察과의 친밀성은 이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Furstenburg and Wellford, 1973; Parks, 1976; Condon, 1980; Percey, 1980; Thornton, 1975; Klein et al, 1978), 시민의 對警察態度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警察이 시민의 奉仕要求에 반응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취한 행위와 관련해서 警察反應의 본질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警察의 迅速性, 시민의 요구에 대한 警察의 反應時間 등이 警察의 評價와 肯定的인 관계가 있고,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얻어진 서비스의 評價는 警察에 대한 태도와 가장 密接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Percey 같은 학자는 警察이 시민의 기대보다 빨리 도착했을 때 시민들은 만족하게 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그는 警察의 행위는 反應時間만큼이나 시민의 對警察滿足度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警察과의 接觸은 시민의 對警察態度에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시민의 自意的 접촉, 짧은 반응시간, 警察이 취하는 행위 등은 警察에 대한 肯定的 태도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犯罪被害의 經驗

犯罪에 대한 被害經驗이나 被害意識, 공포감 등은 警察의 業務遂行 評價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犯罪被害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警察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해경험은 犯罪統制에 있어서 警察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Parks, 1976; Sparks et al, 1977; Skogan, 1979; Koenig, 1980) 犯罪被害 경험이 警察에 대한 평가는 물론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by Koenig) 犯罪被害者 중에도 특히 對人犯罪 被害者들이 警察에 대하여 非好意的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들과 반대되거나 비교되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학자들(McIntyre, 1969; Smith and Hawkins, 1973)도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犯罪에 대한 被害經驗, 被害時 警察의 反應(시간과 취한 행위)은 對警察態度的 형성에 중요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바. 地域社會 變數들

어떤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警察이나 司法府와의 접촉 혹은 犯罪被害의 경험과 관계없이 어떤 집단들은 警察에 대하여 非好意的 견해나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보다 일반적인 文化的影響 또는 下位文化的 影響의 부분으로 사회화 과정속에서 그러한 태도가 계승된다는 것이다.(Thornton, 1975) Schuman과 Gruenberg도 근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Apple과 O'Brien(1983)도 개인의 특성이나 성격과 그가 살고 있는 환경의 相互作用 효과를 가정하고 있다. Walker(1972)는 흑인사회에서 警察에 대한 支持度가 낮은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지역 사회에서의 부적절한 구조적 영향을 들고 있다.

그리고 Shaw와 Williamson(1972)이 영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산층의 주거지역이 警察에 대하여 가장 好意的 태도를 나타내며, 다음으로 혼합된 사회 계층 주거지역, 안정적 노동계층 주거지역 순으로 호의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한다.

근린의 사회계층과 문화적 구성뿐만 아니라 犯罪와 관련된 근린변수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면 Chackerian과 Barrett(1973)은 犯人逮捕에 警察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것이 警察에 대한 평가와 肯定的인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對警察態度에 대한 근린의 安全意識과 犯罪동향의 영향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변수들과 警察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는 예측된 방향에 있으면서도 결론을 내리기엔 未洽한 것 같다.

Thomas나 Hyman(1977)과 같이 반대 내지는 대조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들(Skogan, 1979; Carter, 1983)도 있으나, Parks(1976)나 Apple과 O'Brien(1983)처럼 근린의 犯罪率이나 근린에서의 安全意識은 警察에 대한 태도나

만족도와 관계가 있다는 학자들도 있다.

Benson(1981)은 犯罪가 증가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警察에 대하여 더 비관적인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Carter(1985)도 犯罪에 대한 공포나 被害經驗은 警察에 대한 평가와 負의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으로 警察에 대한 시민의 의식 및 태도와 관련된 여러가지 요소들을 검토하였는 바, 이들 요소들은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警察과 국민의 協力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앞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위에서 제시된 여러가지 요인들은 犯罪搜查상 국민의 역할 즉 警察－國民間의 協力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시민의 對警察의식과 태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警察－國民協力の 障礙要因으로서의 시민의 의식과 태도를 검토하는데 있어서 필히 조사해야 할 요소들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 IV. 研究의 結果 및 分析

### 1. 警察 內外部要因과 協力關係

최근 우리 警察廳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搜查警察實態調查<sup>21)</sup> 결과를 살펴보면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搜查警察이 상대적으로 근무시간과 과다업무로 인한 歸家不能日數가 많아 不滿要因으로 작용하고 있고, 搜查警察의 昇進可能性에 대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47.8%로서 반정도가 되며 一般部署 근무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승진여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7%나 되어 상대적으로 被害意識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搜查警察의 士氣에 대해서는 4.7%만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 一般警察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懲戒經歷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의식에 대하여서는 搜查業務 수행시 인권보장 및 對民便宜 고려의식이 90.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업무량과다로 인하여 인권 및 對民便宜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도 많았다.

警察의 搜查結果에 대해 시민이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搜查要員 스스로가 24.3%만이 신뢰하고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서 매우 낮은 자기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시민의 무조건적인 警察不信風土를 65.6%나 들고 있어 警察-國民 協力關係 확보에 있어서 이 요소가 警察 內部的으로도 큰 障礙要因으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의 搜查協助에 대해서도 搜查警察의 71.1%가 非協調的이라고 느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搜查과정에서 시민들이 번거롭게 느끼기 때문일 것이라는 응답이 71.1%나 차지하고 있어 警察-國民 協力關係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시민을 대상으로 『警察의 一般活動에 대한 認識』을 알아본 조사결과, 현

21) 搜查警察刷新企劃團, 搜查警察實態調查 分析結果, 1994. 4

재 警察의 犯罪對應能力은 68.4%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로서 警察의 人員 및 裝備不足(47.9%)과 使命感不足(16.4%)을 들고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警察의 사건해결 여부를 떠나 警察이 친절하게 대해줄 때 가장 잘 한다고 평가하고 있어(42.8%), 우리 경찰의 자세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시민의 搜查警察에 대한 인식 중 중요한 것으로는, 警察의 搜查活動全般에 대해 보통(51.6%), 또는 못한다(20.4%)로 평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搜查警察의 당면 개선과제로서 人權尊重方法 마련(42.1%)과 檢舉能力提高(17.7%)를 들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搜查警察의 人權尊重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범죄목적시 대부분이 신고(69%) 또는 협조하겠다(54.4%)라고 하면서도 "秘密保障" 및 "수사과정상 번거롭게 하지 않을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어 申告者 秘密保障 및 불편을 주지 않는 搜查方法의 개선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아울러 搜查結果의 滿足度提高를 위해 청탁배제, 공정수사, 사건처리 기일단축을 위한 방안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현대 搜查能力을 가늠할 수 있는 尺度 중 代表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초동措置의 신속 전개를 위해서는 Response time의 短縮과 긴급배치 능력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일본에서는 통신지령시스템으로서 110번 제도가 폭넓게 시민에 정착되어 있어 사건, 사고에 강한 日本警察의 큰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표 4-1〉 Response time과 現場檢舉 狀況 (1993년)

Response time 구분	3분 미만	3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10분 미만
到着件數(件)	11,758	37,247	84,383
檢舉件數	2,838	5,275	8,413
檢舉率(%)	24.1	14.2	10.0

이 표는 1993년 日本警察의 대도시에 있어서 現場到着時間 및 現場檢舉狀況을

나타낸 것으로서 역시 Response time이 빠를수록 現場檢擧率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22)</sup>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서울의 경우 112신고접수 총 621,970건 중 오히려 Response time 측면에서는 日本보다 양호하나 5대事犯 現場檢擧率이 평균 7.2%를 나타내고 있어 또 다른 측면에서의 搜查能力 향상을 시사하고 있다.<sup>23)</sup>

緊急配置 실시상황에서도 일본의 경우 높은 범인 檢擧率을 나타내고 있다.<sup>24)</sup>

〈표 4-2〉 緊急配置 實施 狀況 (1989~1993년)

구 분	1989	1990	1991	1992	1993
실시건수(건)	5,829	5,689	5,730	5,899	6,201
검거건수(조)	2,539	2,405	2,341	2,289	2,444
검 거 율(%)	43,6	42,3	40,9	38,8	39,4

최근 교통사정의 악화, 건물 또는 주택구조의 복잡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Response time의 단축이나 긴급배치에 나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설비 및 도입에도 박차를 기해야겠으나, 무엇보다도 사건·사고 현장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긴요한 해결요소가 되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바람직한 民警關係의 확립은 국민이 기대하는 警察이미지의 정착으로 民警間의 신뢰가 구축됨으로써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警察이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警察의 프로그램이나 문제점, 그리고 목표를 공개하고 일반에 널리 알림으로써, 그리고 이러한 사고에 터전하여 일상적 서비스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만 그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미 전술한 바와 같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Community Policing이라고 불리우는 警

22) 立花書房, 警察白書, 平成 6年版, 29面

23) 警察廳, 警察統計年譜, 第 38 號, 1994. 70-71面

24) 立花書房, 前掲書, 28面

警察活動이 다각적으로 그리고 폭넓게 시도되어 왔다.<sup>25)</sup>

이하에서는 선진국의 Community Policing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警察-國民協力關係의 모색에 그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Community Policing은 미국에서 1930년대에 『警察活動에 있어서 가장 革新的인 운동』이라는 주창하에 개념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새로운 조직전략으로서 가장 특기할 만한 警察의 노력』(Steele, 1987)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먼저 미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각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法執行活動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참가와 협력을 구하여 주민과 일체화를 도모하는 警察活動이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자동차에 의한 patrol 보다는 徒步巡察 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한 patrol에 역점을 둔다거나, 그 지역의 size에 맞는 Mini Station을 운영한다던가,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防犯活動을 전개하는 등 警察의 점점확대 治安戰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추어 민간에서는 1970년대부터 防犯診斷, 가로등 개선, 犯罪被害者에 대한 원조활동 등 근린경계활동이 실시되었다.

Community policing의 구체적 사례로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New York시 警察이 198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地域 警察官 計劃(CPOP:Community police officer Program)』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New York시 patrol警察官은 약 15개 블록을 전후로 지역을 할당하고 도보에 의한 patrol, 지역회합에의 출석, 방범지도 등을 통하여 주민으로부터 요망사항을 청취하고 지역의 다양한 Needs에 부응한 문제해결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New York시의 民間防犯組織인 CITIZENS(Committee for new New York)는 지역대표에게 防犯教育을

25) 立花書房, 상계서, 70-80面; 立花書房, 警察學論集.. -主要諸外國の 警察制度 II-, 제 48권 제 5호, 1995.7. 1-109面; Cyril D. Robinson, Richard Seagion, with J. Michael Olivero, Police in Contradiction, -The Evolution of the Police Function in Society, Greenwood Press(Westport, Connecticut), 1994, pp 133-148; Richard E. Sykes and Edward E. Brent, policing. -A Social Behaviorist perspective-, Rutgers University Press(N.J), 1983. pp 149-176.

실시하고 청소년그룹 활동 등도 지원하는등 New York 警察과 공조체제를 잘 형성하고 있다.

San Francisco시에서는 民間防犯組織 SAFE(Safety Awareness for Everyone)가 주민의 근린경계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조직에 소속된 防犯專門家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방문자문 및 방법지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SAFE 역시 市 警察과 돈독한 유관관계를 맺고 있다.

필라델피아 市警察은 1980년 후반부터 Mini police인 Sub Station 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警察官이 지역주민 및 Police Adviser라고 불리는 지원봉사자들과 함께 합동 patrol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地域安全 활동이라는 목표아래 警察의 활동과 병행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다양한 自願奉仕活動 유도과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상실되어 가는 지역주민들의 연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犯罪抑止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강구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활동을 확대, 개선해 나가는 것이 일본에서의 Community Policing의 연구영역이 된다. 현재 일본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서는 아이지켄(愛知縣)의 가쓰가이市(春日井市)의 방범협회활동을 들 수 있다.

이 방범협회는 市警察의 지원과 협조아래 세가지 주요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법 Model 도로의 설정, 어두운 곳 진단의 실시, 사랑의 patrol활동 合同巡察이 바로 그것이다.

防犯 Model 도로는 같은 縣 나고야市(名古屋市)에서 일본최초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특정생활 도로를 중심으로 시가지의 물리적 환경을 정비하고 그 정비작업을 상징적으로 조직하면서 지역전체의 防犯能力을 향상시키려는 시도로서 環境設計에 입각한 것이다.

『防犯 Model 도로』라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방법 벨, 방법등, 그리고 공중전화 Box를 관계기관에 연결시켜 가동시킴으로써 犯罪者의 犯罪意圖나 심리를 사전에 억지 시키는데 효과적이고, 특히 路上犯罪의 방지나 搜查에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그 동안 警察과 국민과의 유대관계가 희박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

이 부각되어 1991년부터 Sector Police라고 불리우는 지역유대 강화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警察署의 관할구역을 몇개의 Sector로 나누어 Sector 별로 治安責任을 지우는 警察 Team을 파견하고 있는데, 해당 Team에게는 독자적으로 治安重點目標를 설정하여 활동케하고,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까지 부여하고 있다.

한편 1988년부터는 Safer Cities Project를 실시하여 국내의 20개 지구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Project에서는 각 지구의 실정에 맞는 주택의 안전, 유선방법 TV의 설치 등 공공장소에서의 安全對策, 企業安全對策, 藥物濫用防止對策 수립을 중점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자가 警察官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特別警察官(Special Constable)제도가 있으며, 特別警察官은 무보수로서 一般警察官과 똑같은 권한과 임무를 가진다.

그들은 犯罪防止를 위한 근린경계 활동을 폭넓게 수행하고 있는데, 1982년에 이 제도가 개시된 이래 약 115,000個 所에서 실시되고 있다. 보험회사 중에서는 이 제도의 실시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보험료를 할인해 주기도 한다.

싱가포르에서는 1983년부터 지구派出所(NPP:Neighbourhood Police Post)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어, 본격적인 확대실시를 하고 있다. 1994년 8월말 현재 전국 7개 警察署 산하에 91개의 NPP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 NPP에는 약 20명의 警察官이 배치되어 3 교대제로 徒步巡察, 가정방문, 防犯指導, 신분증명서 및 주소변경 업무 등을 수행한다.

犯人檢舉와 사건해결을 위하여 시대가 흐름에 따라 국민의 犯罪搜查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더욱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警察에서 국민의 犯罪搜查에 대한 협력을 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公開搜查가 행해지고 있는데, 신문, TV, 라디오 등의 보도기관에 협력을 구하는 것과 사람의 출입이 잦은 장소에 포스터, 전단 등을 게시 및 배포하는 방법이 있다.

매스컴이 발달할수록 이 公開搜查方法은 그 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3. 5.1 부터 방영되어 1994년에 종영된 TV의 "사건 25시"를 통하여 48회 방송현재 총 47명이檢舉되거나 자수하여(검거 34명, 자수 13명) 公開搜查의 역할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사건 25시" 이후 이어지는 "警察廳 사람

들"에서도 1995년 4월부터 指名手配를 하여 우리나라 公開搜查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sup>26)</sup>

그러나 搜查警察의 실태에 대한 자체조사에서는 搜查警察들이 수사과정에서의 언론보도태도에 부정적이며, 搜查活動에 방해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對言論關係 개선 및 홍보가 요망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3년 11월에 전국을 대상으로 『搜查活動 등에 대한 시민협력 확보 및 指名手配被疑者 搜查強化月間』을 실시하여 포스터와 전단을 대량으로 배포하고, 都道府縣 警察의 搜查담당 과장들이 TV에 출연하여 사건발생시의 신속한 상황통보, 搜查情報 제보 등에 관한 협력을 구하며, 警察廳指定被疑者31名, 都道府縣 警察指定被疑者42名에 대한 공개 搜查를 하였는데, 警察廳指定 重要指名手配被疑者3名을 비롯하여 1,989명의 指名手配被疑者를 檢舉한 개가를 올린바 있다.<sup>27)</sup>

## 가. 記述的 分析 結果

### 1) 法意識에 관한 記述的 分析

앞에서 설명한 대로 "法意識"을 "法에 대한 태도"와 "法違反 許容度"로 나누어 측정하였는바, 법에 대한 존중의식이 매우 강하고, 법위반 허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문화적 접촉이론에 의하여 가정할 수 있듯이, 犯罪學習 面에서 바람직할 뿐 만 아니라 犯罪搜查上 國民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이 충분하다.

"法에 대한 태도"는 法の 필요성, 法の 정당성, 法の 차별성을 중점으로 하여 5개문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는 바, 法の 필요성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50%가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응답자의 37.5%는 "그런 편이다"라고 답변하여, 90%에 가까운 대부분의 응답자가 法の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6) 搜查警察刷新企劃團, 前掲報告書.

27) 立花書房, 前掲 警察白書, 142~143面.

5.3%가 "그저 그렇다", 1.3% 응답자만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法の 정당성에 관하여는 상당히 다른 태도가 반영되고 있다. 즉 法の 정당성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답을한 응답자는 5.7%에 지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답변하여 法の 정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응답자도 23.7%로 法の 필요성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수가 법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21.9%정도는 긍정도 부정도 안하지만, 15.5%정도는 法の 정당성을 극히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42.8%의 응답자도 法の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法の 차별성 즉 法の 차별적 집행에 관하여도 法の 정당성과 마찬가지로 法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집행된다고 믿는 응답자가 대부분이었고(매우 그렇다 29.6%, 그런 편이다 47.4%), 法の 차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9.2%(그렇지 않은 편이다 7.4%, 전혀 그렇지 않다 1.8%)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13.5%의 응답자가 "그저 그렇다"고 반응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法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法の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法の 정당성은 의심하며, 法은 차별적으로 적용, 집행된다"고 믿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法意識의 한 단면으로 法の 위반에 대한 국민의 허용도는 어느 정도인가? 法の 위반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3% 미만) "사리에 맞지않는 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7.5%에 달한다. "그런 편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도 10.3%나 된다. 그러나 63.3%에 이르는 과반수는 法違反 허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法の 정당성을 믿지 않고, 法の 차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과반

〈표 4-3〉

法意識에 관한 記述的 分析

(단위 : %)

구 분		매우그렇다	그런편이다	그저그렇다	그렇지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법 의 식	법에 대한 태도	50	37.5	5.3	1.3	5.9
	법의 필요성	537	23.7	21.9	42.8	15.5
	법의 정당성	29.6	474	13.5	7.4	1.8
	법의 차별성	7.5	10.3	18.6	63.3	3

수는 法違反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서양의 물질문화의 영향으로 우리의 가치체계가 무너졌다고 보는 견해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으나, 아직은 유교문화에 의한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지 않아 규범준수의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 2) 警察에 대한 一般의 態度에 관한 記述的 分析

警察官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8개문장으로 측정하였던 바, "警察은 高壓的이다"라는 질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을 합산한 결과,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여 警察에 대하여 아주 좋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응답자는 4.4%에 불과하며, "그런 편이다"라고 답변하여 어느정도 肯定的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응답자도 23.3%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같은 현상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는 警察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특히 "警察은 高壓的이다"라는 질문에는 15.6%가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40.0%)라고 답변하고, 단지 17.9%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警察의 高壓的 자세를 나타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警察에 대한 친근감이나 신뢰성 면에서도 응답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매우 그렇다 2.5%, 그런 편이다 14.3%). 특히 警察을 친근하게 느끼는 국민의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그런 편이다 이상 11.9%)

〈표 4-4〉 警察에 대한 態度의 記述的 分析 (단위:%)

구 분		매우	그런	그저	그렇지 않은	전혀
		그렇다	편이다	그렇다	편이다	그렇지 않다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경찰이 고압적이다	15.6	40.0	28.2	12.4	2.5
	경찰에 대한 친근감	2.8	9.2	30.9	37.0	20.2
	경찰에 대한 신뢰성	2.3	19.8	38.2	29.2	10.6

## 3)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에 관한 記述的 分析

搜查警察에 대한 국민의 태도는 "搜查警察에 대하여 어떻게 얼마나 생각하십니까?"하는 질문문항과 "警察의 搜查結果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문항 등 2개 질문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이와 관련된 질문으로 警察의 일차적 역할, 搜查警察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는 이유, 搜查結果에 대한 불신의 이유, 公開搜查에 대한 의견과 시민이 警察業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표 4-5>에서 보듯이 搜查警察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는 부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높았고 39.6%의 응답자가 "거부감이 있어 될 수 있으면 접촉하고 싶지 않다"고 반응하였으며 "별 느낌이 없다"고 답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낸 응답자도 32.5%에 이르며, 27.9%의 응답자들만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 "고생하므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한편 警察의 搜查結果에 대하여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8.3%에 지나지 않으며 대다수(50.4%)가 중립적인 의견을 나타내고, 21.3%의 응답자는 불신한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搜查警察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를 물었을 때<표 4-6 참조>는 29.7%가 "막연한 선입견 때문"이라고 답하고, 26.2%의 응답자는 "搜查警察이 高壓的이고 權威的인 자세를 취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16.4%는 교통위반적발등 경찰에 의한 피해의식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14.2%는 "搜查警察이 형식적이고 경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표 4-5>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 (단위:%)

	부정적	중립	긍정적
수사경찰에 대한 태도	39.6	32.5	27.9
수사결과	21.3	50.4	28.3

그리고 搜查結果에 대한 불신의 이유를 물었을 때 <표 4-7 참조> 무조건 불

신한다는 응답자도 4.1%나 되었으며, 13.8%의 응답자는 搜查警察의 搜查能力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26.3%는 안이한 搜查態度 때문에 搜查結果를 불신한다고 응답하였다. 더나가서 搜查警察의 정직성에 의심이 가기 때문에 搜查結果를 불신한다는 응답자도 16.1%에 이르고 있다.

〈표 4-6〉 搜查警察에 拒否感을 느끼는 理由 (단위:%)

막연한 선입관	경찰의 고압적, 권위적 자세	피해의식	형식적/경직적 사건처리	부도덕한 일처리
29.7	26.2	14.2	16.4	13.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搜查警察에 대한 거부감과 搜查結果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는 이유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많음을 볼 수 있다.

警察의 일차적 역할에 대한 질문에는 〈표 4-8〉에서 보듯이 42.9%의 응답자가 "우범자 감시, 犯罪豫防"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14.9%만이 "犯罪事件搜查, 犯人逮捕"라고 응답하여 警察의 역할이라는 견지에서 搜查警察의 비중을 다시 생각하게 하며, "시민에 앞장서서 사회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警察의 1차적 역할이라고 답한 응답자(25.1%)와 "일반 시민의 일상적요구에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警察의 역할(13.9%)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40%에 달하는 것은 犯罪統制, 秩序維持, 法律執行 등 警察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즉 奉仕活動의 중요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할 것이다.

〈표 4-7〉 搜查結果에 대한 不信 理由 (단위:%)

무 조건	수사능력 미흡	안이한 수사태도	수사경찰의 정직성의심
4.1	13.8	26.3	16.1

〈표 4-8〉 警察의 一次的 役割 (단위:%)

우범자감시, 범죄예방	범죄수사, 범인체포	시민에 대한 봉사	사회도덕의 실천
42.9	14.9	25.1	13.9

다음으로 公開搜查에 관하여는 절대다수의 응답자들(79.5%)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15.9%의 응답자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국민들은 搜查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搜查上 公開搜查의 효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겠지만, 응답자의 수적 비중을 고려하면 公開搜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표 4-9〉 公開搜查의 必要性 (단위:%)

인 정	부 정
79.5	15.9

끝으로 "시민들이 搜查警察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려면, 搜查警察의 측면에서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견에는 다양한 답변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35%정도), "搜查上 공정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와 "權威主義的 태도를 불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27.4%와 24.8%로 나타나고 있어, 搜查警察과 시민의 協力關係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친절, 搜查의 공정성, 非權威主義的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표 4-10〉 搜查警察의 改善해야 할 點 (단위:%)

시민에게 친절	공정한 태도	권위주의 불식
35	27.4	24.8

#### 4) 犯罪 및 警察에 대한 경험과 市民의 役割에 관한 記述的 分析

警察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태도를 警察 - 國民協力の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여 설명하였는바, 이러한 시민의 의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警察 - 國民 協力關係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犯罪被害經驗, 犯罪에 대한 공포및 被害의식, 주거지역에서의 안전의식, 警察과의 접촉경험, 司法府와의 접촉경험, 그리고 警察과의 친밀성과 지역사회변수로서의 주거지역 등을 들었다.

아울러 警察 - 國民協力關係에 대한 측정방법으로 역할경험(예, 신고)과 搜查活動에 협조할 기회가 있을 경우 시민의 역할의식을 문의하였다.

犯罪被害의 경험은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피해시 시민의 역할도 1개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搜查협조시 시민에 대한 警察의 대우와 犯罪被害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다.

그 결과 犯罪被害者가 되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7.3%고 (전체 응답자 839명 중 229명)였고, 이 중에서 51.5%정도가 "신고했다"고 답변하였으며, 34.3%에 해당하는 79명이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범인을 체포했거나 체포하려고 시도한 경우도 9.2%에 달하며, 체포 후 증인으로 진술까지 했다는 응답자도 5%나 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의 3분의 2정도가 犯罪被害者가 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며, 犯罪搜查에 관하여 警察에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응답자의 3분의 1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표 4-11〉 犯罪被害 經驗과 役割 (단위: %, 명)

피해경험		조치내용	
있다	27.3 (229)	신고했다	51.5 (95)
		신고하지 않았다	34.3 (79)
		범인체포 또는 체포시도	9.2 (23)
		체포후 증인진술	5 (12)
없다		73.7 (610)	

〈표 4-12〉 搜查協助時 市民에 대한 待遇 (단위: %)

감사하며 친절한 태도	귀찮아하며 평범한 태도	부당한 태도
27.6	39.1	33.3

〈표 4-12〉에서 볼 수 있듯이 搜查協助시 시민에 대한 警察의 대우를 묻는 질문

에 "고마워하고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응답자는 27.6%에 불과하였고, "귀찮아하는 평범한 태도"를 보였거나, "被疑者처럼 취급하는 부당한 태도"를 취하였다는 응답자가 각각 39.1%와 33.3%에 달하였다. 그리고 불신고의 이유에 대하여는 <표 4-13 참조> 거의 40%에 달하는 87명이 "공연히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답하였고, 15.7% (35명)는 犯人の 報復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3%정도(30명)의 응답자와 6.5%정도(15명)의 응답자는 搜查중 부당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거나 警察의 搜查能力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반응하였다.

<표 4-13> 申告하지 않은 理由 (단위:%, 명)

번거롭기 때문에	87 (40.0)
보복이 두려워서	35 (15.7)
수사중 부당한 취급 가능성	30 (13.0)
경찰의 수사능력 불신	15 ( 6.5)

"犯罪現場을 목격하였거나 타인의 犯罪事實을 인지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있다"고 응답한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3.7%에 해당하는 199명이었고, 이들 중 "申告만 했다"는 응답자는 84명으로 42%이며, 55.5%에 해당되는 111명은 "申告 안했다"고 답하였다. 그런데 직접 被害者가 되었던 경우와는 달리 타인에 대한 犯罪現場目撃이나 犯罪事實의 인지시에는 훨씬 적은 수가 적극적인 역할(逮捕하여 警察에 넘기거나 逮捕 후 證人陳述)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정도=4.5명 vs 14.2%) 不申告의 이유로는 "공연히 번거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가 102명으로 51%에 해당하여 직접 被害者가 된 경우보다도 약 10%정도가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25%(50명)의 응답자는 "犯人の 報復이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18%는 "警察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라고 밝히고 있고, "搜查 중 본인의 비리가 밝혀질까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4%를 나타내고 있다<표 4-14>, <표 4-15>.

警察과의 접촉경험을 묻는 질문문항중 자의적 접촉경험에 관한 문항에 있어서는 35%의 응답자가 "있다"고 반응하였고, 타의적 접촉경험에 관하여는 27.4%가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 응답자중 평균 30%정도가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인 警察과의 접촉경험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건과 관련하여 警察과 접촉했다는 응답도 30.9%로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4〉 犯罪現場의 目擊 또는 犯罪事實의 認知 經驗 (단위:명, %)

범죄현장목격경험		조치내용	
있다	199 (23.7)	신고만 했다	84 (42.0)
		신고하지 않았다	111 (55.5)
		범인체포 또는 체포시도 체포후 증인진술	5 ( 2.5)
없다		76.3	

〈표 4-15〉 申告하지 않은 理由 (단위:명, %)

공연히 번거로와	102 (51.0)
보복이 두려워	50 (25.0)
경찰의 부당한 취급이 두려워	36 (18.0)
수사중 본인의 비리노출 가능	8 ( 4.0)

사건관련 접촉경험 중에는 交通違反과 관련된 경우가 20.8%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통과 관련된 警察과의 접촉경험은 매우 빈번한 일이며 유념하여야 할 사항이다.

〈표 4-16〉 警察과의 接觸經驗 (단위:%)

구 분		있다	
자의적 접촉		35	
타의적 접촉		27.4	
사건관련 접촉	30.9	교통위반 이외의 범죄로 체포, 기소, 선고	10.1
		교통위반관련	20.8

司法院와의 접촉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첫번째 문항은 辯護人이나 檢察의 證人の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문항은 법정에서 參考人으로서 봉사한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결과 두 질문문항에 대한 긍정적 답변은 각각 6.8%와 6.2%에 불과하여, 거의 대다수 응답자가 접촉경험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17〉 司法院와의 接觸經驗 (단위:%)

구 분	있다
변호인이나 검찰증인	6.8
참고인으로 봉사	6.2

警察의 부당한 현장관행에 대한 시민의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은 4개로 구성되었다. 그 중 첫번째 질문인 "警察에 의한 不親切이나 거친 취급"에 관한 질문에는 33%의 응답자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犯罪로 逮捕되거나 嫌疑를 받았을 때 不公平하게 취급당한 일이 있다"는 응답자도 12.9%나 되었다.

그리고 "警察에 의하여 肉體的이거나 言語的 학대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22.1%였으며, "시민들간의 시비에 부당하게 한편만 옹호하는 警察官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도 33.4%에 달하였다(표4-18 참조).

〈표 4-18〉 警察의 不當한 現場慣行 經驗 (단위:%)

구 분	있다
불친절경험	33.3
체포시·혐의있을 때 불공정한 취급	12.9
육체적, 언어적 학대 경험	22.1
편파적인 취급 경험	33.4

역할경험에 관한 분석에서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犯罪搜查와 관련하여 警察에 협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역할의식을 측정한 질문문항("귀하가 警察의 搜查活動에 目擊者, 證人, 參考人 등으로 협조할 기회가 있다면")에 대한 응답에 관한 분석에서도 거의 절반(48.3%)에 이르는 응답자가 "積極的으로 협조

하겠다"고 답변하여 강한 역할의식을 나타내고 있고, "최소한의 협조만 하겠다"는 응답자도 41.1%에 달하며,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응답자는 10.5% 정도였다. 그러나 두번째 응답의 범주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별로 협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搜查上 警察 - 國民 協力關係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警察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와 搜查警察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警察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의식에 비하면 犯罪에 대한 역할의식은 매우 강한 편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과반수 정도가 부정적이며 소극적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5) 기타 要因들에 관한 기술적 분석

第 1 章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犯罪에 대한 공포나 被害意識, 주거지역 내에서 安全意識, 그리고 "警察과의 친밀성"은 警察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搜查上 시민의 역할 내지 역할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하여 3개의 질문문항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는바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犯罪에 대한 공포나 被害意識을 느끼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36.2%의 응답자가 "느낀다"고 답변하고, "보통이다"이라 답변한 응답자가 46.6%에 달하여 상당수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犯罪에 대한 공포와 被害意識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불과 14.4%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주거지역 내에서의 安全意識 측정에서도 유사한 응답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즉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는 17.8%에 불과하며,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34.5%였고, 45.4%의 응답자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하였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 주거지역내에서 犯罪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나. 統計的 分析 提示

### 1) 法意識에 관한 統計的 分析

諸般要因들의 記述的 分析에서는 全體 應答者의 反應을 주로 記述하였고, 要因間의 關係나 要因에 따른 차이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搜查上 警察-國民 協力關係를 間接的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假定되는 役割經驗이나 役割意識이 因果變數들과 어떠한 關係를 가지며, 變數에 따라 측정값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分析分析기법(ANOVA)을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搜查上 警察-國民間의 協力方案을 提示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1) 人口社會學的 特性和 法意識間의 關係

法意識에 관한 分析은 질문문항의 구성상 法에 대한 態도와 法違反許容度로 區別하여 설명해야 하며, 法에 대한 態度도 必要性, 正確性, 差別性으로 區別하여 分析할 必要가 있다.

우선 人口學的 特性和의 關係를 살펴보면(표 4-19), 男性과 女性간의 法意識은 Mean Score로 비교해보면 큰 차이가 없는듯 하나(男性 23.11, 女性 22.8), (法意識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문항 구성상 Mean Score가 낮은 것이 강한 法意識을 나타낸다.) 男性이 女性보다 法意識이 약한 것을 알 수 있고, 統計的으로 보면 P 0.05수준에서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참조) 이러한 結果는 Hadar와 Snortum(1975)의 研究結果와 일치한다.

이러한 結果를 法에 대한 態度(Mean Score가 낮은것이 긍정적 태도를 나타냄)와 法違反許容度(Mean Score가 낮은것이 낮은 허용도를 나타냄)로 나누어 考察해 보면, 法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는 女性이(13.98) 男性(14.12)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반면, 法違反許容도에 있어서는 女性(8.89)이 男性(9.0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法에 대한 態度를 法の 必要性, 正當性, 差別性으로 나누어 고찰하면, 必要性和 正當性에 있어서는 男性이 女性보다 더 긍정적인 態度를 보이나, 法執行의 差別性(3.99 : 3.91)에 있어서는 女性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差別性을 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年齡과의 關係에서는 年齡이 높을수록 法意識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대-24.31, 20대-24.26, 30대-22.90, 40대-20.94, 50이상-20.47). 그리고 年齡

範疇에 의한 法意識의 차이도  $P \leq 0.05$ 수준에서 統計學的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結果는 한국법제연구원(1994)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즉, 그들의 研究結果에 의하면 法이 公正하고 民主的이라고 느끼는 응답자의 비율에 있어서 20대는 20.8%, 30대는 19.4%, 40대는 23.3%, 50대는 42.1%였다.

法에 대한 態도와 法違反許容도로 나누어 考察하여 보면 態度面에서 年齡이 높을 수록 긍정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法違反許容도에 있어서는 年齡이 높을 수록 許容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10대-9.69, 20대-9.46, 30대-8.76, 40대-8.03, 50이상-8.17). 이러한 현상은 젊은이들보다는 장년이상의 사람들이 警察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態度를 가지고 있다는 研究結果(Snortum, 1975)와 일치하는 것으로 젊은 사람들은 犯罪行爲를 하기 쉬운 인구집단이기 때문에 法違反許容도가 높을 것으로 判斷된다.

教育水準과 法意識間에는 상당한 關係가 있는 것 같다. 국졸이하의 표본이 7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年齡層을 分析에서 제외하면 학력이 높을 수록 法意識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Mean Score: 중졸 - 21.1, 고중퇴·고졸 - 22.75, 대중퇴·대졸-23.51). 그런데 統計的으로는 유의미하지 않다. 이러한 研究結果는 선진국에서의 研究結果들과는 對照的이다. 그러나 한국법제연구원(1994)의 研究結果와는 類似한 것이다( 法이 公正하고 民主的이라고 믿는 응답에 있어서 국졸 39.1%, 중졸 21.5%, 고졸 27.8%, 대재 이상 19.7%).

教育水準과 法意識간의 關係를 法에 대한 態도와 法違反許容도로 구별하여 考察하면, 학력이 높을수록 許容도는 낮는데(중졸 - 8.44, 고중퇴·고졸 - 8.90, 대중퇴·대졸 - 9.08), 態度 (중졸 - 12.79, 고중퇴·고졸 - 13.85, 대중퇴·대졸 - 14.94)는 더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結果는 年齡과 法意識간의 關係와 類似한 것으로, 年齡이 많으면 法違反許容도가 낮았고, 학력이 높아도 許容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한국법제연구원(1994)의 연구결과를 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法에 대한 態度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본 研究의 結果와 일치한다.

〈표 4-19〉 性別, 年齡, 學歷과 法意識간의 關係

구 분		성 별		연 령					학 력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졸
법에 대한 태도	법의 필요성	3.07	3.16	3.49	3.35	2.99	2.78	2.51	2.88	3.09	3.12
	법의 정당성	7.06	6.92	7.13	7.38	7.16	6.39	6.06	6.21	6.91	7.21
	법의 차별성	3.99	3.91	4.00	4.05	4.00	3.74	3.83	3.71	3.84	4.10
	합계	14.12	13.98	14.63	14.79	14.15	12.91	12.39	12.79	13.85	14.44
법위반 허용도		9.00	8.89	9.47	9.47	8.76	8.03	8.17	8.44	8.91	9.08
합 계		23.11	22.86	24.26	24.26	22.90	20.94	20.47	21.10	22.75	23.51
		F=.387 P.534		F=8.942 P.000					F=.471 P.702		

〈표 4-20〉에서 보듯이 職業에 따른 法意識의 差異는 類型別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나, 학생들이 가장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Mean Score 24.56), 다음은 회사원/직장인(23.15), 무직(23.00), 자영업(22.97), 공무원/전문직(20.51)순으로 法意識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들 직업군간의 法意識의 차이는 P 0.05수준에서 統計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法意識에 있어서 직업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유/전문직 종사자들은 法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는 주부(12.73)다음으로 긍정적인 반응(12.90)을 보이면서, 法違反許容度는 제일 낮게 나타나 (7.56) 法違反行爲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에 비하여 덜 용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許容度가 낮은 집단은 공무원/공기업종사자(8.00)이며 세번째로 낮은 직업군은 주부(8.55)이고, 회사원/직장인 들은 그 순위가 4번째이다(8.94)

〈표 4-20〉 職業과 生活水準과 法意識間的 關係

구 분		직 업								생활수준				
		학생	회사원	자영업	자유업	공무원	공기업	주부	기타	상	중상	중	중하	하
법에 대한 태도	법의 필요성	3.40	3.09	3.07	2.81	2.77	2.65	3.15	3.55	4.00	3.28	3.03	3.13	3.00
	법의 정당성	7.26	7.17	6.76	6.41	7.07	6.38	7.52	7.00	8.33	6.88	7.00	7.03	7.33
	법의 차별성	4.15	3.95	4.03	3.68	3.90	3.70	4.04	3.64	4.67	3.86	3.97	4.02	4.10
	합계	14.81	14.21	13.87	12.90	13.74	12.73	14.70	14.18	17.00	14.01	14.00	14.18	14.43
법위반 허용도	9.79	8.94	9.10	7.56	8.00	8.55	8.30	10.09	12.67	9.50	8.81	8.89	8.62	
합 계	24.56	23.15	22.97	20.51	21.74	21.15	23.00	24.27	29.67	23.51	22.79	23.05	23.05	
F=3.671 P=.001									F=2.167 P.071					

生活水準에 따른 法意識의 차이에서는 "中"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강한 法意識(22.79)을 나타내며, "中下"와 "下"의 階層에 속하는 사람들의 法意識(23.05)이 두번째로 강하게 나타나 일반적인 假定과는 상이한 結果를 낳고 있다. 生活水準이 높을수록 法에 대한 態度가 부정적이라는 다른 研究結果들과 일치한다. 즉 한국법제연구원(1994)의 研究에서도 200만원이상의 고소득층은 法이 公正하고 民主的이라고 믿는율이 20.5%에 불과한데 반하여 70만원미만의 소득자계층은 32.4%가 法이 公正하고 民主的이라 믿고 있었다. 그런데 統計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法에 대한 態度面에서도 "中"의 生活水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긍정적인 態度를 보이고(14.00), "中上"이 두번째(14.01), "中下"가 세번째(14.18), 네번째가 "下"(14.43)이며, "上"의 생활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인 태도(17.00)

를 나타낸다. 반면 범위반허용도에 있어서는 "하"의 생활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낮은 반응(8.62)을 보이고, "中"이 두번째(8.81), "中下"가 세번째(8.89), "中上"이 4번째(9.50), 그리고 "上"이 가장 높은 許容度(12.67)를 보여, "中上"이상 生活水準이 높을수록 法違反許容度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生活水準에 따른 對警察態度나 法違反許容度에서의 차이는 統計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生活水準이 높은 사람이 法에 대하여 더 부정적 態度를 가지고 있고, 法違反許容度가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假定과도 일치하지 않고, 선진국에서의 研究結果들과도 (Schuman와 Gruenberg, 1972)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출세하고, 부를 획득하면 된다는 우리문화의 一面을 나타내는 것 같다.

宗教와 法意識간의 關係에 있어서는 원불교(4명) 기타(7명)의 경우 표본이 너무 적기 때문에 分析에서 제외하고 3가지 중요한 宗教와 무교로 나누어 보면, 기독교인들이 法意識이 가장 높은 것(22.21)으로 나타났고, 다음에는 천주교(22.94), 불교(24.00), 무교(24.93)순으로 그 強度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結果는 P 0.05수준에서 統計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法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는 불교가 가장 긍정적인 態度를 보이고(13.72), 천주교(13.79), 기독교(13.81), 무교(14.54)순으로 나타나는데, 法違反許容度에서는 무교가 9.39로 가장 높은 許容度를 보이고, 불교(9.22), 천주교(8.86), 기독교(8.41)순으로 許容度의 차이를 나타내, 불교의 경우 法에 대한 態度와 法違反許容度 간에 상당한 矛盾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結婚與否와 法意識간의 關係에 있어서도 離婚과 死別의 경우에는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分析에서 제외하고, 既婚者와 未婚者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차이는 統計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이었다. 즉 既婚者集團이 未婚者集團보다 法에 대한 態度가 더 긍정적이고(13.32 대 14.78), 法違反許容度(8.41 대 9.49)도 낮아 법의식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21.70 대 24.28).

이러한 結果는 研究者의 豫想이나 一般的假定과 일치하는 것으로, Emile Durkheim(1951)의 理論에 의하면 既婚者들은 가족간의 紐帶關係 때문에 未婚者

들보다 結束力이 강하고, 따라서 無規範狀態에 빠지거나 法意識이 약화되는 傾向이 적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人口社會學的 特性和 法意識간에는 일정한 유형별로 關係가 있는것 같지는 않으나, 特性에 따라서 一般的인 假定이나 研究者의 豫想과 어긋나는 것도 있고, 일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法意識이 약하다는 것과 가장 순수하고 정직해야 할 학생들의 法意識이 약하다는 것, 그리고 生活水準이 높을수록 法에 대한 態度가 부정적이고 法違反許容度도 높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社會秩序는 물론, 警察에 대한 態度, 그리고 警察-國民間的의 協力關係에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표 4-21〉 宗教와 婚姻關係와 法意識間的의 關係

구 분		종 교				혼인관계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혼	미혼
법에 대한 태도	법의 필요성	3.23	2.98	3.15	3.03	2.83	3.35
	법의 정당성	7.26	6.93	6.87	6.68	6.63	7.33
	법의 차별성	4.05	3.91	3.77	4.01	3.86	4.10
	합 계	14.54	13.81	13.79	13.72	13.32	14.78
법위반 허용도		9.39	8.41	8.86	9.22	8.41	9.49
합 계		23.93	22.21	22.60	22.94	21.70	24.28
		F=3.329 P.006				F=19.864 P.000	

(2) 警察이나 司法府와의 接觸經驗과 法意識間的의 關係

警察과의 接觸經驗은 이미 설명한대로 恣意的 接觸, 他意的 接觸, 事件關聯 接觸으로 구분하여 接觸經驗에 따른 法意識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恣意的이든 他意的이든 接觸經驗이 있는 응답자들이(24.22) 없는 응답자(24.38)보다 法意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法에 대한 態度는 接觸經驗이 없는 응답자들보다 부정적이거나(Mean Score 14.78 대 14.55), 法違反許容도가 낮기 때문이다(9.44 대 9.83). 한편 事件關聯 接觸經驗의 경우에는 不法運轉으로 逮捕된 經驗이 있는 사람들(표본수는 작지만=13명)의 法意識이 가장 약하고(25.62), 交通違反 이외의 犯

罪로 逮捕된 經驗이 있는 응답자들이(24.03) 두번째이며, 다음이 交通違反 이외의 犯罪로 起訴 또는 宣告받은 經驗이 있는 집단(24.62)의 순이었다. 그리고 法意識이 가장 강한 집단은 事件關聯 接觸經驗이 없는 집단(22.97)이었으며, 이들은 交通違反 Ticket을 받은 經驗이 있는 집단 보다도 강한 法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표 4-22〉 警察과 司法府와의 接觸經驗과 法意識間的 關係

구 분		경찰과의 접촉경험									사법부와의 접촉경험	
		자의적		타의적		사건관련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기소 선고	체포	불법 운전	교통 위반	없다		
법에 대한 태도	법의 필요성	3.10	3.11	3.06	3.12	3.13	3.10	4.08	3.19	3.05	3.11	3.09
	법의 정당성	7.02	6.96	6.90	7.02	7.00	7.07	8.08	6.81	7.00	7.32	6.99
	법의 차별성	4.04	3.92	4.02	3.94	4.07	4.00	4.00	3.80	4.00	3.93	3.97
	합계	14.16	13.99	13.98	14.08	14.24	4.21	15.85	13.79	14.06	14.32	14.05
법위반 허용도		9.13	8.98	9.00	9.05	9.02	9.73	9.77	9.18	8.93	8.86	8.98
합 계		23.30	22.95	22.97	23.11	23.27	24.03	25.62	22.97	22.96	23.19	23.01
											F=.170 P.954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接觸經驗이 있는 사람들이 法意識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經驗에 의하여 法違反에 대한 反對給付가 生活에 얼마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가를 인식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이로 인한 法違反許

容도가 낮기 때문에 해석된다. 그리고 不法運轉으로 逮捕된 經驗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犯罪로 逮捕되었거나 起訴내지 宣告된 經驗이 있는 사람들보다 法意識이 약하다는 것은 理論的인 側面에서나 對策的인 側面에서 특기할 만한 일이다. 警察의 부당한 現場慣行에 대한 經驗과 法意識의 關係에 있어서도 經驗이 없는 경우(22.10)가 있는 경우(24.95)보다 法意識에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現場慣行 4가지 중 2가지에만 經驗이 있는 3번째 範疇의 사람들은 Mean Score가 24.62로 4가지 慣行을 다 經驗한 사람들과 한가지도 經驗하지 못한 사람들의 중간 Score를 보여 法意識에 있어서 앞의 두 집단의 중간임을 알 수 있다. 法意識을 法에 대한 態도와 法違反許容도로 구별하여 보아도, 態度에 있어서는 現場慣行에 대한 經驗이 없는 경우가 더 긍정적이고(14.55 대 14.78), 또 法違反許容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68 대 9.45). 統計的으로도 警察과의 接觸經驗이나 警察의 現場慣行에 대한 經驗이 응답자 집단 (있다, 없다)간의 차이는 P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y Anova). T-test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도 P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檢察 또는 司法府와의 接觸經驗은 2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는바, 接觸經驗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에 法意識面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假定하였다. 그 結果 經驗이 없는 집단(23.01)이 經驗이 있는 집단 (23.19)보다 法意識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法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도 接觸經驗이 없는 집단이 더 긍정적인 態度를 보이고 있다(14.05 대 14.32). 한편 法違反許容도에 있어서는 接觸經驗이 있는 응답자들(8.86)이 없는 응답자들(8.98)보다 그 許容程度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法에 대한 態度의 경우와는 一貫性이 없는 것으로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 統計的으로 法에 대한 態度에 관한 두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法違反許容도에 있어서도 집단간에 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 (3) 犯罪被害經驗과 恐怖 및 被害意識과 法意識과의 關係

#### ① 犯罪被害經驗

犯罪被害經驗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法意識도 약하고 警察에 대한 態度도 부정적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研究의 結果이다(Koenig, 1980, Skogen, 1979). 이들 研究結果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犯罪被害經驗이 있는 사람

들이(23.76) 法意識이 약하고, 被害經驗이 없는 사람들이(22.77) 法意識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法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도 같은 유형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被害 經驗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法違反許容度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81 대 9.44).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研究結果들이 (Carter, 1985) 犯罪被害의 經驗은 警察에 대한 평가는 물론 態度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法意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 ② 犯罪에 대한 恐怖 및 被害意識

이 변수는 "느낀다", "보통이다", "느끼지 않는다"는 3가지 정도로 그 의식의 強度를 測定하였는 바, "被害意識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들이(22.24) "被害意識을 느낀다"는 응답자(23.09)들보다 法意識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法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도 같은 Pattern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法違反許容度에 있어서는 犯罪被害意識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허용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8.53 대 9.09). 被害意識을 느끼는 사람들은 全體적으로 法意識이 약하고, 法에 대한 態度도 더 부정적이며, 法違反許容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犯罪로부터의 恐怖나 被害意識을 느끼는 사람들은 法이나 法執行機關을 믿지 않게 되며, 心理적으로 法을 위반해도 된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 같다.

〈표 4-23〉 被害經驗, 被害意識과 法意識間의 關係

구 분		피해경험		피해의식		
		있다	없다	느낀다	보통이다	느끼지 않는다
법에 대한 태도	법의 필요성	3.22	3.05	3.14	3.09	3.00
	법의 정당성	7.15	6.95	6.95	7.08	6.87
	법의 차별성	3.99	3.96	3.94	4.03	3.86
	합계	14.36	13.96	14.04	13.96	13.73
법위반 허용도		9.44	8.81	9.09	9.05	8.53
합 계		23.76	22.77	23.09	23.25	22.24
		F=7.494 P.006		F=1.899 P.150		

(4) 住居地域과 住居地域內에서의 安全意識과 法意識간의 關係

① 住居地域

이미 설명한대로 地域社會의 構造的 影響은 警察에 대한 態度는 물론(Walker, 1972) 法意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Schuman과 Gruenberg (1972)의 주장대로 住居地域의 근린의 重要性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研究는 一般的인 假定이나 豫見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하류지역 응답자의 法意識이 가장 강하고(22.48), 중류지역(22.95), 상류지역(24.84)순으로 強度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法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도 같은 반응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즉, 하류지역 주민들의 法에 대한 態度는 매우 긍정적이며, 法違反許容度가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法意識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하류지역 8.61 : 중류지역 8.92 : 상류지역 10.26). 그런데 이러한 結果도 중산층이 警察에 대하여 가장 호의적인 態度를 보이며 法意識이 강하다는 Shaw와 Williamson(1972)의 研究結果와는 對照的이다. 그리고 상류지역일수록 法에 대하여 강한 긍정적인 態度를 나타내고, 法違反에 대한 許容程度가 낮을 것이라는 一般的인 假定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표 4-24> 住居地域 및 安全意識과 法意識간의 關係

구 분		주 거 지 역			안 전 의 식		
		상류	중류	하류	안전하다	그저 그렇다	불안하다
법에 대한 태도	법의 필요성	3.44	3.06	3.07	3.13	3.09	3.09
	법의 정당성	7.12	6.98	7.03	7.29	6.91	7.09
	법의 차별성	4.01	3.99	3.85	4.02	3.96	3.98
	합 계	14.57	14.04	13.95	14.44	13.95	14.67
법위반 허용도		10.26	8.92	8.61	8.92	9.05	8.75
합 계		24.84	22.95	22.48	23.32	22.99	22.92
		F=.5.751 P.003			F.=172 P.842		

② 住居地域內에서의 安全意識

Parks(1976)나 Apple과 O'Brien(1983)은 근린의 犯罪率이나 근린에서의 安全意識은 警察에 대한 態度나 滿足度와 關係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住居地域內에서의 安全意識이 法意識과 關係가 있을 것이라는 假定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研究의 結果는 研究者의 假定이나 위의 研究結果와는 반대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住居地域內에서 "犯罪 때문에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이 오히려 강한 法意識을(22.92)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일 法意識이 약한 집단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23.32)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安全意識이 없는 집단이 法에 대하여는 가장 긍정적인 態度를 가지면서도 法違反에 대한 許容程度가 (8.75) 다른 집단(8.92와 9.05)에 비하여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統計的으로도 安全意識과 法에 대한 態度의 關係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安全意識과 法違反 許容度와의 關係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있다.

#### (5) 警察과의 親密性

態度나 偏見같은 인간의 의식적 요소가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심리학자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여러가지 接觸經驗이나 社會化過程을 통해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態度나 偏見이 형성되듯이, 人間關係에 있어서 親密性은 상대방에 대하여 긍정적인 態度나 偏見을 갖게 해준다. 그러므로 식구중이나 친척중에 警察官이 있든지 또는 농담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警察과 친구가 있는 경우에는 警察에 대한 偏見이 생겨서 매우 警察偏을 들고 두둔하는 경향도 생기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態度를 가지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警察-國民間의 協力關係를 논의함에 있어서 "警察과의 親密性" 문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警察과의 親密性和 法意識과의 關係는 예상했던대로, 親密性이 강한 집단(警察에 근무하는 식구나 친척, 친한 친구가 있는 경우)이 法意識이 강하고 (22.81, 22.76) 친밀한 警察官이 없는 집단의 法意識은 제일 약하게 (23.38) 나타났다. 그리고 농담할 정도의 친구가 있다는 집단의 法意識은 前者보다는 강한 法意識(22.83)을 나타내고 있다. 統計的으로도 집단간의 차이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法에 대한 態도와 法違反許容度로 나누어 考察해 보면, 態度면에서는 역시 親

密性이 강한 집단들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法違反許容度에 있어서는 예상과는 달리 警察官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가 許容度가 제일 낮고 (8.68), 농담할 정도로 아는 警察官이 있는 경우(8.78), 식구 중에 警察官이 있는 경우(8.99), 잘 아는 警察官이 없는 경우(9.25)순으로 許容度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態度나 許容度의 집단간 차이는 統計的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警察과 親密性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보다 法에 대하여 부정적인 態度를 가지며, 法違反 許容度도 높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표 4-25〉 警察과의 親密性和 法意識間의 關係

구 분		친 밀 성			
		경찰근무 친척	전직경찰 친척·친구	친구	없음
법에 대한 태도	법의 필요성	2.97	2.99	3.13	3.16
	법의 정당성	6.92	7.06	7.00	7.02
	법의 차별성	3.94	4.04	3.89	3.99
	합 계	13.83	14.03	14.08	14.18
법위반 허용도		8.99	8.68	8.78	9.25
합 계		22.81	22.76	22.83	23.38
		F=.937 P.=422			

## 2) 警察 및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에 관한 統計的 分析

우리나라에서 警察에 대한 市民의 의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숫적으로 상당히 미비한 편이고, 內容面에서도 다소 短篇的이거나 제한적인 조사들이 행해져 왔다. 그래도 몇가지 연구의 예를 든다면 警察行政과 住民의 참여에 관한 문헌연구(김원환, 1981), 警察에 대한 이해도, 신뢰도, 협조도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식 조사 연구(서상용, 1982, 유재홍, 1987), 한국 警察의 봉사상 정립을 위한 문헌 연구(황지연, 1984), 警察에 대한 協助態도와 사회적 평가 등 다소 광범위하게 조사한 연구(이황우, 1984), 警察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

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1)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들의 초점은 警察에 대한 시민의 의식과, 警察의 봉사상에 관한 것으로, 警察의 봉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對民關係의 개선을 위해 警察이 충실한 業務態度를 보일 필요가 있고, 警察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해 시민의 警察에 대한 의식을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1) 人口社會學的 特性和 態度와의 關係

##### ① 性과의 關係

性과 一般警察에 대한 態度間的 關係는 예측했던대로 여성(24.99)이 男性(26.10)보다 더 긍정적인 態度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司法警察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도 위와 동일한 유형으로 關係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즉, 여성(4.77)이 男性(5.22)보다 司法警察에 대하여도 더 긍정적인 態度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Thomas와 Hyman(1977)의 研究結果와는 상반되는 것이지만, Thornton(1975)의 주장과 우리나라에서의 연구결과(형사정책연구원, 1994)와 일치하는 것으로, 警察과 接觸經驗이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經驗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부정적인 態度를 가지게 된다는 이론으로 설명되어진다. 즉, 男性은 (젊은 男性) 警察과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와같은 설명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統計的으로도 남녀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② 年齡과의 關係

年齡의 경우에 있어서도 한가지 예외는 있지만 (20대(26.08)가 30대(26.16)보다 약간 더 긍정적인 態度를 보임) 그 연구결과가 대체로 一般的인 假定이나 여러가지 研究結果들(Hardar와 Snortum 1975; Thornton; 195; Kleinal et al, 1978)과 일치한다. 서론에서 열거했던 우리나라에서의 研究들은 이번 研究의 結果와 일치한다. 대부분의 研究들이 年齡이 높을수록 警察에 대한 인상이 좋고, 더 긍정적인 의식을 가진다고 지적하고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형사정책연구원(1991)에서 행한 연구에 의하면 20대 19.8%, 50대이상은 38.4%의 응답자가 警察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40대(24.91)에서 50대(24.54)로 올라 갈수록 警察에 대한 態度가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關係類型은 司法警察에 대한 態度와 관련하여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10대

4.83, 20대 5.0, 30대 5.18, 40대 5.01, 50대 4.83). 두 변수간의 關係에 있어서 年齡간의 차이는 2가지 경우 다 P 0.05수준에서 統計的으로 有意의하며, 젊은 사람들은 犯罪行爲를 하기 쉬운 인구집단이기 때문에 警察에 대하여 더 否定的인 態度를 가지게 된다는 설명이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 같다.

③ 教育과의 關係

教育이나 職業, 生活水準 같은 社會經濟的 地位가 警察에 대한 態度와 어떤 關係에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가지 研究結果와 학자들의 주장이 서로 상충하는 까닭에 단언적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搜查警察을 포함한 警察에 대한 態度가 더 肯定的일 것 이라는 것이 一般的인 假定이다.

이번 조사결과와 경우, 표본의 수(5명)가 너무 작아 統計的 의미가 없는 국졸 이하의 범주를 제외하였다. 그런데 예상과는 반대로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에서는 물론(중졸 23.30, 고퇴/고졸 25.35, 대퇴/대졸 26.28)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도 (중졸 4.48, 고퇴/고졸 4.99, 대퇴/대졸 5.18) 학력이 낮을수록 警察에 대하여 더 肯定的인 態度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態度에 대한 年齡간의 차이는 統計的으로 有意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본 研究의 結果는 학력이 낮을수록 警察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형사정책연구원(1991)의 研究結果와 일치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다른 研究의 結果들과도 유사한 것이다.

<표 4-26> 性別, 年齡別, 學歷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인구학적 특성	성별		연 령					학 령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졸
일반경찰에 대한 태도	26.10	24.99	25.45	26.08	26.16	24.91	24.54	23.30	25.35	26.28
	F=2.019 P=.156		F=.1.295 P=.270					F=.2.980 P=.031		
사법경찰에 대한 태도	5.22	4.77	5.00	5.07	5.18	5.01	4.83	4.48	4.99	5.18
	F=.13.253 P=.000		F=.1.102 P.354					F=3.139 P=.025		

#### ④ 職業과의 關係

職業은 社會經濟的 地位를 구성하는 한 요소로서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警察에 대한 態도와 關係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학자들이 있다. Walker et al (1972), Jacob(1971), Thornton(1975)같은 학자도 職業과 收入은 對警察 態度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警察에 대한 一般的 態度나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나 두가지 경우 모두 동일한 유형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즉, 두 경우 다 공무원들이 가장 긍정적인 態度를 보이고(警察 23.40, 搜查警察 24.61), 자유/전문직(警察 25.52, 搜查警察 25.03), 자영업(警察 25.61, 搜查警察 5.08), 학생(警察 25.88, 搜查警察 5.14)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對警察 態度에 대한 직업간의 차이도 統計的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公職이라는 동질성이 중요한 이유라 보여지며, 회사원/직장인, 그리고 자유/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이 자영업자나 학생들처럼 경찰과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인 것 같다.

#### ⑤ 生活水準과의 關係

社會經濟的 地位의 한 요소로서의 生活水準은 곧 수입의 정도를 의미하며, Walker(1972)나 Jacob(1971)같은 학자들은 警察에 대한 態度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社會經濟的 변수로서의 수입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警察과의 접촉을 불만스럽게 생각하며, 警察의 業務遂行에 대하여도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도 출되었는바 生活水準이 "中下"또는 "下"라고 응답한 표본들의 Mean Score는 26.16과 26.78으로 "中"이나 "中上"의 그것들(25.05와 25.10)과 차이를 보여, 生活水準이 낮을수록 對警察 態度가 더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는 生活水準에 따른 일정한 패턴을 찾을 수 없다. 즉, "中上"과 "中下"의 생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司法警察에 대하여 가지는 態度가(Mean Score 4.83 : 4.88) "中"이나 "下"의 生活水準에 있는 사람들의 態度(5.20 : 5.10)보다 더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두가지 態度 조사의 결과가 불일치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警察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나 搜查警察에 대한 態도와 關係해서 生活水準이 다른 여러 집단간의 차이가 統計적으로 有意미하다는 것은 生活水準과 態度간에 어떤 關係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표 4-27〉 職業·生活水準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的 關係

구 분	직 업									생활수준				
	학생	회사원	자영업	자유 전문직	공무원	공기업	주부	기타	상	중상	중	중하	하	
일반경찰에 대한 태도	25.61	26.30	25.52	25.88	26.62	23.40	25.91	27.50	33	26.78	26.16	25.05	25.10	
	F=.1753 P=.094									F=4.458 P=.001				
사법경찰에 대한 태도	5.03	5.08	5.19	5.14	5.33	4.61	5.04	5.70	6.00	4.83	5.20	4.88	5.10	
	F=.977 P=.447									F=3.78 P=.005				

#### ⑥ 宗教와의 關係

표본의 수가 적어 統計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원불교와 기타를 제외하고 宗教와 警察에 대한 態度와의 關係를 살펴보면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긍정적이고(25.17), 천주교(25.26), 불교(26.05), 무교(26.07)순으로 態度의 긍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즉, 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긍정적인 態度(4.98)을 나타내는 것은 앞서와 동일하지만, 불교(4.99)와 천주교(5.00)가 두번째와 세번째 순으로 警察에 대한 일반적인 態度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무교"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인 態度(5.19)를 나타내는 것은 앞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러한 결과는 宗教와 法意識간의 關係에 대한 결과와 유사하며, 態度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는 統計적으로 有意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⑦ 結婚與否와의 關係

法意識과의 關係分析에서와 같이 離婚(10명)과 死別(8명)의 경우에는 표본이 너무 작기 때문에 分析에서 제외하고, 既婚者와 未婚者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警

察에 대한 一般의 態度에 있어서는 法意識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기혼자 집단이 미혼자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데 (25.43 : 25.93),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도 기혼자 집단이 미혼자 집단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5.07 : 5.06). 그런데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05수준에서 統計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警察에 대한 一般의 態度와 結婚與否간의 關係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의 차이가 統計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표 4-28〉 宗教, 婚姻關係와 警察에 대한 態度間的 關係

구 분	종 교				혼인관계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혼	미혼
일반경찰에 대한 태도	25.17	25.26	26.05	26.07	25.43	25.93
	F=.2170 P=.056				F=1.326 P=.265	
사법경찰에 대한 태도	4.98	5.00	4.99	5.19	5.07	5.06
	F=1.186 P=.314				F=.635 P=.093	

## (2) 警察이나 司法府와의 接觸經驗과 警察에 대한 態度와의 關係

### ① 警察과의 接觸經驗

技術的 分析의 경우처럼 接觸類型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接觸經驗과 態度間的 關係를 살펴보았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警察과 接觸한 經驗이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보다 警察에 대한 一般의인 態度가 부정적 이었다. 자의적 접촉의 경우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있다-25.95:없다-25.52). 타의적 접촉의 경우 그 차이는 "經驗이 있다"는 집단의 Mean Score는 26.32이고 "經驗이 없는 집단"의 그것은 25.44였다. 그런데 자의적 接觸經驗이 있는 집단(25.96)은 타의적 接觸經驗이 있는 집단(26.32)보다 긍정적인 態度를 나타냈다. 統計적으로 보면 T-test의 결과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接觸經驗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0.01).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도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接觸經驗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자의적 접촉:있다 5.14, 없다 5.01, 타의적 접촉:있다 5.32, 없다 4.96). 그리고 자의적 接觸經驗이 있는 집단이 타의적 接觸經驗이 있는 집단보다 더 긍정적인 態

도를 나타내었다. 타의적 접촉은 주로 사건과 관련된 경우이기 때문에 警察이 고압적 자세와 불친절한 態度로 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하여 警察에 대한 態度가 보다 부정적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사건과 관련된 警察과의 接觸經驗은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3번째 유형인 不法運轉으로 逮捕된 경우는 표본의 수(9명)가 너무 적어서 分析에서 제외하였다. 나머지 4가지 유형 가운데에서는 사건과 관련해서 警察과 접촉한 經驗이 없는 응답자들이 警察一般이든 司法警察에 대하여든 가장 긍정적인 態度를 보였다(警察 25.04, 司法警察 4.97). 이는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接觸經驗이 없는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態度를 보인 것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그런데 警察에 대한 一般的 態度에 있어서도 交通違反으로 Ticket을 발부받은 經驗이 있는 집단(25.74), 交通違反 이외의 犯罪로 逮捕된 經驗이 있는 집단(26.28), 交通違反 이외의 犯罪로 起訴 또는 宣告받은 經驗이 있는 집단(26.65)순으로 態度의 긍정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도 위에서와 같은 형태로 나타났다(5.00 : 5.29 : 5.33). 統計적으로는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警察과 接觸經驗이 없는 사람들이 接觸經驗이 있는 사람들보다 긍정적인 對警察態度를 가질 것이며, 자의적 接觸經驗이 있는 사람들의 對警察 態度가 타의적 接觸經驗이 있는 사람들의 그것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警察의 부당한 現場慣行에 대한 經驗은 4가지 문항으로 측정하였는 바, 經驗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警察에 대한 態度가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4가지 現場慣行 전부를 經驗한 경우(28.68), 3가지만 經驗한 경우(26.85), 2가지만 經驗한 경우(26.12), 1가지만 經驗한 경우(26.11), 아무런 經驗도 없는 경우(24.21)순으로 經驗여하에 따라 警察에 대한 態度가 다르게 나타났다.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도 같은 유형으로 나타났다(5.70 : 5.51 : 5.40 : 4.69).

## ② 檢察, 司法府와의 接觸經驗

司法府와의 接觸經驗이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와 어떤 關係가 있는가를 고찰해 보면, 변호인이나 檢察證인으로 봉사한 經驗이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法庭에서 證人으로서 봉사한 經驗이 있는 사람들의 수는 전체 표본에 비하여 매우 적었다(前者는 34명, 後者는 29명). 그렇더라도 接觸經驗의 차이에 따라 態度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前者의 경우가 後者の 경우보다 警察一般에 대해서는 물론 司法警察에 대해서도 더 긍정적인 態度를 보였다(警察一般의 경우 24.85 : 26.48, 司法警察의 경우 4.88 : 5.31) 그런데 어느 경우이든 經驗이 없는 경우가 經驗이 있는 경우보다 더 긍정적인 態度를 나타냈다(警察一般의 경우 25.66 : 25.73, 司法警察의 경우 5.04 : 5.06). 그런데 統計적으로는 어느 경우이든 집단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警察과의 접촉이든 司法府와의 접촉이든 刑事 司法機關과의 接觸經驗은 法意識도 약하게 만들고 警察에 대한 態度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른 의미로는 警察官뿐만 아니라 다른 刑事司法機關 종사자들도 접촉된 시민들에 대하여 친절하고 신뢰스런 態度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4-29〉 警察 및 司法府와의 接觸經驗과 警察에 대한 態度간의 關係

접촉 경험 태도	경찰과의 접촉경험									사법부와의 접촉경험			
	자외적		타의적		기소 선고	체포	불법 운전	교통 위반	없다	변호인 검찰증인		법정증언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일반경찰에 대한 태도	25.95	25.52	26.32	25.44	26.65	26.28	27.11	25.74	25.04	26.85	25.66	26.48	25.73
										F=.540 P=.707			
수사경찰에 대한 태도	5.14	5.01	5.32	4.96	5.33	5.00	4.78	5.29	4.97	5.25	5.04	5.31	5.06
										F=.1725 P=.142			

### (3) 犯罪被害經驗과 恐怖및 被害意識과 경찰에 대한 態度와의 關係

#### ① 犯罪被害經驗

犯罪被害經驗과 警察에 대한 態度와의 關係도 예측했던 방향으로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統計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보면,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에 있어서 被害經驗이 없는 응답자들이 있는 응답자들 보다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25.49 : 26.40).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에 있

어서도 마찬가지로였다(5.01 : 5.19). 이러한 결과는 Koenig(1980)나 Skogan(1979)의 研究結果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미 지적한대로 犯罪被害의 經驗은 警察에 대한 평가는 물론 態度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② 犯罪에 대한 恐怖 및 被害意識

法意識과의 關係에서처럼 "恐怖나 被害意識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보통이다", "느낀다"라고 답한 응답자들보다 警察一般은 물론 搜查警察에 대하여도 더 긍정적인 態度를 나타내었다(警察일반 25.99 : 25.73, 搜查警察 5.20 : 4.99). 그리고 "被害意識을 느낀다"는 응답자들이 제일 부정적인 態度(25.18과 4.96)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統計的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犯罪被害意識은 犯罪被害經驗이 있든가 言論의 영향으로 治安體感이 낮은 경우에 강하게 느끼게 되며, 이미 설명한대로 被害經驗은 警察의 犯罪統制能力을 의심하게 되고 동시에 警察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만든다. 특히 對人犯罪被害자들이 警察에 대하여 비호의적 態度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Koenig, 1980).

<표 4-30> 被害經驗, 被害意識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태도	접촉경험	피해경험		피해의식		
		있다	없다	느낀다	보통이다	느끼지 않는다
일반경찰에 대한 태도		26.40	25.49	25.18	25.73	25.99
		F=.5497 P=.019		F=.721 P=.487		
수사경찰에 대한 태도		5.19	5.01	4.96	4.99	5.20
		F=.1941 P=.164		F=.1129 P=.324		

(4) 住居地域과 住居地域內에서의 安全意識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① 住居地域

Walker(1972)는 지역사회의 구조적영향이 시민의 警察에 대한 態度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上流住居地域 응답자들의 警察에 대한 一般的 態度는 Walker의 研究結果나 一般的 가정과 같이 매우 긍정적이었는데(Mean score 24.70). 中流地域의 응답자들은 (25.98) 下流地域 응답자들(25.22)보다 부정적인 態度를 보였다. 그러나 司法警察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는 一般的 假定과 연구자의 예측대로 상류지역(4.94), 중류지역(5.07), 하류지역(5.08)순으로 態度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질문문항 구성상 가장 긍정적인 態度를 나타내는 점수가 8점임을 감안하면 어느 지역이든 司法警察에 대하여 크게 긍정적인 態度를 가지고 있는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현상은 警察에 대한 一般的 態度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警察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 지역간의 차이는 P 0.05수준에서 統計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警察에 대한 態度에 있어서 지역간의 차이는 지역사회의 사회, 문화적 구성 뿐만 아니라 犯罪와 관련된 근린변수(犯罪率, 犯人逮捕率 등)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사항은 法意識이 제일 약한(住居地域과 法意識과의 關係에서 규명됨) 상류지역 응답자들이 警察에 대하여 가장 긍정적인 態度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法意識이 강하면 對警察 態度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가정과는 모순되는 것이다. 해석상 어려움이 있겠으나 상류지역 거주자들은 法意識은 약하더라도 警察과의 接觸 經驗이 많지 않고, 警察으로부터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예: 잦은 방범순찰) 집단이기 때문에 호의적인 態度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하류지역 거주자들은 法意識이 강하더라도 실제로는 警察으로부터 가장 차별적 대우를 받는 집단이기 때문에 法意識과 상반되는 對警察 態度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표 4-31〉 住居地域, 安全意識과 警察에 대한 態度間的 關係

태도	구분	안전의식			거주지		
		안전하다	그저 그렇다	불안하다	상류	중류	하류
일반경찰에 대한 태도		25.19	25.60	25.93	24.70	25.98	25.22
		F=.836 P=.434			F=3.228 P=.040		
수사경찰에 대한 태도		4.74	5.70	5.37	4.94	5.07	5.08
		F=6.265 P=.002			F=.446 P=.640		

## ② 住居地域 內에서의 安全意識

Parks(1976)와 Apple 및 O'Brien(1983)의 研究結果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구에서도 안전의식과 對警察 態度간에는 關係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하다"고 느끼는 집단은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에서나 對司法警察 態度에 있어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警察 25.19, 司法警察 4.74)을 보였다. 두번째로 긍정적인 態度를 보인 집단은 "그저 그렇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며(警察 25.60, 司法警察 25.93),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이 가장 부정적인 態度를 나타냈다(警察 25.93, 司法警察 5.37). 안전의식과 關係된 對警察態度에 있어서 집단간의 차이는 統計的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住居地域內에서 犯罪로부터 불안하게 느낄 때, 치안상태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警察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결과적으로 警察에 대하여 부정적인 態度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거주지역의 치안상태와 警察에 대한 인상간의 關係를 측정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4)"의 研究結果는 이번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치안상태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은 警察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5) 警察과의 親密性과의 關係

親密性和 法意識과의 關係에서처럼 警察에 대한 態度의 긍정성의 정도는 집안

〈표 4-32〉 警察과의 親密性和 警察에 대한 態度間의 關係

태도	구분	친 밀 성			
		현직경찰 친척	전직경찰 친척·친구	친한 경찰	없다
일반경찰에 대한 태도		24.50	25.94	25.95	25.97
		F=2.985 P=.031			
수사경찰에 대한 태도		4.91	5.02	5.10	5.12
		F=.887 P=.447			

에 警察官이 있는 경우(警察 24.50, 搜查警察 4.91), 警察官이었던 친구나 친척이 있는 경우(警察 25.94, 搜查警察 5.02), 농담할 정도로 아는 警察官이 있는 경우(警察 25.95, 搜查警察 5.10), 농담할 정도로 아는 警察官이 없는 경우(警察 25.97, 搜查警察 5.12)순으로 나타나, 法意識과의 關係에서 이미 설명한 이론적 가정과 일치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집단간의 차이도 P 0.05수준에서 統計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3) 役割經驗 및 役割意識에 관한 統計的分析

#### (1) 役割經驗에 관한 統計的分析

役割經驗은 犯罪로부터 직접 被害를 입었을 경우와 犯罪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타인의 犯罪사실을 알았을 때, 被害者로서 또는 목격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를 물어서 측정하였다. 역할은 4가지로 구분하여 측정되었다. ( ; 신고만 했다, 잡아서 警察에 넘겼다/잡으려고 시도했다, 범인을 체포후 증인(참고인)진술까지 했다, 신고하지 않았다)

##### ① 性과의 關係

〈표 4-32〉에서 보듯이 犯罪로부터 被害經驗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224명(남 167명, 여 57명)으로, 이중 "신고만 했다"는 응답자는 男性 48.5%, 女性 43.9%에 달하였고, "범인을 잡으려 했다거나 잡아서 인계했다"는 응답자는 30명(남 19명, 여 5명)으로서 男性은 14.4%, 女性은 10.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체포후 증인으로 진술까지 했다"는 응답자도 24명(남 19명, 여 5명)이나 되어 被害男性의 11.4%, 被害女性의 8.8%가 매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는 64명(남 43명, 여 21명)으로 男性응답자의 25.7%와 女性응답자의 36.8%가 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犯罪現場의 목격이나 犯罪事實 인지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는 예상했던대로 직접적인 被害時에 비하여 市民들의 참여율이 훨씬 낮았다. 즉 〈표 4-32〉에서 보듯이 犯罪現場을 목격하였거나 犯罪事實을 인지했다는 응답자(193명 : 남 145명, 여 47명) 중에서 男性의 경우 46.9%가, 女性의 경우는 63.8%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直接被害를 당했을 때와는 役割參與에 있어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타인에 대한 無關心, 個人主義와 같은 현대의 사회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性에 의한 役割參與는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신고율에 있어서는 남, 여간에 큰 차이가 나는데(남 39.3%, 여 17.0%) 비하여, 범인체포나 증인진술같은 보다 적극적인 역할에는 오히려 여자응답자들이 더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생활에 아주 적극적인 사람은 남, 여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② 年齡과의 關係

年齡과 役割經驗과의 關係에 있어서 直接被害를 당한 경우에는 年齡이 높을수

<표 4-33> 性別, 年齡, 教育水準과 役割經驗間의 關係

구 분		성 별		연 령					교 육 수 준		
		남	여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중졸	고퇴· 고졸	대퇴· 대졸
범죄 피해 경험	신고만 했다	48.5	43.9	28.6	43.2	40.3	69.4	60.0	3.68	53.2	44.8
	체포· 체포시도	14.4	10.5	21.4	11.1	13.4	5.6	24.0	10.5	18.1	8.6
	증인진술	11.4	8.8		13.6	9.0	13.9	8.0	21.1	10.6	9.5
	신고하지 않았음	25.7	36.8	50.0	32.1	37.3	11.1	8.0	31.6	18.1	37.1
		x <sup>2</sup> =2.76236 D.F.=6 P=.4297		x <sup>2</sup> =26.12202 D.F.=12 P=.0103					x <sup>2</sup> =21.14297 D.F.=9 P=.0120		
범죄 현장 목격	신고만 했다	39.3	17.0	35.3	29.9	28.6	28.6	53.1	33.3	35.3	31.9
	체포· 체포시도	6.9	10.6	5.9	9.0	10.2	7.1	3.12		10.6	6.6
	증인진술	6.9	8.5		6.0	10.2	17.9		8.3	10.6	3.3
	신고하지 않았음	46.9	63.8	58.8	55.2	51.0	46.4	43.8	58.3	43.5	58.2
		X <sup>2</sup> =7.96568 D.F.=3 P=.0467		X <sup>2</sup> =15.47813 D.F.=12 P=.2163					x <sup>2</sup> = 9.45776 D.F.=9 P=.3961		

록 신고이상의 적극적인 役割을 遂行한 것으로 나타났다(10대 50.0%, 20대 67.9%, 30대 62.7%, 40대 88.9%, 50대이상 92.0%). 한편 犯罪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즉 年齡이 많을수록 신고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율이 높아지고 있다(10대 41.2%, 20대 44.8%, 30대 49.0%, 40대 53.6%, 50대이상 56.2%). 年齡이 낮을수록 "신고"도 하지 않는 율이 높은것 같다.

### ③ 教育과의 關係

教育水準과 役割經驗과의 關係도 두가지 유형의 役割經驗으로 나누어 考察해 보았다. 첫째, 직접 犯罪로부터 被害經驗이 있는 경우(표본수가 적어 統計分析意味가 없는 국졸집단은 제외함) 고중퇴/고졸 집단이 가장 적극적으로 신고 이상의 적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81.9%), 다음은 중학교 졸업자 집단(68.4%), 대중퇴/대졸 이상 집단(62.9%)순 이었다. 즉 犯罪로부터 직접적인 被害를 당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직접적인 被害의 경우가 아닌, 犯罪의 목격 내지 타인의 犯罪事實 인지시에도 역할에 따른 교육수준 집단간의 차이는 첫번째 경우와 같은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고중퇴/고졸 집단의 56.5%, 중졸집단의 41.7%, 대중퇴/대졸 이상 집단의 41.2%가 "신고"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④ 職業과의 關係

職業과 役割經驗간의 關係는 직접적인 被害의 경우 職業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즉 직접적인 犯罪被害의 경우 "신고도하지 않았다"라는 응답율에 있어서 주부는 45.5%, 학생은 41.9%, 회사원/직장인 30.0%, 공무원/공기업 근무자 20.0%, 자유/전문직 종사자 14.3%, 자영업자는 3.4%를 나타내고 있다. 반대로 설명하면 "신고" 이상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은 자영업집단(96.6%)이고, 다음이 자유/전문직 종사자(85.7%), 공무원/공기업 근무자(80.0%), 회사원/직장인(70.0%), 학생(58.1%), 주부(54.5%)순이었다.

犯罪를 목격하거나 犯罪事實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직업집단간의 차이가 앞의 경우처럼 크지는 않다. 그리고 신고, 체포, 증인진술등 적극적인 역할에 참여하는 율도 훨씬 떨어진다(주부 30.8%, 공무원/공기업 33.3%, 학생 38.6%, 회사

원/직장인 56.7%, 자유/전문직 57.9%, 자영업 58.8%).

⑤ 生活水準과의 關係

犯罪被害經驗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224명)가운데서 生活水準에 따라 犯罪被害時의 役割經驗을 측정해보면 ("下"와 "上"의 生活水準에 있는 집단은 표본수가 너무 적어 - 각각 7명과 1명 - 분석에서 제외함) "中"의 生活水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신고 이상의 역할에 참여했고(77.0%) 다음은 "上下"(73.2%), "中下"(59.7%)순으로 참여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래도 전체 犯罪被害經驗者의 71.6%가 신고, 체포, 증인진술등 犯罪搜查活動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집단간의 차이는 P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犯罪의 목적이나 犯罪事實 인지시 役割經驗에 있어서도 앞의 경우와

<표 4-34> 職業, 生活水準과 役割經驗間의 關係

구 분		직 업						생 활 수 준			
		주부	학생	회사원/ 직장인	공무원/ 공기업	자유/ 전문직	자영업	중상	중	중하	하
범죄 피해 경험	적극적 역할	54.5	58.1	70.0	80.0	85.7	96.6	73.2	77.0	59.7	
	신고하지 않았음	45.5	41.9	30.0	20.0	14.3	3.4	26.8	23.0	40.3	
		x <sup>2</sup> =42.76795 D.F.=21 P=.0034						x <sup>2</sup> =25.72270 D.F.=12 P=.0117			
범죄 목적 경험	적극적 역할	30.8	38.6	56.7	33.3	57.9	58.8	56.5	48.9	41.9	33.3
	신고하지 않았음	69.2	61.4	43.3	66.7	42.1	41.2	43.5	51.1	58.1	66.7
		x <sup>2</sup> =14.70732 D.F.=21 P=.8373						x <sup>2</sup> =9.17906 D.F.=9 P=.4209			

같이 生活水準에 의한 집단간의 차이가 상당히 있으며, 그 차이는 統計的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x^2=9.179$ ,  $P 0.01$ )

신고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율은 "下"(9명=33.3%), "中下"(41.9%), "中"(48.9%), "中上"(56.5%) 순으로 밝혀져, "中上"의 生活水準에 있는 사람들의 役割參與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접 被害를 당하지 않고 犯罪를 목격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生活水準이 높은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수행을 하나, 직접 被害를 당하는 경우에는 "中"의 生活水準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신고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 ⑥ 宗教와의 關係

宗教를 가진 사람으로서 犯罪로부터 被害를 經驗한 사람은 총 223명이며 犯罪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사람은 총 191명인데, 그 중 원불교(3명)와 무교(3명)의 경우에는 표본수가 너무 적어 분석상 제외하였다.

犯罪被害時 宗教人 전체의 역할참여율은 71.3%에 이르며, 그 율에 있어서 집단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교신자들의 경우에는 82.1%가 적극적으로 역할에 참여하였고, 다음이 천주교(73.1%), 기독교(70.7%), 무교(64.9%)순으로 역할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犯罪를 목격하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어떻게 역할했는지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신고, 체포, 증인진술 등 수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응답자의 율은 48.2%로 犯罪被害時的 役割參與率에 비하면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역할참여율에 있어서 종교집단간의 차이도 크지 않다. 종교별로 비교해 보면 천주교(53.3%)가 제일 높고, 다음은 무교(51.4%), 불교(50.0%), 기독교(43.5%)순으로 참여율이 낮아지고 있다.

#### ⑦ 結婚與否와의 關係

이혼과 사별의 경우는 표본수가 너무 적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犯罪被害經驗이 있는 전체응답자중 女性과 男性의 비율은 50.8% 대 49.2%이며, 신고, 체포, 증인진술등 수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역할에 참여한 비율은 기혼자집단 74.4%, 미혼자집단이 68.4%이었다. 한편 犯罪를 목격하거나 인지했을 때에 행한

신고 이상의 역할에 있어서는 기혼자집단이 53.7%, 미혼자집단이 43.0%로 어떤 경우이든지 기혼자가 미혼자보다는 수사활동에 더 도움이 되고 큰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4-35〉 宗教, 婚姻關係와 役割經驗間의 關係

구 분		종 교				혼인관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기혼	미혼
범죄 피해 경험	적극적 역할	70.7	73.1	82.1	64.9	74.4	68.4
	신고하지 않았음	29.3	26.9	17.9	35.1	25.6	31.6
		x <sup>2</sup> =15.48625 D.F.=15 P=.4170				x <sup>2</sup> =8.55417 D.F.=9 P=.4794	
범죄 목격 경험	적극적 역할	43.5	53.3	50.0	51.4	53.7	43.0
	신고하지 않았음	56.5	46.7	50.0	48.6	46.3	57.0
		x <sup>2</sup> =17.31769 D.F.=15 P=.3002				x <sup>2</sup> =5.76454 D.F.=9 P=.7632	

⑧ 法意識과의 關係

法意識과의 關係는 法態도와 法違反許容과의 關係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a. 法에 대한 態도와의 關係

法에 대한 態도는 5분항으로 측정하였는바, 분석상 態도의 긍정성정도에 따라 "1"(긍정적인 편), "2"(그저 그런편), "3"(부정적인 편)의 3개집단으로 나누어 態도에 따라 搜查活動上 役割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비교하였다.

직접적인 犯罪被害를 經驗한 경우 法態도가 긍정적인 집단은 84.8%가, 중간인 집단은 71.6%가, 부정적인 집단은 38.5%가 수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신고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犯罪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도 역시 긍정적인 法態도를 가진 응답자들(上)이 신고 이상의 役割參與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68.0%), 그리고 중간집단은 45.8%가, 부정적인 態도를 가진 집단은 53.8%가 적극적인 역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할 사항은 法態도가 부정적인 응답

자의 수가 전체 被害經驗者 222명중 13명(5.9%)에 불과하기 때문에 통계분석상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더라도 긍정적인 法態度를 가진 사람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b. 法違反許容度와의 關係

설문지에서 볼 수 있듯이 法違反許容度는 4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許容度가 낮은 집단(1), 중간인 집단(2), 높은 집단(3)으로 구분하여 許容度에 따라 수사활동에 관련되는 役割參與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비교분석하였다.

직접적으로 犯罪被害를 당한 경우, 法違反에 대한 許容度가 낮은 집단(1)은 71.2%가, 중간인 집단(2)은 72.7%가, 높은 집단(3)은 58.8%가 수사활동에 관련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6〉 法意識과 役割經驗과의 關係

구 분		법 의 식					
		법에 대한 태도			법위반허용도		
		긍정적 집단	중간 집단	부정적 집단	긍정적 집단	중간 집단	부정적 집단
범죄 피해 경험	적극적 역할	84.8	71.6	38.5	71.2	72.7	58.8
	신고하지 않았음	15.2	28.4	61.5	28.8	27.3	41.2
		x <sup>2</sup> =14.21126 D.F.=6 P=.0274			x <sup>2</sup> =11.94355 D.F.=6 P=.0632		
범죄 목적, 인지 경험	적극적 역할	68.0	45.8	53.8	78.0	45.8	53.8
	신고하지 않았음	32.0	54.2	46.2	22.0	54.2	46.2
		x <sup>2</sup> =9.08192 D.F.=6 P=.1690			x <sup>2</sup> =8.23140 D.F.=6 P=.2216		

범죄를 목격하였거나 인지한 경우에도, 法違反許容度가 낮은 집단(1)의 역할참여도가 가장 높고(78.0%), 중간집단(2)과 높은 집단(3)의 참여율은 각각 45.8%와 53.8%였다. 法違反許容度가 높은 집단의 표본수가 너무 적어서(13명) 統計的意味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 역시 法違反許容度가 낮은 사람들이 수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法에 대하여 긍정적인 態度를 가지고 있고, 法違反行爲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法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犯罪搜查活動에 도움이 되는 여러가지 역할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⑨ 警察에 대한 態度와의 關係

警察에 대한 態度와의 關係는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와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로 나누어서, 시민들의 警察에 대한 態度가 犯罪被害나 犯罪의 목격, 인지시에 수행한 역할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미 알고 있듯이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는 8개문항으로,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는 2개문항으로 측정하였는 바, 法에 대한 態度와 마찬가지로 그 긍정성의 정도에 따라 상(1), 중(2), 하(3) 3개집단으로 나누어 役割經驗과의 關係를 살펴보았다.

##### a.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와의 關係

一般的인 假定에 의하여 예측했던대로 警察에 대한 態度가 긍정적인 응답자집단이 犯罪被害를 직접 당했을 경우이든, 犯罪를 목격했거나 인지했을 경우이든 수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역할에 더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犯罪被害의 경우 긍정적인 집단(1)은 78.2%가 신고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응답하였고, 중간집단(2)은 69.7%, 부정적인 집단(3)은 69.2%가 수사상 도움이 되는 역할에 참여했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 犯罪로부터 直接被害를 당했을 경우에는 警察에 대한 態度 여하와 關係없이 자기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役割參與率도 높았다. 그런데 집단간의 차이는 예측했던것 보다 크지 않은 것 같다.

한편 犯罪를 목격하였거나 犯罪事實을 인지한 경우에는 態度程度에 의한 집단에 따른 役割參與率은 낮으나 집단간의 차이는 상당히 있는 것 같다(統計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x^2=5.88152$ ,  $P 0.01$ ). 즉 警察에 대한 態度가 긍정적인 집단은 65.5%, 중간인 집단은 50.7%, 부정적인 집단은 36.4%가 신고 이

상의 역할수행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警察에 대한 態度와 役割經驗間의 關係

구 분		경찰에 대한 태도					
		경찰에 대한 일반적 태도			수사경찰에 대한 태도		
		긍정적 집단	중간 집단	부정적 집단	긍정적 집단	중간 집단	부정적 집단
범죄 피해 경험	적극적 역할	78.2	69.7	69.2	81.7	71.6	62.0
	신고하지 않았음	21.8	30.7	30.8	18.3	28.4	38.0
		x <sup>2</sup> =12.35597 D.F.=6 P=.0545			x <sup>2</sup> =31.00435 D.F.=15 P=.0088		
범죄 목격 경험	적극적 역할	65.5	50.7	36.4	48.8	52.7	29.2
	신고하지 않았음	34.5	49.3	63.6	51.2	47.3	60.8
		x <sup>2</sup> =5.88746 D.F.=6 P=.4359			x <sup>2</sup> =10.81066 D.F.=15 P=.7659		

b.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와의 關係

搜查警察에 대한 市民의 態度와 役割經驗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2가지 경우(직접 犯罪被害를 당했을 경우, 犯罪를 목격하거나 타인의 犯罪事實을 인지하였을 경우) 더 긍정적인 態度를 가진 응답자들이 부정적인 態度를 가진 응답자들보다 높은 役割參與率을 나타내고 있다.

犯罪被害를 당했을 경우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가 긍정적인 집단 (1)은 81.7%가 신고이상의 역할을 수행했고, 중간집단(2)은 71.6%, 부정적인 態度를 가진 집단(3)은 62.0%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犯罪를 목격하였거나 인지했을 경우(48.6%)에는 役割參與率이 전체적으로 앞의 경우(71.0%)보다 훨씬 저조하며 집단간의 차이는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즉 搜查警察에 대하여 긍정적인 態度를 가진 응답자들(1)은 48.8%가, 그

리고 중간집단(2)은 52.7%가, 부정적인 態度를 가진 응답자들(3)은 29.2%가 수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⑩ 警察과의 接觸經驗과의 關係

##### a. 自意的, 他意的 接觸經驗과의 關係

警察과의 接觸經驗이 자의적이거나, 타의적이거나에 따라 수사활동상 도움이 되는 역할에 시민이 참여하는 비율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였는 바,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의 예상과 일치하였다. 이러한 예측은 특히 犯罪를 목격하거나 인지했을 경우에 더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직접 犯罪被害를 당했을 경우를 보면 자의적으로, 警察과 접촉한 經驗이 있는 응답자들은 77.9%가,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은 59.5%가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犯罪를 목격했거나 인지시에는 自意的 接觸經驗이 있는 응답자들의 그것은 48.1%로 밝혀져, 犯罪로부터 직접被害를 당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接觸經驗의 차이에 따른 집단간의 역할 참여율이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 b. 事件關聯 接觸經驗과의 關係

警察과의 사건관련 接觸經驗은 法意識, 警察에 대한 態度 뿐 만 아니라, 犯罪搜查와 관련된 役割經驗이나 役割意識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一般의인 가정이었다. 警察과 접촉하게 된 사건의 유형에 따라 신고 이상의 적극적인 역할에 참여한 응답자의 비율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犯罪로부터 被害를 당한 경우 - 신고, 체포, 증인진술 등 수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가장 적게 한 응답자집단은 不法運轉으로 체포된 經驗이 있는 집단(57.1%)인데 표본수가(7명)적기 때문에 분석상 큰 의미가 없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役割參與率이 가장 높은 응답자집단은 交通違反이외의 犯罪로 체포된 經驗이 있는 집단이다(82.4%). 그런데 표본수(8명=전체응답자의 4.5%)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분석상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이 두 집단을 제외하면, 交通違反ticket을 발부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집단이 가장 높은 役割參與率(76.7%)을 보이고, 다음은 交通違反이외의 犯罪로 기소 또는 신고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집단이었다(76.0%). 그리고 役割參與率이 가장 낮은 집단은 사건관련

接觸經驗이 없는 집단이었다(64.8%). 그런데 이러한 결과는 연구자의 가정(: 사건과 관련해서 警察과 接觸한 經驗이 없는 집단의 役割參與率이 제일 높을 것이다)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犯罪를 목격했거나 犯罪事實을 인정한 경우 - 이 경우에는 不法運轉으로 逮捕된 經驗이 있는 응답자들이 가장 높은 역할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표본수(8명)가 적어서 통계분석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사건관련 接觸經驗이 있는 나머지 집단들을 비교해 보면, 교통 ticket을 발부받은 經驗이 있는 집단이 신고 이상의 역할에 참여한율이 가장 높고(57.4%), 두번째로 높은 집단은 사건관련 接觸經驗이 없는 집단(43.0%)이며, 交通違反 이외의 犯罪로 기소 또는 신고 받은 적이 있는 응답자집단은 39.1%가 신고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역할참여율이 가장 낮은 집단은 交通違反 이외의 犯罪로 체포된 經驗이 있는 응답자집단 이었다.(37.5%). 역할참여율에 있어서 사건관련 接觸經驗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統計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17.99188$ ,  $P=0.01$ ).

#### 11) 司法府와의 接觸經驗과의 關係

司法府와의 接觸經驗은 2개의 질문문항으로 측정하였는 바, 두 문항 다 接觸經驗이 "있다"고 답변한 집단과, "없다"고 답변한 집단으로 나누어 양집단간에 있어서 役割參與率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예측했던 것과는 반대로 接觸經驗이 있는 사람들이 신고, 체포, 증인진술등 犯罪搜查活動에 도움이 되는 역할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司法府와의 接觸經驗이 있는 사람들은 犯罪被害를 당했을 때 78.9%가 신고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接觸經驗이 없는 사람들은 70.8%가 역할수행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犯罪를 목격하였거나 犯罪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도 司法府와 接觸經驗이 있는 응답자들은 더 높은 役割參與率을 나타내고있다(55.0% 대 44.2% - 接觸經驗이 없는 집단). 그러나 기술적 분석에서 지적한 대로 전체표본중에서 司法府와 接觸經驗이 있는 응답자들의 수가 적으며(대략 전체의 6.5%정도), 두 질문문항에 다 "있다"라고 답변하여 변호인이나 檢察, 法院과 접촉한 經驗이 있는 응답자수는 겨우 20명(대 170명 정

도 - 接觸經驗이 없는 응답자)뿐이기 때문에 役割參與率에 대한 집단간의 비교는 큰의미가 없는 것 같다.

〈표 4-38〉                      警察과의 接觸經驗과 役割經驗과의 關係

구 분		경찰과의 접촉경험									사범부와의 접촉경험	
		자의적		타의적		사 건 관 련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교통위반 이외 기소· 선고	교통위반 이외 체포	불법 운전	교통 위반	무경험		
범죄 피해 경험	적극적 역할	77.9	59.5	59.5	68.3	76.0	82.4	57.1	76.7	64.8	78.9	70.8
	신고하지 않았음	22.1	40.5	40.5	31.7	24.0	17.6	42.9	23.3	35.2	21.1	29.2
	경험	x <sup>2</sup> =12.77499 D.F.=3 P=.0051		x <sup>2</sup> =2.69233 D.F.=3 P=.4415		x <sup>2</sup> =17.28990 D.F.=12 P=.1390					x <sup>2</sup> =23.76941 D.F.=12 P=.0219	
범죄 목적 경험	적극적 역할	48.1	48.2	39.7	53.0	39.1	37.5		57.4	43.0	55.0	44.2 55.8
	신고하지 않았음	51.9	51.8	60.3	47.0	60.9	62.5		42.6	57.0	45.0	
	경험	x <sup>2</sup> =3.07110 D.F.=3 P=.3808		x <sup>2</sup> =3.48329 D.F.=3 P=.3229		x <sup>2</sup> =17.99188 D.F.=12 P=.1159					x <sup>2</sup> =25.23564 D.F.=9 P=.0027	

12) 警察의 不當한 現場慣行에 대한 經驗과의 關係

警察의 不當한 現場慣行을 經驗한 사람들은 警察에 대하여 부정적인 態度를 가지게 되고, 수사상 警察에 비협조적인 態度를 취하게 되어 犯罪搜查에 있어서 警

察 — 國民의 協力關係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수사활동과 관련된 시민의 役割參與와 役割意識도 警察의 現場慣行에 대한 시민의 經驗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39〉 警察의 不當한 現場慣行經驗과 役割經驗과의 關係

구 분		경찰의 부당한 현장관행 경험	
		있다	없다
범죄피해경험	적극적역할	78.5	68.1
	신고하지 않았음	21.5	31.9
		$\chi^2=14.88709$ D.F.=12 P=.2477	
'범죄목격경험'	적극적 역할	37.6	52.9
	신고하지 않았음	62.4	47.1
		$\chi^2=22.85423$ D.F.=12 P=.0290	

警察의 부당한 現場慣行에 대한 經驗은 4가지 질문문항으로 측정하였는 바, 4가지 서로 다른 형태의 現場慣行에 관한 문항과 役割參與나 役割意識과의 關係를 고찰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4문항 전부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에게는 8점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문항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 응답점수를 4에서 5, 6, 7, 8점에 이르도록 하여 4-5점은 經驗이 있는 집단, 7-8점은 經驗이 없는 집단으로 분류하고, 수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役割參與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警察의 부당한 現場慣行에 대한 經驗과 수사활동상 시민의 役割參與나 役割意識과의 關係를 고찰하였다.

그런데 役割參與에 관한 집단간의 차이는 犯罪로부터 直接被害를 당한경우와 犯罪를 목격했거나 타인에 대한 犯罪事實을 인지한 경우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前者의 경우에는 警察의 부당한 現場慣行에 대한 經驗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役割參與率이 높게 나타났다(78.5% 대 68.1%). 그러나 後者の 경우에는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役割參與率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37.6% 대 52.9%). 前者의 경우에도 이론적 가정과 상반되는 것으로 설명이 어려우나, 犯罪로부터 직접 被害를 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없

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13) 地域變數로서의 住居地域과의 關係

住居地域의 구분은 상류, 중류, 하류로 하였으며, 犯罪被害를 당하는 경우와 犯罪를 목격하고 犯罪事實을 인지하는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서 응답자들의 수사상 役割參與率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직접 犯罪被害를 당하는 경우 상류지역의 응답자들은 77.3%가 신고 이상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류지역 응답자들은 74.5%, 하류지역 응답자들은 60.7%가 犯罪搜查와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犯罪를 목격하거나 타인의 犯罪事實을 인지한 경우에도 역시 상류지역, 중류지역, 하류지역 응답자 순으로 役割參與率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57.1% 대 47.8% 대 44.1%).

### 14) 犯罪에 대한 恐怖및 被害意識과의 關係

이미 설명한대로 犯罪에 대한 恐怖나 被害意識은 犯罪統制機關인 警察의 역량을 의심케 하고 그 결과 警察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과 態度를 가지게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犯罪被害意識이 강한 사람은 犯罪搜查활동과 관련된 역할의 식이 약하고 役割參與에 소극적이 된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이번 연구의 결과는 위와 같은 이론적 가정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해주고 있다. 즉 犯罪를 목격하거나 타인의 犯罪事實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被害意識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役割參與에 적극적인데(48.8% 대 36.4% - 느끼지 않는 집단), 犯罪被害를 직접 당했을 때는 오히려 犯罪로부터 被害意識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의 役割參與率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78.3 대 69.2-느끼는 집단).

### 15) 犯罪被害經驗과의 關係

犯罪被害經驗이 있는 사람들은 犯罪被害意識이 있거나 住居地域에서 犯罪로부터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처럼 警察을 信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研究者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犯罪被害經驗者는 일반사람에 비해 警察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警察의 搜查活動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

이 높다는 假定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假定下에서 犯罪被害經驗과 搜查活動에 관련된 시민의 役割과의 關係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犯罪被害를 직접 당했을 경우(47.4% 대 53.3%) 犯罪를 목격하고 타인의 犯罪事實을 인지 했을 때(44.8% 대 53.9%) 피해경험자의 역할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위의 假定을 지지해 주고 있다.

#### 16) 住居地域內에서의 安全意識과의 關係

犯罪로부터의 安全意識과 犯罪搜查에 있어서의 市民의 役割參與와의 관계는 직접 犯罪被害를 당했을 경우에는 一般的인 假定이나 研究者의 豫測과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고, 犯罪를 목격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우리의 假定과 豫測을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즉 犯罪被害의 경우, 주거지역내에서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자들은 64.7%가 搜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겠다고 응답했고,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85.7%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한 사람들의 役割參與率은 68.7%로 나타났다.

한편 犯罪를 목격했거나 犯罪事實을 인지한 경우에는 安全意識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주거지역에서 "안전하다"는 응답자의 役割參與率은 46.2%이고 "불안하다"는 응답자의 그것은 44.2%였다.

#### 17) 警察과의 親密性과의 關係

제 2장에서 제시한 이론적 설명에 근거하면 警察과의 親密性은 犯罪搜查上 市民의 협력 즉 役割參與와는 正의 關係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조사결과는 부분적으로만 理論的 假定을 지지해 주고 있다. 직접 犯罪로부터 被害를 당하는 경우(77.8% 대 73.5%)이든 犯罪를 목격하거나 타인의 犯罪事實을 인지한 경우(54.5% 대 44.4%)이든, 집안에 警察官이 있다는 응답자들의 役割參與率이 잘 아는 警察官이 없다는 응답자들의 役割參與率보다 높았다. 그러나 犯罪被害의 경우 警察官친구나 친척이 있든지 잘 아는 警察官이 있다는 응답자의 役割參與率(각각 67.3%와 68.7%)은 농담할 정도로 잘 아는 警察官이 없다는 응답자들의 役割參與率(73.5%)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4-40〉 住居地域, 被害經驗, 被害意識, 安全意識과 役割經驗과의 關係

구 분		주거지역			피해경험		피해의식		안전의식		
		상류	중류	하류	있다	없다	느낀다	느끼지 않는다	안전하다	그저 그렇다	불안하다
범죄 피해 경험	적극적 역할	77.3	74.5	60.7	47.4	53.3	69.2	78.3	64.7	68.7	75.7
	신고하지 않았다	22.7	25.5	39.3	52.6	46.7	30.8	21.7	35.6	31.3	24.3
		x <sup>2</sup> =6.86655 D.F.=6 P=.3334			x <sup>2</sup> =3.00045 D.F.=3 P=.3916		x <sup>2</sup> =25.78293 D.F.=6 P=.0002		x <sup>2</sup> =10.77183 D.F.=6 P=.0957		
범죄 목격 경험	적극적 역할	57.1	47.8	44.1	44.8	53.9	48.8	36.4	46.2	50.4	44.2
	신고하지 않았다	42.9	52.2	55.9	55.2	46.1	51.2	63.6	53.8	49.6	55.8
		x <sup>2</sup> =4.73163 D.F.=6 P=.5787			x <sup>2</sup> =2.56336 D.F.=3 P=.4639		x <sup>2</sup> =3.38760 D.F.=6 P=.7589		x <sup>2</sup> =2.65216 D.F.=6 P=.8511		

〈표 4-41〉 警察과의 親密性과 役割經驗과의 關係

구 분		친 밀 성			
		경찰근무 가족	전직경찰 친구·친척	친한 경찰관	없음
범죄 피해 경험	적극적 역할	77.8	67.3	68.7	73.5
	신고하지 않았음	22.2	32.7	31.3	26.5
		x <sup>2</sup> =11.18146 D.F.=9 P=.2635			
범죄 목격 경험	적극적 역할	54.5	50.0	50.0	44.4
	신고하지 않았음	45.5	50.0	50.0	55.6
		x <sup>2</sup> =6.04413 D.F.=9 P=.7355			

## (2) 役割意識에 관한 統計的 分析

役割意識은 警察의 搜查活動에 신고자, 증인, 참고인등으로 협조할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役割하겠는가 하는 질문으로 측정하였는바, 3가지 답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협조만 하겠다. 협조하지 않겠다.).

## ① 性과의 關係

搜查活動에 대한 性別 役割意識의 차이는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女性이 더 적극적인 면을 나타내어 男性보다 더 긍정적인 役割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즉 男性中 47.8%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女性의 응답율은 54.1%였다. 남녀 전체적으로는 49.9%가 적극적인 役割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犯罪被害를 당했을 때 遂行한 役割의 경우와는 대체되는 현상이다. 즉 직접 犯罪被害를 당하거나 犯罪를 목격내지 인지했을 경우에는 女性이 男性보다 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아무런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 ; 男性 25.7%, 女性 36.8%). 이는 女性이 意識은 강하더라도 현실에 부딪혔을 때 행동면에서는 男性보다 약하게 표출되는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믿어진다.

〈표 4-42〉 性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단위 : 명, %)

역할의식	성	
	남	성
적극적 협조	246 (47.8)	158 (54.1)
최소한의 협조	231 (44.9)	111 (38.0)
협조 않겠다	38 ( 7.4)	23 (7.9)

$\chi^2=3.61618$  D.F. = 2 P=.1640

## ② 年齡과의 關係

搜查活動에 대한 年齡別 役割意識의 차이는 法意識이나 警察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리고 一般的인 假定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10대를 제외하고는 年齡이 많을수록 더 적극적인 役割意識을 나타내고 있다(10대 48.8%, 20대 42.1%, 30대 43.0%, 40대 44.8%, 50대이상 56.0%). 그런데 그

결과는 役割經驗의 경우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즉 犯罪被害를 당했을 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을 한 율에 있어서 (10대는 제외하고) 젊은 年齡層의 사람들이 더 높게 나타나(20대 32.1%, 30대 37.3%, 40대 11.1%, 50대이상 8.0%), 젊은이들의 경우 役割意識과 실제행동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곧 현대 젊은이들의 言行不一致面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할의식의 연령별 집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었다.

〈표 4-43〉 年齡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단위 : 명, %)

성 역할의식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적극적 협조	40 47.8 %	34 42.1 %	86 43.0 %	59 48.8 %	47 56.0 %
최소한의 협조	29 35.4 %	170 42.5 %	98 49.0 %	53 43.8 %	28 33.3 %
협조 않겠다	13 15.9 %	14 4.4 %	16 8.0 %	9 7.4 %	9 10.7 %

$\chi^2 = 20.70086$  D.F. = 8 P = .0080

### ③ 教育水準과의 關係

年齡이 높을수록 法意識이 강하고, 警察에 대한 態度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一般的 假定이 부인되었던 것과는 달리 搜查活動에 대한 役割意識에서는 教育水準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졸이하의 범주는 표본수가 적어 統計적으로 意味가 없기 때문에 分析에서 제외하면, 중졸자들은 51.7%, 고중퇴/고졸자들은 46.4%, 대중퇴/대졸자 이상은 52.7%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유형은 役割經驗의 경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신고 이상의 役割을 한 응답자의 비율에 있어서는 중졸 68.4%, 고중퇴/고졸 81.9%, 대중퇴/대졸 이상 62.9%로서 고중퇴/고졸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학력이 높은 사람들은 役割意識은 강하지만 役割을 행동으로 실현하는 면에서는 약한 것 같다. 교육수준별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표 4-44〉 教育水準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단위 : 명, %)

교육수준 역할의식	국졸이하	중 졸	고퇴/고졸	대퇴/대졸
적극적 협조	2 25.0 %	30 51.7 %	155 46.4 %	219 52.7 %
최소한의 협조	5 62.5 %	20 34.5 %	143 42.8 %	175 43.5 %
협조않겠다	1 12.5 %	8 13.8 %	36 10.8 %	15 3.7 %

$\chi^2 = 19.98304$  D.F. = 6 P = .0028

#### ④ 職業과의 關係

搜查活動에 대한 役割意識에 있어서 職業間의 차이는 "무직"(70.4%)을 제외하고는 별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意識의 強度를 職業別로 나열하면 자영업 45.5%, 회사원/직장인 47.6%, 주부 48.2%, 학생 51.6%, 자유/전문직 51.9%, 공무원/공기업 5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正義

〈표 4-45〉 職業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단위 : 명, %)

직업 역할의식	학생	회사원/ 직장인	자영업	자유/전 문직	공무원/ 공기업	주부	무직	기타
적극적 협조	131 51.6 %	108 47.6 %	30 45.5 %	41 51.9 %	31 52.5 %	41 51.9 %	19 70.4 %	2 18.2 %
최소한의 협조	105 41.7 %	101 44.5 %	30 45.5 %	33 41.8 %	24 40.7 %	35 41.2 %	6 22.2 %	8 27.8 %
협조 않겠다	16 6.3 %	18 7.7 %	6 9.1 %	5 6.3 %	4 6.8 %	9 10.6 %	2 7.4 %	1 9.1 %

$\chi^2 = 12.86062$  D.F. = 14 P = .5375

感과 行動의 積極性이 강한 학생들의 役割意識이 다른 職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一般的인 假定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조사한 결과처럼 학생들은 法意識이 약하고 警察에 대한 태도도 비교적 부정적이라는 점과는 일치하는 것 같다. 그리고 무직의 경우는 전체응답자의 3.3%에 해당되는 27명만이 응답했기 때문에 統計分析上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이 결과를 役割經驗과 비교해보면 신고 이상의 役割을 한 응답자의 비율에 있어서 주부 54.5%, 학생 58.1%, 회사원/직장인 70.0%, 공무원/공기업 80.0%로 나타나고 있다.

#### ⑤ 生活水準과의 關係

生活水準에 따른 役割意識의 차이도 教育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水準이 높을수록 役割意識도 강할 것이라는 것이 一般的인 假定이다. 그러나 教育에서와 같이 生活水準과 役割意識과의 關係는 일정한 유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응답자의 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中下"(55.7%)이고, 다음이 "中"(48.4%), "中上"(47.6%), "下"(45.0%), "上"(25.0%)의 순서였다. 이러한 현상은 "中" 그리고 "中下"의 生活水準에 있는 사람들이 法意識도 강하고, 警察에 대한 態度도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앞장에서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中" 내지 "中下"의 階層 사람들은 비교적 道德主義者들이며, 中流文化의 規範이나 價値가 社會의 中流規範이나 價値가 된다는 先進國 社會學者들의 주장이 적용되는 것 같다.

#### ⑥ 宗教와의 關係

전체응답자중 원불교(5명)와 기타(7명)는 표본의 수가 너무 적어 分析에서 제외하였다. 宗教 與否나 宗派間 搜查活動에 대한 役割意識은 假定했던 것과는 크게 달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警察의 搜查活動에 협조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보면, 천주교(51.9%)가 제일 높고, 다음은 기독교(50.7%), 무교(49.6%), 그리고 불교(48.6%)의 순이었다. 다만 "협조하지 않겠다"는 아주 부정적 태도면에서 보면 불교(12.1%), 천주교(7.4%), 기독교(6.8%), 무교(6.1%)순으로 불교가 제일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役割意識이 가장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무교의 경우, 예측과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 이론적 설명이 어려운 것 같다.

〈표 4-46〉 生活水準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단위: 명, %)

생활수준역할 의식	상	중상	중	중하	하
적극적 협조	1 25.0 %	67 47.6 %	221 48.4 %	104 56.2 %	9 45.0 %
최소한의 협조	3 75.0 %	60 42.5 %	205 44.9 %	65 35.1 %	11 55.0 %
협조 않겠다		14 9.9 %	31 6.8 %	16 8.6 %	

$\chi^2 = 10.62936$  D.F. = 8 P = .2236

〈표 4-47〉 宗教와 役割意識과의 關係 (단위: 명, %)

종교 역할의식	없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
적극적 협조	139 50.0 %	148 50.7 %	42 51.9 %	68 48.6 %	1 20.1 %	5 71.4 %
최소한의 협조	122 43.9 %	124 42.5 %	33 40.7 %	55 39.3 %	3 60.0 %	2 28.6 %
협조않겠다	17 6.1 %	20 6.8 %	6 7.4 %	17 12.1 %	1 20.0 %	

$\chi^2 = 9.24376$  D.F. = 10 P = .5091

⑦ 結婚與否와의 關係

結婚與否와 役割意識과의 關係分析에서도 離婚과 死別은 표본수가 너무 적어 統計分析上 의미가 없기 때문에 分析에서 제외하였다.

搜查活動과 관련된 役割經驗에 있어서와는 상반되게 기혼자(46.9%)보다 미혼자(53.6%)가 더 적극적인 役割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警察의 搜查活動과 관련하여 협조할 기회가 있으면 "협조하지 않겠다"는 비율도 큰 차이는 없지만, 기혼자(8.3%)가 미혼자(6.9%)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결국 意識面에서 보면 기혼자

가 미혼자보다 떨어지는데, 실제행동(搜查活動에 도움이 되는 役割參與)面에서는 기혼자들이 더 적극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 4-48〉 結婚與否와 役割意識間의 關係 (단위 : 명, %)

결혼여부 역할의식	기 혼	이 혼	사 별	미 혼
적극적 협조	176 (46.9)	4 (36.4)	6 (54.5)	218 (53.6)
최소한의 협조	168 (44.8)	6 (54.5)	5 (45.5)	161 (39.6)
협조 않겠다	31 (8.3)	1		28 (6.9)

$X^2 = 5.23639$  D.F.=6 Sig=.5139

⑧ 法意識과의 關係

① 法에 대한 態度와의 關係

役割經驗과의 關係分析에서 처럼 態度의 긍정성 정도에 따라 3가지 집단으로 구분하고[(1)-긍정적인 편, (2)-그저 그런편, (3)-부정적인편, 役割意識에 있어서 집단간의 차이를 밝힘으로써, 法에 대한 態度와 役割意識間의 關係를 검토하였다.

〈표 4-48〉에서 보듯이, 法에 대한 態度가 긍정적이면 搜查活動과 관련된 役割意識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假定은 확실하게 검증되었다. 즉, 法에 대한 態度가 긍정적인 응답자들의 59.2%가 警察의 搜查活動에 협조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반응한 반면, 法態度가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닌 중간집단은 48.6%, 부정적인 응답자들은 39.3% 만이 적극적인 협조의사를 나타냈다. 搜查活動에 협조할 기회가 있어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을 봐도 세 집단간의 차이가 분명해진다. 즉 긍정적인 집단의 5.4%, 중간 집단의 7.1%, 그리고 부정적인 집단의 21.4%가 부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統計的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9〉 法에 대한 態度와 役割意識間的 關係 (단위 : 명, %)

법태도 역할의식	긍정적 태도	그저 그런 편	부정적 태도
적극적 협조	77 (59.2)	314 (48.6)	11 (39.3)
최소한의 협조	46 (35.4)	286 (44.3)	11 (39.3)
협조 않겠다	7 (5.4)	46 (7.1)	6 (21.4)

$X^2 = 13.48353$  D.F.=4 Sig=.0091

㉞ 法違反許容度와의 關係

法違反許容度和 搜查活動에 도움이 되는 市民의 役割과의 關係를 측정하기 위하여 4가지 질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法違反許容도가 낮은 집단 (1), 許容도가 중간인 집단 (2), 許容도가 높은 집단 (3)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許容도에 따른 役割意識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표 4-50〉 法違反許容도와 役割間的 關係 (단위 : 명, %)

범위반허용도 역할의식	낮은 집단	중간집단	높은 집단
적극적 협조	253 (54.8)	136 (44.3)	10 (29.4)
최소한의 협조	186 (40.3)	138 (45.0)	19 (55.9)
협조 않겠다	23 (5.0)	33 (10.7)	5 (14.7)

$X^2 = 19.840006$  D.F.=4 Sig=.0005

〈표 4-49〉에서 보듯이 法違反許容度가 낮은 집단은 54.8%, 중간집단은 44.3%, 높은 집단은 29.4%가 적극적인 役割意識을 나타내고 있다. 警察의 搜查活動에 협조할 기회가 있어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을 봐도 法違反許容度와 役割意識間에 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許容度가 낮은 집단은 5.0%, 중간집단은 10.7%, 높은 집단은 14.7%가 아주 부정적인 役割意識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들 집단간의 차이는 統計的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法에 대한 態度가 긍정적이고 法違反許容度가 낮으면, 즉 法意識이 강하면 役割意識도 긍정적일 것이라는 이론적 가정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⑨ 警察에 대한 態度와의 關係

④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와의 關係

이미 설명한대로 警察에 대한 態度도 8개 질문문항으로 측정하였는바, 態度의 程度에 따른 役割意識의 차이를 조사하여 警察에 대한 態度와 役割意識間의 關係를 파악하기 위하여 態度의 公正성을 기준으로 응답자들을 3집단 (긍정적인 집단 = 1, 중간집단 = 2, 부정적인 집단 = 3)으로 구분하여 役割意識을 비교하였다. 아래 〈표 4-50〉에서 보듯이 警察에 대한 態度가 긍정적인 응답자들(69.1%)과 부정적인 응답자들 (35.9%) 간의 役割意識의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밝혀졌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반응에 있어서도 집단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표 4-51〉 警察에 대한 一般的인 態度와 役割意識間의 關係 (단위: 명, %)

경찰에 대한 태도 역할의식	긍정적 태도	중도적 태도	부정적 태도
적극적 협조	47 69.1%	286 52.6%	61 35.9%
최소한의 협조	19 27.9%	222 40.8%	91 53.5%
협조 않겠다	2 2.9%	36 6.6%	18 10.6%

X<sup>2</sup> = 25.685553 D.F. = 4 Sig = .0000

긍정적인 집단은 2.9%, 중간집단은 6.6%, 그리고 부정적인 집단은 10.6%가 부정적인 役割意識을 나타내었다. 이들 집단의 차이는 統計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X^2=25.68553$ ,  $P=.001$ )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役割經驗과의 關係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㉞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와의 關係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는 2개의 질문문항으로 측정하였고, 搜查上 役割意識과의 關係를 調査하기 위하여 態度의 긍정성을 기준으로 3개 집단 (태도가 긍정적인 집단 = 1, 중간집단 = 2, 부정적인 집단 = 3)으로 구분하여 役割意識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4-51>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집단은 66.2%, 중간집단은 44.7%, 그리고 부정적인 집단은 29.3%가 적극적인 役割意識을 나타내고, 41.8%가 "협조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統計적으로 유의미하며, 그 결과는 警察에 대한 一般的 態度가 긍정적이면 役割意識이 강하듯이,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가 긍정적이면 적극적인 役割意識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앞장에서 보았듯이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가 긍정적이면 役割參與率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⑩ 警察과의 接觸經驗과의 關係

㉞ 自意的, 他意的 接觸經驗과의 關係

<표 4-52> 搜查警察에 대한 態度와 役割意識과의 關係 (단위: 명, %)

수사경찰에 대한 태도 역할의식	긍정적 태도	중도적 태도	부정적 태도
적극적 협조	175명 66.2%	188 44.7%	36 29.3%
최소한의 협조	92 30.6%	198 47.5%	54 54.3%
협조 않겠다	9 3.2%	31 7.8%	21 41.8%

$X^2= 82.05821$  D.F.=12 Sig=.0000

〈표 4-53〉 自意的, 他意的 接觸經驗과의 關係 (단위: 명, %)

역할의식 \ 접촉경험	자의적 접촉		타의적 접촉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적극적 협조	142명 49.3%	260 50.2%	105 46.7%	297 51.2%
최소한의 협조	118 42.0%	226 43.6%	100 43.4%	243 41.9%
협조 않겠다	28 8.7%	32 6.2%	20 9.9%	40 6.9%

$X^2 = 1.77951$  D.F. = 2 Sig. = .4108

경찰과의 接觸經驗이 搜查活動에 도움이 되는 市民의 役割參與와 關係가 있듯이, 役割意識과도 關係가 있을 것으로 假定하였다. 그런데 接觸經驗이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가 되겠지만, 接觸自體가 自意的이나, 他意的이나 하는 接觸의 性格도 役割經驗이나 役割意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學者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Ostrom과 Whitaker, 1973, Rusinko, 1978 등).

이러한 관점에서 警察과의 接觸經驗과 役割意識과의 關係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805명중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接觸經驗이 있는 사람은 513명이었고, 이중에서 자의적 接觸經驗이 있는 사람과 타의적 接觸經驗이 있는 사람은 각각 288명, 225명 이었다. 그런데 예측했던대로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警察과의 接觸經驗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응답율이 높았다. 그러나 그 차이는 예측한 것만큼 크지 않았으며 統計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참조할 것). 자의적 接觸이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는 적극적 役割意識을 나타낸 비율이 50.2% 대 49.3% 였고, 타의적 接觸經驗의 경우에도 그 비율이 51.2% 대 46.2%로써 역시 타의적 接觸經驗이 있는 경우는 (46.7%) 자의적 接觸經驗이 있는 경우 (49.3%)보다 적극적 役割意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役割意識을 나타낸 비율도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자의적 接

촉경험의 경우, 접촉경험이 없는 응답자들과 있는 응답자들 간의 부정적 役割意識의 차이는 8.7% 대 6.2%이며, 타의적 접촉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9.9% 대 6.9%였다. 그리고 자의적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와 타의적 접촉경험이 있는 경우의 차이는 8.7% 대 9.9%로 나타나 접촉의 성격(자의적이냐 타의적이냐)이 役割意識과 關係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⑤ 事件關聯 接觸經驗과의 關係

事件과 關聯해서 警察과 接觸한 經驗이 있는 사람과 그런 經驗이 없는 사람은 法意識, 警察에 대한 態度, 搜查活動과 關聯된 役割參與는 물론, 役割意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假定하였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에서 65%이상이 " 事件關聯 接觸經驗"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53.1%가 警察搜查活動에 협조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변하여 事件과 關聯해서 接觸經驗이 없는 사람들의 役割意識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役割意識이 가장 낮은 집단은 不法運轉으로 逮捕된 經驗이 있는 집단(23.1%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인데 표본수(13명)가 너무 적어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교통위반 티켓을 발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낮은 역할의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응답율이 42.0%였다.

(표 4-54)

事件關聯 接觸經驗과의 關係

(단위: 명, %)

사건관련 접촉경험 역할의식	교통위반 이외 범죄.기소.선고	교통위반 이외, 체포	불법운전, 체포	교통위반티켓	접촉경험 없음
적극적 협조	23 (45.1)	15 (48.1)	3 (23.1)	66 (42.0)	286 (53.1)
최소한의 협조	22 (42.9)	13 (40.7)	8 (61.5)	72 (45.9)	218 (40.4)
협조 않겠다	6 (12.0)	3 (11.2)	2 (15.4)	19 (12.1)	35 (6.5)

$X^2 = 18.24711$  D.F. = 8 Sig = .0194

경찰수사활동에 협조할 기회가 있을때 "협조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가장 부정적 역할의식을 나타낸 집단은 역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과 접촉한 경험이 없는 집단"이었다.(6.5%). 그런데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사건과 관련된 경찰과의 접촉은 수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의식과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⑪ 司法府와의 接觸經驗과의 關係

변호인이나 검찰의 증인 또는 법정에서 참고인으로 사법부와 접촉한 경험은 경찰과의 접촉경험처럼 경찰의 수사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할의식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는바, 조사결과는 경찰의 수사활동상 시민의 역할참여와의 관계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즉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사법부와 접촉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70.8%가 신고이상의 역할수행에 참여한 반면,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78.9%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접촉경험과 역할의식과의 관계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접촉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50.1%가 강한 역할의식 (=경찰의 수사활동에 협조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을 나타낸 반면, 변호인이나 검찰 증인으로 봉사한 사람들은 43.2%, 법원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봉사한 사람은 44.8%가 강한 역할의식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사법부와의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표 4-55) 司法府와의 接觸經驗과의 關係 (단위 : 명, %)

접촉경험 역할의식	변호인, 검찰과 접촉	법원과 접촉	접촉경험 없음
적극적 협조	16명 (3.2)	14 (44.8)	368 (50.1)
최소한의 협조	21 (6.8)	15 (48.7)	309 (42.1)
협조 않겠다		2 (6.5)	57 (7.8)

$X^2 = 7.65200$  D.F. = 8 Sig = .4682

### ⑫ 警察의 不當한 現場慣行에 대한 經驗과의 關係

앞에서 이미 설명한 대로 수사활동과 수사상 경찰 - 국민협력관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의식은 경찰의 현장관행에 대한 경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가정되었다. 조사결과는 이러한 가정을 확인해 주었다. 즉 경찰의 부당한 현장관행을 경험한 사람들은 39.5%만이 경찰의 수사활동에 협조할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응답하였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58.9%가 같은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9.3%가 부정적인 태도("협조하지 않겠다")를 보인 반면, 접촉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7.4%가 같은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서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은 4가지 질문문항에 전부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이고, "접촉경험이 없는 집단"은 4가지 질문문항에 전부 "없다"고 답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역할의식에 있어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⑬ 地域變數로서의 住居地域과의 關係

주거지역 (상류.중류.하류)에 따라서 (경찰수사에 도움이 되는)시민의 역할의식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토하므로써 "주거지역"(=Community)과 수사상 시민의 역할의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결과 범죄피해, 목격, 인지시와는 달리 상류지역 응답자들 (47.8%) 보다는 중류지역응답자들 (51.3%), 하류지역 응답자들(48.2%)이 더 강한 역할의식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사회의 부적절한 구조적 영향이 경찰에 대한 태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협조심, 즉 역할의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적 가정 (Thornton,1975, Walker,1972)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에서의 Shaw와 Williamson(197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즉 중산층 주거지역 사람들이 경찰에 대하여 가장 호의적 태도를 가지며, 경찰 수사활동상 역할의식도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상류지역 주거자들은 범죄피해나 목격 또는 타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할 때 (역할경험을 할 때)는 타지역 사람들보다 더 역할의식은 약할 것으로 나타나, 행동과 의식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 그런데 아래 <표 4-55>에서 보듯이 역할의식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4-56〉                      警察의 不當한 現場慣行과의 關係                      (단위 : 명, %)

역할의식 \ 현장관행경험	있다	없다
적극적 협조	17 (39.5)	215 (58.9)
최소한의 협조	22 (51.2)	123 (33.7)
협조 않겠다	4 (9.3)	27 (7.4)

$X^2 = 18.24711$   $\Gamma$  D.F.=8 Sig=.0194

⑭ 犯罪被害 經驗과의 關係

범죄로부터의 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공포나 피해의식과 같이 경찰에 대한 태도는 물론, 경찰의 범죄수사활동에 협조하는 시민의 역할참여나 역할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여러 관계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Sparks, et al,1977, Koenig, 1980 등).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간의 범죄수사상 역할의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표 4-56〉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 보다 역할의식이 낮은 것

〈표 4-57〉                      住居地域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단위 : 명, %)

역할의식 \ 주거지역	상류지역	중류지역	하류지역
적극적 협조	33 (47.8)	305 (51.3)	67 (48.2)
최소한의 협조	31 (44.9)	243 (40.8)	63 (45.3)
협조 않겠다	5 (7.9)	47 (7.9)	9 (6.5)

$X^2 = 1.32136$  D.F.=4 Sig=.8577

으로 밝혀졌고 (44.9% 대 51.8%) 경찰의 수사활동에 협조할 기회가 있을 때 "협조하지 않겠다"는 부정적 역할의식은 피해경험이 있는 집단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 (8.8% 대 7.0%). 통계적으로 보면 집단간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8〉 犯罪被害經驗과 役割意識과의 關係 (단위: 명, %)

역할의식 \ 범죄피해경험	있 다		없 다	
	명	%	명	%
적극적 협조	102	(44.9)	303	(51.8)
최소한의 협조	105	(46.3)	241	(41.2)
협조 않겠다	20	(8.8)	41	(7.0)

$X^2 = 3.23263$  D.F. = 2 Sig. = .1986

#### ⑮ 犯罪에 대한 公布 및 被害意識간의 關係

앞에서 이미 설명한대로 범죄에 대한 공포, 피해의식은 대경찰태도는 물론 수사활동상 경찰-국민 간의 협력관계와 관계가 있는 시민의 역할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이었다. 위의 두 변수간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해의식을 느끼는가, 아닌가에 따라 응답자들을 3집단 ("느낀다", "보통이다", "느끼지 않는다")으로 구분하여 역할의식을 비교하므로써 범죄피해의식과 경찰의 수사활동상 시민의 역할의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조사결과는 일반적 가정을 지지해주고 있다. 즉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는 응답자들은 52.1%가 수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를 밝혔고, 피해의식을 느끼는 응답자들은 44.6%가 동일한 의사를 나타냈다. 부정적인 역할의식("협조하지 않겠다"는 반응)에 있어서도 이론적 가정이 확인되었다. 즉 범죄에 대한 피해의식이 있는 집단은 9.1%가 "협조하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피해의식이 없는 집단은 7.6% 같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역할의식에 있어서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9〉 犯罪에 대한 被害意識과 役割意識間의 關係 (단위: 명, %)

범죄피해의식 역할의식	느낀다	보통이다	느끼지 않는다
적극적 협조	133 (44.6)	206 (53.8)	62 (52.1)
최소한의 협조	138 (46.3)	155 (40.5)	48 (40.3)
협조 않겠다	27 (9.1)	22 (5.7)	9 (7.6)

$X^2 = 6.98476$  D.F. = 4 Sig = .1367

이러한 연구결과는 범죄에 대한 피해의식이 낮은 사람들이 범죄피해 시에 더 역할참여에 적극적이라는 앞서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현상은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의식 (53.8%)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⑩ 住居地域내에서의 安全意識과의 關係

주거지역내에서의 안전의식과 경찰의 수사활동에 협조하겠다는 시민의 역할의식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거지역 내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응답자들의 53.8%가 경찰수사활동에 도움이 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응답하였고, 피해의식이 크지 않은 중간집단은 51.9%, 피해의식을 느끼는 집단은 51.2%가 긍정적 역할의사를 나타내었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응답의 비율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안전의식이 없는 집단은 11.0%, 중간집단은 7.5%, 안전의식이 강한 집단은 4.1%로 나타나, 역시 연구자의 가정을 지지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역할의식에 있어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의식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표 4-60〉 住居地域내에서의 安全意識과 役割意識間的 關係 (단위: 명, %)

역할의식 \ 안전의식	안전하게 느낀다		
	안전하게 느낀다	그저 그렇다	불안하다
적극적 협조	78 (53.8)	276 (51.9)	65 (51.2)
최소한의 협조	61 (42.1)	273 (40.6)	48 (37.8)
협조않겠다	6 (4.1)	40 (7.5)	14 (11.0)

$X^2 = 6.72918$  D.F. = 6 Sig. = .3466

#### ㉑ 警察과의 親密性과의 關係

역할경험에 관한 분석에서와 같이 경찰과의 친밀성은 경찰의 범죄수사활동상 시민의 역할의식(협력의식)과 正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되었다. 그러나 앞에서와 같이 이러한 가정은 부분적으로만 확인되었다. 즉 역할의식이 가장 강한 응답자들은 집안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였고 (54.3%), 다음은 경찰관인 친구나 친척이 있는 경우 (51.1%)였다. 그러나 농담할 정도로 아는 경찰관이 없는 응답자

〈표 4-61〉 警察과의 親密性과 役割意識間的 關係 (단위: 명, %)

경찰과의 친밀성 역할의식	경찰과의 친밀성			
	집안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	경찰관인 친구, 친척이 있는 경우	농담할 정도의 경찰관이 있는 경우	농담할 정도의 경찰관이 없는 경우
적극적 협조	71 (54.3)	71 (51.1)	103 (47.7)	151 (49.2)
최소한의 협조	51 (37.0)	56 (40.3)	102 (47.2)	123 (40.1)
협조 않겠다	12 (8.7)	13 (8.6)	11 (5.1)	33 (10.7)

$X^2 = 12.56335$  D.F. = 6 Sig. = .0505

들 (49.2%)이, 있는 응답자들 (47.7%)보다 더 강한 역할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부정적 역할의식 ("협조하지 않겠다")면에서도 집안에 경찰관이 있거나(8.7%) 경찰관인 친구나 친척이 있는 경우(8.6%) 보다는 잘 아는 경찰관이 없는 경우에 (10.7%) 역할의식이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 부분적으로 부인된 것도 있으나, 대체적으로 경찰과의 친밀성과 범죄수사상 시민의 역할의식간에는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친밀성에 따른 집단간 역할의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V. 結論 및 警察－國民協力關係의 確保方案

### 1. 序 說

경찰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 중에서 범죄의 통계가 가장 핵심적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있는 것 같지 않다. 대다수 시민들도 범죄통계를 위한 경찰의 제반활동과 전략을 상당부분 신뢰하고 지원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찰이 보여준 범죄통계능력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크고 작은 많은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양적으로는 증가일로에 있으며 질적으로도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범죄문제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게 되고 따라서 경찰의 범죄통제활동과 능력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한 1988년도 주요 사회지표중 범죄와 사회안전에 관한 부문에 의하면(경제기획원, 1989), 조사된 전체가구의 12%가 범죄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면, 1천가구중 167가구가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그 중 18가구가 강도피해를 73가구가 절도피해를, 그리고 13가구가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범죄피해율이 말해 주듯이 도시민의 57.2%는 항상 버모지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본 조사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시민이 범죄피해를 직접 당하고 있으며 도시민과 과반수 이상이 항상 범죄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했을 경우도 거의 40-50%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자신의 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경찰을 불신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즉 자신의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범죄피해자의 55.8%가 경찰에 신고해 봐야 별 성과가 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범죄통제를 위해서 경찰의 범죄수사활동에 있어서 국민의 협력강화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뜻있고 필요한 조치로 믿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범죄수사에 도움이 되는

경찰 - 국민협력관계에 장애가 되는 경찰의 내,외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둘째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 - 국민협력관계로 측정되는 범죄수사상 시민의 역할경험및 역할의식과 이들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가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협력관계의 장애요인에 관한 고찰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사상 시민의 역할경험및 역할의식과 관계요인들간의 관계연구는 연구표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행해졌다.

조사연구의 결과는 앞의 분석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며,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기본과정이 증명된 것도 있고, 기본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연구결과의 상당부분은 경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국민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협력관계 확보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2.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관한 要約

다음 절의 구체적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앞의 각장에 논급된 현행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 및 각 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중점추구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 제 점	개 선 방 향	대 안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특성 • 우발적 범행을 증가 • 대도시 범죄발생율 증가 • 범죄의 야간발생율 증가 • 범죄의 흉포화 및 연소화 • 범죄의 기동화 및 연소화 • 범죄의 집단화 및 조직화 • 다수의 신종범죄 출현	• 우발적범행환경 개선 • 대도시 역점 치안전략 수립 • 야간 방법활동 강화 • 야간 수사능력 배양 • 전국범죄정보의 활성화 -광역정보 -조직범죄 집단정보	기본방침 1. 주민의 입장에서 본 경찰활동추진 2. 현장제일주의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 강화 -순찰위주의 Team policing제도 도입 3. 자주적인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경찰 - 국민협력관계에 장애가 되는 경찰의 내,외적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둘째로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 - 국민협력관계로 측정되는 범죄수사상 시민의 역할경험및 역할의식과 이들에 영향을 미치며, 관계가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그런데 협력관계의 장애요인에 관한 고찰은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수사상 시민의 역할경험및 역할의식과 관계요인들간의 관계연구는 연구표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행해졌다.

조사연구의 결과는 앞의 분석내용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며,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는 부분적으로 기본과정이 증명된 것도 있고, 기본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연구결과의 상당부분은 경찰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국민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협력관계 확보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 2. 問題點 및 改善方案에 관한 要約

다음 절의 구체적협력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앞의 각장에 논급된 현행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향 및 각 대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중점추구점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 제 점	개 선 방 향	대 안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특성 • 우발적 범행을 증가 • 대도시 범죄발생율 증가 • 범죄의 야간발생율 증가 • 범죄의 흉포화및 연소화 • 범죄의 기동화및 연소화 • 범죄의 집단화및 조직화 • 다수의 신종범죄 출현	• 우발적범행환경 개선 • 대도시 역점 치안전략 수립 • 야간 방범활동 강화 • 야간 수사능력 배양 • 전국범죄정보의 활성화 -광역정보 -조직범죄 집단정보	기본방침 1. 주민의 입장에서 본 경찰활동추진 2. 현장제일주의에 의한 문제해결 능력 강화 -순찰위주의 Team policing제도 도입 3. 자주적인 지역경찰활동을 위한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경찰책임자에게 지역에 적합한 정책결정권 부여</li> <li>• 야간방범활동에 시민참여유도 및 활성화</li> <li>• 우발범행방지를 위한 근린환경 개선</li> <li>-철저한 업소단속, 유해환경제거</li> <li>• 범죄정보센터 설치 운영</li> <li>-범죄정보유통 : 범죄자를 공개</li> <li>-피해자 실태조사</li> <li>-범죄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의 강화</li> <li>-범죄신고자 보호제도강화</li> <li>-전문가에 의한 성폭력 및 범죄 피해상담</li> </ul>
<p>경찰내부의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경찰 근무환경 악화</li> <li>• 수사부서 근무기피 분위기 확산</li> <li>• 수사경찰의 의식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선주의</li> <li>-권위주의 경향상존</li> <li>-냉소주의</li> <li>-비밀주의</li> </ul> </li> <li>• 수사경찰의 인권의식 부족</li> <li>• 수사능력의 정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경찰의 사기진작</li> <li>• 경찰직에 적합한 인성자 채용 및 교육 강화</li> <li>• 수사경찰의식 개혁</li> <li>• 수사능력의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동수사능력 배양</li> <li>-현장 검거능력 배양</li> <li>-반응시간의 단축</li> </ul> </li> <li>• 경찰의 PCR활동 강화</li> <li>• 시민봉사활동 강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제일주의의 일상생활화</li> <li>• 수사경찰 전문화-전문화에 따른 인사제도 개선</li> <li>• 수사경찰의 처우개선</li> <li>• 경찰관 선발의 철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성, 배경조사의 강화</li> <li>-지역유지의 추천제도 활성화</li> <li>-Intern제도의 도입</li> </ul> </li> <li>• 의식개혁을 위한 사회화 과정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임경찰관 교육과 재교육시 경찰윤리, 국민의 기본권, 시민에 대한 봉사 등에 관한 교과과정 강화</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동수사 미진</li> <li>- 돌발사태 대응력 미흡</li> <li>• PCR 및 일상적 봉사활동 미흡</li> <li>• 공개수사의 기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수사지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동수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일반순찰경찰관의 교육강화</li> <li>• 현장검거능력 배양과 반응시간 단축을 위한 순찰의 강화 : 3C제도의 개선(경찰서단위로)</li> <li>• 쌍방향 커뮤니케이션(경찰↔국민)의 채널 구축</li> <li>- PCR부서의 설립과 전문가양성</li> <li>- PCR교육의 강화: 교과과정개편</li> <li>• 수사상 일정범위의 정보의 공개화</li> </ul>
<p>경찰외부의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의 경찰기피 심리 확산</li> <li>• 도시화의 가속에 따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유대감 약화</li> <li>- 공동체구성원의 가치관 불일치</li> <li>-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 발달</li> <li>- 빈부격차의 증가 및 빈민지역의 형성</li> </ul> </li> <li>• 범인성 환경의 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유해환경의 증가</li> <li>- 성개방풍조 및 음란퇴폐문화확산</li> </ul> </li> <li>• 수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부족과 불신풍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이 먼저 찾는 경찰관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의 이미지 쇄신</li> </ul> </li> <li>• 관할지역내 공식, 비공식 시민단체들과의 유대강화</li> <li>• 일관성 있고, 공평한 법률집행을 통한 가치관 형성</li> <li>• 빈민지역에서의 봉사활동 및 PCR강화</li> <li>• 청소년비행에 관한 철저한 조사</li> <li>• 수사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식불일치 프로그램도입 (예) 일일공동근무 및 순찰제도입 확대 - 시민의 인식전환</li> <li>• 경찰-검찰관계의 제도적 개선 : 일관성있는 법률집행을 하되, 개인에 맞는 공평한 법집행강화 (예) 경미한 비행의 경우 보증후 방제 확대</li> <li>• 빈민지역에서의 모니터제도 활성화</li> <li>• 청소년부서의 확대 개편: 비행예방 및 비행방지책 강구, 청소년경찰 전문화</li> <li>• 시민단체에 대한 경찰강연프로그램 개발</li> <li>• 공청회를 통한 수사상 국민의 의견 수렴</li> </ul>

<p>시민의 의식 및 태도에 의한 장애요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의 정당성 부인, 차별성 인정, 범위반허용 경향 만연</li> <li>• 부정적 대경찰 태도 만연-경찰과의 자의적 접촉거부</li> <li>• 수사경찰 및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 및 오해</li> <li>• 경찰의 역할변화 요구 (범죄통제, 법집행-봉사활동)</li> <li>• 범죄에 대한 공포 및 피해의식상존, 주거지역 내에서의 안전의식 결여</li> <li>• 저연령층 및 학생층의 법의식 부족</li> <li>• 교육수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법의식이 약하고 긍정적 대경찰태도 견지</li> <li>• 하류지역주민들의 부정적 법의식이 강함. 부정적 대경찰태도 견지</li> <li>• 교통관련 경찰접촉에서 오는 경찰에 대한 경외감</li> <li>• 사건관련 경찰접촉시 경찰의 불친절, 무성의한 태도</li> <li>• 경찰과의 친밀성 부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에 대한 친절, 봉사자세 확립</li> <li>• 시민의 자의적 접촉 유도</li> <li>• 타의적 접촉시 공평하고 친절한 자세 확립</li> <li>• 오해의 여지가 있는 수사사건에 대한 공개</li> <li>• 봉사활동의 다양화</li> <li>• 범죄로부터 안전의식 제고</li> <li>• 교통경찰과의 접촉시 호의적반응 유도</li> <li>• 방법 및 수사활동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유도 (지역사회에 밀착된 경찰활동)</li> <li>• 사경비조직 및 자율방법조직의 육성 지원</li> <li>• 청소년의 법의식 향상</li> <li>• 특정계층(상류지역, 하류지역, 소수집단)의 법의식 및 대경찰 시각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의 시민화: non-uniform personnel 증원</li> <li>• 수사경찰의 교육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권의식 함양</li> <li>-인간관계 교육강화:역활연기 교육 도입</li> <li>-전문수사능력 배양:선진국의 경찰 혹은 전문연구기관이나 학회의 seminar 및 훈련프로그램에의 참여확대</li> </ul> </li> <li>• 청소년의 건전 육성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캠프 등 이벤트행사주간</li> <li>-고교생들의 봉사경찰관</li> <li>-중, 고교방문 교육 및 계몽</li> </ul> </li> <li>• 지역과 밀착된 경찰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mmunity활동에 경찰의 참여 확대</li> <li>-국민과 경찰 하나되기운동 전개</li> <li>-경찰의 반사회 참여</li> <li>-장애자, 민원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li> <li>-다중집결업소와의 연락 체계 정비및 정보관리</li> </ul> </li> <li>• PCR교육프로그램 및 교과과정 개발</li> <li>• 교통경찰의 교육강화</li> <li>• 여성등 소수집단과의 관계개선 프로그램 개발</li> <li>• 경찰전시관 설립</li> <li>• 주민자치의 방법조직지원</li> </ul>
--	--	---

### 3. 提 言

犯罪搜查를 위한 警察 — 國民協力關係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警察이 國民과의 接點治安力量을 개선·강화하고, 현장위주의 근무로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해야하며, 국민을 먼저 찾아 위협과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성숙하고 적극적인 警察活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에서도 1992년 日本警察廳이 시달한 『地域警察刷新을 위한 지침』에 의하면, 地域警察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서 지역과의 친화성 부족, 警察의 문제해결 능력 부족, 地域警察의 空洞化에 대한 위험감의 결여를 들고 있으며, 이를 쇄신하기 위한 기본적 방침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본 警察活動의 추진, 현장제일주의에 의한 문제해결능력의 강화, 자주적인 지역警察活動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정비를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여러가지 시책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종래의 警察運營시스템이 수직지향형의 사회대응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지역거점개념이 소홀히 되어 犯人檢擧率이 저하되고, 警察이 지역사회에서 점하는 위치가 연계적으로 저하되는 현상을 나타냈으나,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의 개막에 따라 警察活動 역시 지역에 근거한 警察刷新強化方案이 과감히 강구되어야 한다.

#### 가. 警察內部的 覺醒

오늘날의 犯罪政勢와 그 추세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警察의 搜查活動을 최고도로 효율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긴요한데, 이 효율화촉진은 搜查活動에 대한 국민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警察은 전인격도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心機一轉의 기회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警察內部方案으로서 중요한 몇 가지를 들어보면, 첫째 搜查活動에는 強制處分이나 個人프라이버시에의 개입 등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상

대방의 심정과 처지를 무시하고 필요이상으로 직권을 휘두른다는지 하는 態度는 삼가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秘密主義를 고집하면 疎外感을 주어 국민의 協力意識을 감쇄시키게 되므로 搜查上 비약해야 할 사항과, 탐문 등을 위해 밝혀도 무방한 내용을 잘 분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搜查에 동참했다는 만족감도 줄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는 것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搜查實績을 높이려는 욕심에서 件數主義에 흐르는 경향은 금물이다. 여러 犯罪事件이 함꺼번에 발생한 경우라면, 국민이 가장 빠른 해결을 원하는 犯罪가 어느 것인지를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搜查力을 배분하여야 한다.

日常 搜查活動에 있어서도 대민關係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訊問이나 정보 수집활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간과 장소를 선정한든지, 搜查協力者에 관한 사항을 犯人측에서 감지하지 못하도록 유의하는 등 犯罪搜查에 있어서 警察官은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의 불안요인해소에 전력하며, 국민을 위하여 搜查한다는 인식이 일상생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나. 積極的인 警察弘報의 推進

이제 政府機關의 홍보 및 공보부서의 기능과 역할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그 주된 임무였다면, 이제는 政府機關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그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政府機關이 하는 일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얻기 위해 기반조성 및 설득작업도 꾀야 한다.

즉 정보기관과 국민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높고 두터운 벽을 허물고, 그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특히 政府機關중 警察은 그 수행업무특성상 국민이 警察과의 접촉을 반겨하지 않으며, 冷笑主義的인 경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표출하고 있는 부분이 되므로, 진실한 의미에서 홍보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警察은 작년 하반기부터 治安行政에 대한 國民의 여론을 수렴하여 治安施策에 이를 반영코자 治安行政 모니터요원을 선발위촉하여 여론조사를 월 1회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운영전담요원의 증원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모니터 요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또는 기념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원고료 등을 현실화하고 운영전담요원을 증원하여 월 1회 기준의 여론조사에 더하여 필요시 수시여론조사 또는 提案制度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警察廳의 공보담당관실, 地方警察廳의 공보관실, 警察署의 공보전담요원으로 연결되는 조직을 정비하고, 수행기능으로는 犯罪搜查 및 國民협력확보 차원의 아이디어 현상공모, 民警一體(가칭)등 地域警察雜誌 및 홍보지 발간, 미담집 발간, 地域警察弘報紙 경연대회개최, 견학안내제(Tour Guide System)를 비롯한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여러가지 시책을 꾸준히 연구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가용인력으로서 女警을 대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동반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기능을 발전시켜 警察講演 program으로 확대시키고, 여기에서는 사진, 슬라이드, 홍보영화 등 최신기자재를 활용하면서 고위급 警察官들을 演士로 초청할 수 있다면 더욱 성공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다. 搜查能力의 向上

搜查活動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수행하여 國民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 國民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搜查警察의 質이 개인적, 조직적으로 보다 향상될 것이 요구된다.

##### 1) 搜查警察의 자세 및 人權意識 高揚

搜查警察의 자세 및 人權意識 高揚의 문제는 항상 새로운 문제중의 하나이다.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犯罪가 다양해지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해 搜查要員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익혀야 하며, 한편 犯罪者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搜查

를 전개하는 프로로서의 搜查活動이 요구된다.

특히 警察幹部는 실천적인 搜查에 정통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搜查指揮가 곤란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搜查警察의 자세 및 인권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는 搜查警察의 의식과 제반행태에 있어서 의식개혁을 통한 과감한 일대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中央警察學校, 警察綜合學校, 警察搜查研修所 등 각 급 교육기관에서 搜查要員의 意識改革, 搜查와 人權, 搜查要員의 자세 및 교양에 관한 소양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교육방법으로는 인권침해사례, 의식개혁의 효과 등에 대하여 사례연구를 분임토의식으로 진행하며, 이때 被疑者, 被害者, 參考人으로서의 역할연기도 실시하여 그들의 입장과 그들이 느끼는 불쾌감도 직접 체험케 해 보는 계기를 부여한다. 探問技術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대인접촉요령의 교육도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시 고위직이 현장에 참여하여 凡組織的 共感帶를 형성케 하는 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 2) 犯罪情報센터運營

현대는 情報化社會이다. 특히 警察組織은 최근의 犯罪傾向이 廣域化, speed化, 知能化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犯罪搜查情報體系의 기술적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며,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수한 정보원이 될 수 있는 국민의 협력을 총집결하는 synergy체계를 이루는 것이 犯罪搜查에 효과적이다.

이 체계에서는 단순한 犯罪申告만의 접수에 그치지 않고 瀆職, 企業犯罪, 組織暴力犯罪, 麻藥犯罪 등 搜查端緒의 포착이 어려운 犯罪類型群에 대한 搜查情報, 지명수배정보 등을 폭넓게 유통시킴과 아울러 피해자의 실태조사, 犯罪申告者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및 신고자 보호의 적극전개, 그리고 성폭력 상담기능까지 수행함으로써 性犯罪의 단서를 포착하고 女性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범죄정보센터에서는 이렇듯 포괄적으로 犯罪申告, 犯罪情報流通, 被害相談, 申告者(提報者)保護業務 등을 수행함으로써 潛在的 犯行者의 犯罪豫防機能 및 追

跡搜查의 餘力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미국의 900번, 일본의 110번 제도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시민과 지역 사회에 굳게 뿌리내리고 있다.

그리고 1971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하기 시작한 "We Tip" project도 고려할 수 있겠다. 이 project는 마약밀매자들과 싸우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의 협조로 운영되는데, 비밀장소에서 전화교환수가 무료전화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보를 접수한다. 전화교환수는 먼저 "여기는 TIP전화입니다. 이름은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장난전화를 가려내면서 범집행기관에서 체포하는데 도움이 될 최대한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고안된 25개 항목의 질문을 한다. 제보자의 익명을 절대 보장하며, 대신 암호명과 번호가 부여된다. 제보에 의해 체포될 경우 체포후 보상을 지불하는데 상금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마약범죄이외에 강도, 살인, 어린이 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제보범위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 3) 搜查警察官의 資質向上

연구결과의 분석중 여러곳에서 우리 국민들의 법의식의 결여와 부정적 대경찰 태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수사경찰이나 수사결과에 대한 시민의 불신, 이로 인한 수사상 국민 — 경찰간의 협력부재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무제들은 경찰의 질적향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인데, 일반경찰관은 물론 수사경찰관의 자질향상은 여러가지 문제 해결방법중 제일 중요하고, 첩경이 되는 방법이다.

경찰에 의한 공평한 법률집행, 철저한 범죄통제는 형벌의 4대요소인 확실성, 신속성, 엄격성, 공평성을 통해서 국민들의 법의식을 강화해주며,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접근과 협조를 용이하게 하여, 범죄수사활동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국민 — 경찰간의 협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는 첩경은 경찰관의 자질향상이며, 자질향상 방안으로는 인성과 능력면에서 자질있는 경찰관의 선발과 철저한 교육을 들 수

있다. 미국 "L.A군 경찰"의 경우를 보면 경찰관 1인을 선발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2,000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인성검사, 심리검사, 배경조사, 체력검사 등 여러가지 조사로 선발이 확정되기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교육면에서 보면 국민의 기본권 관계, 경찰 윤리, 법률집행의 공평성문제, 지역 사회 봉사문제, 경찰 - 지역사회 관계등 봉사적이고 친절하며 정직한 경찰관을 육성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그중에서 지역사회관계에 관한 교육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봉사개념 : 경찰의 임무를 5가지면에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투영함

1. 질서유지 2. 범죄예방 3. 대중교육 4. 봉사활동 5. 법률집행

둘째, 지역사회의 태도와 영향 : 1. 법률집행은 시민의 감정, 사회경제적 조건등의 산물인 지역사회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점 2. 심리적요소들에 근거해서 지역사회의태를 연구 3. 지역사회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한 지식 - 학교, Media, 가정, 동료, 소수집단등

셋째, 시민의 평가 : 1. 경찰에 대한 지역사회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관한 토론 - a. Service Call에 대한 반응시간 b. Service Call의 취급방법 c.그결과 2. 시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율, 경찰관행을 포함한 경찰과 시민의 접촉결과에 관한 연구 3. 지역사회의 요구에 반응해서 문제 해결사로서의 경찰관에 대한 사회의 기대에 대한 토론 4. 경찰에 대한 시민의 비호의적 인상을 유발하는 요인드레그 관한 연구 - a. 경찰의 무관심 b. 비윤리적 행위 c. 인종적 편견 d.차별 e.만행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합한 인선과 현대경찰활동에 적합하고 철저한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이 요구된다.

#### 4) 其 他

公聽會를 개최하는 方法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가장 전통적인 警察行政의 참여행태로서 犯罪搜查의 기본계획 및 방향에 관하여 견해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여 참고하는 제도가 된다.

## 라. 國民과의 接點擴大

### 1) 靑少年과의 接點強化活動

靑少年은 미래의 성인이고 靑少年 때부터 警察에 대한 인식을 提高하면서 警察과의 벽을 허물어 나가야만 警察과 원만한 협력이 가능한 지역주민으로 성장한다.

특히 최근 少年非行의 원인과 배경을 보면 그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소년의 규범의식이 저하됨으로써 야기된다는 점을 상기할때 가정, 학교, 地域社會등과의 紐帶關係形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향상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활동이 추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소년의 사회참여를 자발적으로 유도해 내는 활동을 강구하고 강화하여야 한다. 警察이 關係機關 및 地域社會와 협력하여 스포츠 활동, 청소년 캠프 및 Auto Camp등의 Event행사, 法執行探究 program, 고교생들의 奉仕警察官 임명,<sup>28)</sup> 중.고등학교 방문계몽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警察施設을 개방하고 警察의 개입도가 높아야 그 효과가 倍增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 警察署 단위에 非行防止教室을 설치하여 청소년 健全育成 Handbook등 계몽자료를 발간하고 보호자 등과 非行防止座談會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보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향락풍조, 사치풍조 등을 배격하고 올바른 근로가치관을 형성케 할 수 있도록 環境美化活動, 社會福祉活動 등의 사회봉사활동이나 전통문화의 계승활동, 地域產業體에서의 체험활동 등 그지역의 특성에 맞는 靑少年健全育成對策이 警察의 지원과 연대하에 연구 개발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고 소년비행문제를 철저히 대처하여 범죄를 예방하려면 전담부서를 소년과를 두고 소년전문경찰관을 양성해야

28) 이 제도는 1969년 1월 미국의 New York에서 시행된 것으로서, 17세~19세의 고교생들을 선별하여 6개월간의 교육을 실시한 후 경찰서의 봉사경찰관으로 임명하여 활동케 하고, 졸업후 지역사회 순찰경찰관과 함께 청년문제를 전문분야로 하여 근무케 하고 있다.

한다.

한편 뉴질랜드에서는 J-Team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靑少年犯罪의 豫防과 搜查를 위하여 警察官 1명, 社會事業家 1명, 聖職者 1명이 한팀을 이루어 활동을 하게 되며, 靑少年犯罪의 예방으로부터 靑少年輔導까지를 일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우리나라에도 도입해 볼 만 하다.

## 2) 地域住民의 接點強化活動

전통적인 지역사회가 변모함에 따라 警察은 지역주민과 더불어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管轄地域에 뿌리를 내린 警察活動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깊은 융화를 이루어 지역주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해야만 한다.

최근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요구도 다양해 지고 있어 警察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를 포용함으로써 犯罪豫防 및 犯罪搜查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먼저 地域警察官이 지역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부여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지역주민들과 비공식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지역사회활동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警察署나 派出所에 Community Room을 만들고 휴일이나 비번을 이용하여 스포츠나 취미를 통한 自願奉仕活動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전국 약 3,000개의 警察署에서 3,700명의 地域警察官이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과의 공고한 紐帶確立, 犯罪搜查情報 등의 수집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주민휴가시 빈집지켜주기, 귀중품보관 등 여러가지 유형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친절봉사활동을 하며, 民願節次의 간소화 및 공정한 처리를 위한 강구도 필수적이다. <국민과 경찰은 하나입니다>라는 패찰을 제작, 배포하여 전경찰이 제복에 부착하고,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며 국민과

경찰 하나되기 운동, 경찰음악대를 조직하여 정기적인 연주회 개최, 퍼레이드 행사 및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그리고 犯罪나 事故의 대상이 되기 쉬운 高齡者 특히 獨居高齡者에 대한 보호 활동과 이들 高齡者들의 지식과 經驗을 살려 防犯活動, 靑少年非行防止, 교통안전운동 등에 참여시키는 二元的方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활동으로서 警察官署에 장애인용 전용 슬로프 설치 의무화, 그리고 手話相談所의 설치운용도 現代警察 職務遂行에 필수적인 부분이 된다.

기타 반사회에는 지역 警察官이 반드시 참여하여 防犯啓蒙 및 犯人手配 협조의뢰를 포함한 犯罪情報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및 사조직 Leader의 1일 警察官制度도 고려해 볼 만하다.

搜查活動 뿐 아니라 국민과의 接點領域이 넓은 교통의 지도단속, 순회연락 같은 外勤警察活動時에도 항상 부드러운 態度를 견지하여 적정한 업무집행을 실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택시회사, 버스회사 등 운송업체, 경비회사, 자동차 수리업체, 그장, 목욕탕 등 다중 집결할 수 있는 업소 등과 연락체계를 정비하여 각 활동단위를 전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유효한 정보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맥락으로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가장 시민의 협력을 얻기 힘든 도시화경향이 현저한 지역에 있어서도 주택단지, 아파트 등의 관리인, 경비원 또는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평소 犯罪被害時의 急報方法등 구체적인 협력방법을 敎養하며, 搜查活動에 대한 협조의식을 높여나가야 한다.

우범지역에서는 주민자치의 자경단을 조직케하여, 주민단독 또는 경찰과의 합동순찰(: 사랑의 patrol)을 통하여 어두운 장소 또는 우범장소를 집중단속토록하는 등 자경단의 활동을 경찰이 적극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警察展示館을 설립하여 警察과 국민간의 공감대 형성의 場으로서 활용하여야 하리라고 본다.

### 3) 警察의 市民化(Civilianization)와 民主化

경찰과 군대는 유사한 점이 많다. 즉 두조직의 구성원들은 제복을 입고, 무기를 휴대하며, 억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이와같은 현상은 최초의 경찰관들이 고대 이집트의 왕에 의하여 임명된 군인이었다는 사실에서 연유될 수도 있으나 역할과 기능상 두조직은 유사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을 준군대적(paramilitary)조직이라 하며 또많은 경찰관들은 군대처럼 중앙집권적이고 통제적인 조직을 선호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경찰에 있어서 암시하는 바가 크다. 경찰이 군대의 모양을 갖추고 군대적기능을 취하면 취할수록 비민주적 경찰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경찰을 시민의 통제하에 두고 시민의 영향을 많이 받게 하면 할수록 그러한 문제는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찰과 국민을 가까운 사이로 만들기 위하여는 경찰의 시민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시민화를 위한 몇가지 예를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적구성면에서 Uniform Police를 줄이고 일반행정직을 많이 고용해야 한다. Sweden의 예를들면 고등법원판사가 경찰 director로 임명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경찰학교 교장도 Uniform Policeman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경찰국의 국장들 중에서 때로는 과반수가 일반행정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은 항상 경찰의 배경이 없는 변호사가 책임자로 임명되곤 한다. 호주의 경우에도(예, South Wales주 경찰국) 범죄통제국이나 기획관리국은 일반행정직이 국장직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정책은 경찰의 전 문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둘째, 여성직원, 경찰관의 고용증대가 요구된다.

셋째, 물리적 환경의 변화가 요구된다. 시민들이 경찰에 접근하는 기회가 있을 때 여성경찰관이나 직원을 많이 만나고, 경찰내부의 장식이나 건물구조가 (예, 로비에 의자를 놓는것) 시민적 특성을 띄게되면 시민들은 경찰에 대하여 친근감을 가지게 되고 경찰자신도 시민과 동질성을 느끼게 된다.

넷째, 교육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경찰은 물론 수사경찰관이라도 경찰내부의 준군대적 분위기에서만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일반교육기관이나 전

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세미나에 자주 파견하는 방법으로 교육적 민주화를 통한 경찰관들의 마음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 參考文獻

### 〈국내문헌〉

金忠男 譯, 警察과 地域社會(Earle Howard H.), 여명出版社, 1991.

李蓮洙 編, 犯罪搜查規則解説, 동민出版社, 1993.

崔尙圭, 科學搜查의 現場, 搜查研究社, 1993.

韓國刑事政策研究院, 共同住宅의 犯罪防禦空間導入에 관한 研究, 1992.

\_\_\_\_\_, 犯罪發生의 趨勢分析: 1964 - 1991, 1994.

\_\_\_\_\_, 社會構造와 犯罪 - 經濟發展과 人口成長을 中心으로 - 1993.

\_\_\_\_\_, 警察에 대한 시민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_\_\_\_\_, 수사경찰의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_\_\_\_\_, 各국의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연구, 1994.

\_\_\_\_\_, 음란물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1994.

\_\_\_\_\_, 刑事政策研究 第5卷 第1號, 1994, pp. 31~57.

\_\_\_\_\_, 사회규범의 준수요인에 관한 연구, 1994.

警察廳, 警察統計年報, 1993.

法務研修院, 犯罪白書, 1993.

韓國法制研究院, '94國民法意識 調查研究, 1991.

李璜雨, 警察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에 관한 研究, 行政論集, 東國大學校 行政大學院, 1989.

### 〈국외문헌〉

Apple, N and D.J. O'Brien, "Neighborhood Racial Composition and Residents' Evaluation of Police Performanc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983, 7:18—33.

Benson, P.R., "Political Alienation and Public Satisfaction with Police Service,"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981, 24: 45—64.

Black, Donald, *Toward a General Theory of Control* (Vol. 1), Academic Press, 1984, pp. 4—5.

Boggs, S.L. and S.F. Allliher, "Evaluating the Police: A Comparison of Black Street and Household Respondents," *Social Problems*, 1975, 13:393—406.

Bordua, D.J. and L.L. Tifft, "Citizens Interviews, Organizational Feedback, and Police Community Relations Decisions," *Law and Society Review*, 1971, 6: 155—182.

Brownlie, Alistain R.(eds.), *Crime Investigation Art or Science ?*, Scottish Academic Press, 1984

Campbell, A. and H. Schuman, "A Comparison of Black and White Attitudes and Experiences in the City," In C.M. Hear(ed.), *The End of Innocence: A Suburban Reader*, Glenview, ILL.: Scott Forseman, 1972.

Carte, G.E., "Changes in Public Attitudes toward the Police: A Comparison of 1938 and 1971 Survey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983, 1:182—200.

Carter, D.L., "Hispanic Inetraction wit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in Texas: Experiences, Attitudes, and Percep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83, 11:213—227.

Chackerian, R.S. and R.F. Barrett, "Police Professionalism and Citizen Evaluation," *Urban Affairs Quarterly*, 1973, 8:345—349.

Cohn, Alvin W. and Emilio C. Viano (eds.), *Police Community Relations : Images, Roles, Realities*, J. B. Lippincott Company, 1976

Cox, Steven M., *Police in Community Relations : Critical Issues*, William C. Brown Publishers, 1992

Dean, D., "Citizen Ratings of the Police: The Difference Contact Makes,"

Law and Policy Quarterly, 1980, 2:445—471.

Dintino, Justin J. and Frederick T. Martens, *Police Intelligence Systems in Crime Control*, Charles C. Thomas Publisher, 1983

Franklin, Clyde W., *Theoretical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Little, Brown and Company, 1982

Furstenberg, F.F. and C.F. Wellford, "Calling the Police: The Evaluation of Police Service," *Law and Society Review*, 1973, 7:393—406.

Hadar, L and J.R. Snortum, "The Eye of the Beholder: Differential Perceptions of Police by the Police and the Public,"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974, 2:37—54.

Hyman, F.I. and J. Kruckenberg, "A Methodology for Assessing Citizen Perceptions of Pol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74, 2:219—23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hiefs of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1989

Jacob, H. "Black and White Perceptions of Justice in the City," *Law and Society Review*, 1971, 6:68—89.

Kalmanoff, Alan, *Criminal Justice :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76

Kleinm, J.F., J.R. Webb, and J.E. DiSanto, "Experience with the Police and Attitude toward the Polic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1978, 3 : 441—456.

Koenig, D.J., "The Effect of Criminal Victimization and Judicial or Police Contact on Public Attitudes toward Local Pol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80, 8 : 243—249.

Lovrich, N.P., Jr. and G.T. Taylor, Jr., "Neighborhood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 Services : A Citizen Survey Approach," *Urban Affairs Quarterly*, 1976, 12 : 197—222.

McDowell, Charles P., *Criminal Justice : A Community Relations Approach*, Pilgrimage A Division of Anderson Publishing Co., 1984

McIntyre, J., "Public Attitudes toward Crime and Law Enforcement," *The Annals*, 374 (November, 1969).

Morgan, J. Brian, *The Police Function on The Investigation of Crime*, Great Britain : Athenaeum Press Limited, 1990

Niederhoffer, Arthur, *Behind the Shield : The Police in Urban Society*, New York : Doubleday & Co. Inc., 1969.

Ostrom, E. and G. Whitaker, "Does Local Community Control of Police Make a Difference? The Preliminary Finding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973, 17 : 48—76.

Parks, R.B. "The Police Response to Victimization : Effects on Citizen Attitudes and Perceptions," In Wesley G. Skogan (ed.), *Sample Survey of the Victims of Crime*, Cambridge, MA :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1976.

Percy, S.L., "Response Time and Citizen Evaluation of Polic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980, 8 : 75—86.

Robinson, C.D. et.al., *Police in Contradition*, Westport : Greenwood Press, 1994.

Rusinko, W.T., K.W. Johnson, and C.A. Hornung, "The Importance of Police Contact in the Formulation of Youth's Attitudes toward the Police," *Journal of Criminal Justice*, 1978, 6 : 53—67.

Scaglione, R. and R.G. Condon, "Dissatisfaction with City Services : Is Race an Important Factor?" In H. Hahn (ed.), *People and Politics of Urban Society*, Beverly Hills, CA : Sage, 1972.

Schuman, H. et. al., "Dissatisfaction with City Services : Is Race an Important Factor," In H. Hahn (ed.), *People and Politics of Urban Society*, Beverly Hills, Sage Pub., 1972.

Shane, Paul G., *Police and People : A Comparison of five Countries*, The C. V. Mosby Company, 1980

Shaw, M. and W. Williamson, "Public Attitudes to the Police," *The Criminol-*

ogist, 1972, 7 : 18–33.

Skogan, W.G. "Public Policy and Public Evaluation of Criminal Justice System

Performance," In J.A. Gardiner and M.A. Mulkey (eds.), *Crime and Criminal Justice*, Lexington, MA : Lexington Books, 1975.

Skoog, D., L.W. Roberts, and E.D. Boltd, "Native Attitudes toward the Police," *Ca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1980, 22 : 354–359.

Smith, P.E. and R.O. Hawkins, "Victimization, Types of Citizen Police Contacts and Attitudes toward the Police," *Law and Society Review*, 1978, 8 : 135–152.

Sparks, R.F., H.C. Genn and D.J. Dodd, *Surveying Victims*, New York : John Wiley & Sons, 1987.

Swanson, Charles R., Neil C. Chamelin and Leonard Territo, *Criminal Investigation*, McGraw – Hill, Inc., 1992

Sykes, R.E. et.al., *Policing : A Social Behaviorist Perspectives*, Rutgers Univ. Press, 1983.

The President's Commission on Law Enforcement and Administration of Justice, *Task Force Report (The Police)*, N. Y. : Arno Press and The New York Times, 1971

Thomas, C.W. and J.M. Hyman, "Perceptions of Crime, Fear of Victimization, and Public perceptions of Police Performance,"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1977, 5 : 305–317.

Thornton, L.M., "People and the Police : An Analysis of Factors Associated with Police Evaluation and Support,"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1975, 1 : 325–342.

Torres, Donald A., *Handbook of Federal Police and Investigative Agencies*, Greenwood Press, 1985

Tylor, T.R., "The Influence of Citizen Satisfaction with Police Behavior upon

Public Support for Increase in Police Authority," *Law and Policy Quarterly*, 1984, 6 : 329-338.

Walker, D. et. al., "Contact and Support," *North Carolina Law Review*, 51 (Nov., 1972); 43-79.

Winfree, T.V. and C.T. Griffiths, "Adolescent Attitudes Toward the Police," in Ted Perdiand (ed.), *Juvenile Delinquency : Little Brother Grows Up*, Beverly Hills, Sage Pub., 1971.

檜山西郎, 成熟した社会の犯罪と豫防, 酒井書店, 1994

藤田弘人 編, 変動と社会的逸脱の社会学, 文化书房博文社, 1993

宮澤節生, 犯罪捜査をめく“る第一線刑事の意識と行動, 成文堂, 1984

安富潔, 捜査手続法, 立花书房, 1994

神一行, 警察官僚, 勤文社, 1994

下村幸雄, 刑事司法を考える, 勤草书房, 1992

特別捜査幹部研修所, 捜査装備資器材の活用, 昭和 44年

\_\_\_\_\_, 捜査情報の管理, 昭和 45年

\_\_\_\_\_, 捜査における国民協力の確保, 昭和 46年

\_\_\_\_\_, 現場捜査(鑑識活動を中心として), 昭和 47年

\_\_\_\_\_, 公開捜査, 昭和 48年

\_\_\_\_\_, 突発重大事故における初動措置, 昭和 49年

\_\_\_\_\_, 捜査と報道, 昭和 50年

\_\_\_\_\_, 科学捜査, 昭和 54年

警察廳, 警察白書, 平成元年~平成6年

法務省法務総合研究所, 犯罪白書, 平成元年

〈부록 1〉

## 國民의 法意識 및 警察에 대한 態度 研究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여러분의 법에 대한 태도와 법을 집행하는 경찰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고자 수행되는 조사입니다.

조사자료는 보다 좋은 제도를 연구하는 학문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개인의 응답에 대해서는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보다 좋은 제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다는 생각으로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 보 환

Tel : 260-3255

법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1. 공중도덕, 법은 항상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법이 엄으면 사회는 혼란 스러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옳지 않고 부당한 법도 많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법은 사회의 질서를 위해서 보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존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똑같이 법을 위반했을지라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6. 사리에 맞지 않는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발각되지 않는다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8. 법대로 살아갈 경우 손해본 가능성이 있을 때는 법을 어길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겨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⑤

경찰에 대한 귀하의 태도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편이다	전혀 그렇지않다
1. 경찰은 권위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경찰은 시민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3. 경찰은 고압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4. 경찰은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	①	②	③	④	⑤
5. 경찰은 법집행을 정당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경찰에 친근감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7. 警察은 신뢰할만 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가 경찰관이 되어도 무방하다 ① ② ③ ④ ⑤

수사경찰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1. 警察의 1차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우범자 감시, 犯罪예방  
 ② 犯罪사건 搜查, 범인체포  
 ③ 일반시민의 일상적 요구에 봉사  
 ④ 일반시민에 앞장서서 사회도덕실천  
 ⑤ 기타

2. 搜查警察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고생하므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② 별 느낌이 없다.  
 ③ 거부감이 있어 되도록이면 접촉하고 싶지 않다.

2-1. (거부감이 있다면) 왜 거부감을 갖습니까?

- ① 막연한 선입견(뚜렷한 이유없다)  
 ② 고압적 / 권위적인 자세  
 ③ 교통위반 적발등 피해의식  
 ④ 형식적 / 경직적인 일처리  
 ⑤ 부도덕한 일처리  
 ⑥ 기타

3. 警察의 搜查결과는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① 아주 신뢰 ② 신뢰하는 편 ③ 보통  
 ④ 불신하는 편 ⑤ 아주 불신

3-1. (불신한다면) 警察의 搜查결과를 불신하는 이유는?

- ① 警察을 무조건 불신하는 경향이 있어서
- ② 搜查警察의 능력(인원, 장비, 능력) 미흡
- ③ 搜查警察의 안이한 搜查態度
- ④ 警察의 정직성에 의심이 가므로
- ⑤ 기타

4. 公開搜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 ②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4-1. 우리나라는 公開搜查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아주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충분 ⑤ 너무 많다

5. 警察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고 시민이 警察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경찰및 범죄에 대한 귀하의 경험및 역할에  
대하여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는 犯罪의 피해자가 되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 2로

1-1. 그 때 어떻게 했습니까?

- ① 신고만 했다.
- ② 직접 잡아서 警察에 인계했다/잡으려고 시도해 보았다.

┌  
└

③ 범인 체포 후 증인(참고인) 진술까지 했다. —

☞ 문 1-1-1로

④ 신고하지 않았다. ☞ 문 1-1-2로

1-1-1. 搜查협조시 警察의 본인에 대한 대우는?

- ① 협조에 고마워하는 친절한 態度
- ② 귀찮아 하는 평범한 態度
- ③ 범인이나 피의자처럼 취급하는 부당한 態度

1-1-2. 신고를 안 하신 이유는?

- ① 공연히 번거롭다.
- ②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 ③ 搜查 중 본인의 비리가 밝혀질까 봐서
- ④ 搜查 중 부당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 ⑤ 警察의 搜查能力을 믿지 않기 때문에
- ⑥ 기타

2. 귀하는 犯罪의 현장을 목격하거나 다른 사람의 犯罪사실을 안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 문 3으로

2-1. 그 때 어떻게 했습니까?

- ① 신고만 했다.
- ② 직접 잡아서 警察에 넘겼다/잡으려고 시도했다
- ③ 범인 체포 후 증인 (참고인)진술까지 했다.

☞ 문 2-1-1로

④ 신고하지 않았다. ☞ 문 2-1-2로

2-1-1. 搜查협조시 警察의 본인에 대한 대우는?

- ① 협조에 고마워하는 친절한 態度
- ② 귀찮아 하는 평범한 態度
- ③ 범인이나 피의자처럼 취급하는 부당한 態度

2-1-2. 신고를 안 하신 이유는?

- ① 공연히 번거롭다.
- ②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 ③ 搜查 중 본인의 비리가 밝혀질까 봐서
- ④ 搜查 중 부당한 취급을 받을 수 있어서

3.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공포나 피해의식을 느끼니까 ?

- ①느낀다      ②보통이다      ③느끼지 않는다

4. 귀하가 警察의 搜查活動에 협조(신고, 증인, 참고인 등으로) 할 기회가 있으면

- 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 문 5 로
- ② 소극적으로 최소한의 협조만 하겠다.
- ③ 협조하지 않겠다.

4-1.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 ① 범인이 검거되든 말든 관심없다.
- ② 공연히 번거롭다.
- ③ 범인의 보복이 두려워서
- ④ 협조시 搜查관의 부당한 취급이 있을 것 같아서
- ⑤ 기타

5. 귀하의 의사로 경찰과 접촉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다      ② 없다

6. 경찰의 요청으로 경찰과 접촉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 다                      ② 없 다

7. 귀하는 경찰과 사건관련 접촉경험이 있습니까 ?

- ① 교통위반 이외의 범죄로 기소 또는 선고받은 적이 있다.  
② 교통위반 이외의 범죄로 체포된 적이 있다.  
③ 법운전으로 체포된 적이 있다.  
④ 난 1년동안 교통위반 ticket을 발부받은 적이 있다.  
⑤ 어떠한 경험도 없다.

8. 귀하는 변호인의 증인이나 검찰증인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 다                      ② 없 다

9. 귀하는 법정에서 참고인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 다                      ② 없 다

10. 귀하는 경찰에 의한 불친절이나 난폭한 취급을 당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

- ① 있 다                      ② 없 다

11. 귀하는 범죄로 체포되거나 혐의를 받았을 때 불공평하게 취급당한 일이 있습니까?

- ① 있 다                      ② 없 다

12. 귀하는 경찰에 의해 육체적 또는 언어적 학대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

- ① 있 다                      ② 없 다

13. 귀하는 시민간의 시비에 부당하게 어느 한 편 만을 옹호하는 경찰관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자료분류를 위해서 여쭙어 보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16-19세    ② 20-29세    ③ 30-39세    ④ 40-49세    ⑤ 50세 이상

3. 귀하의 학력은?

- ① 국졸이하    ② 중졸    ③ 고졸퇴 / 고졸    ④ 대졸퇴 / 대졸

4. 귀하의 직업은?

- ① 학생    ② 회사원 / 직장인    ③ 자영    ④ 자유 / 전문직  
⑤ 공무원 / 공기업    ⑥ 주부    ⑦ 무직    ⑧ 기타

5. 귀댁의 생활 수준은 본인이 평가하기에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    ② 중상    ③ 중    ④ 중하    ⑤ 하

6. 귀하의 종교는?

- ① 없다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불교    ⑤ 원불교    ⑥ 기타

7. 귀하의 결혼여부는 ?

- ① 기혼    ② 이혼    ③ 사별    ④ 미혼

8. 귀하의 주거지역은 ?

- ① 상류지역      ② 중류지역      ③ 하류지역

9. 특히 귀하의 주거지역에서 범죄로부터의 안전의식은 어떻습니까 ?

- ① 안전하다고 느낀다      ② 그저 그렇다      ③ 불안하다

10. 귀하의 경찰과의 친밀성은 ?

- ① 집안에 경찰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  
② 경찰관인 친구나 친척이 있다.  
③ 서로 이름을 부르며 농담할 정도로 아는 경찰관이 있다.  
④ 서로 이름을 부르며 농담할 정도로 아는 경찰관이 없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구보고서 95-10

犯罪捜査에 있어서 경찰과 국민의 協力強化方案

---

1995年 12月 日 印刷  
1995年 12月 日 發行

發行 金 本 植  
編輯 治安 研究所  
印刷 大韓 文化 社

---

